

정책자료

2006-03

# 2004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

- 추가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

이규용·이해준·박성재  
이지은·윤미래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4
제2장 일자리 창출정책과 추가적 일자리 사업 .....	7
제1절 추가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	7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	7
2. 추가적 일자리 사업의 방향 및 목표 .....	9
제2절 현행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 .....	15
1. 일자리 창출사업의 개념 및 분류체계 .....	15
2.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분류체계 .....	16
3. 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별 예산과 특징 .....	19
제3절 평가대상 추가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특징 .....	26
1. 일자리 나누기 사업 .....	26
2.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 .....	28
3. 사회적 일자리 사업 .....	33
제3장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평가방법론 .....	41
제1절 사업평가의 체계와 구성 .....	41

1. 사업평가의 의의, 관점 및 종류 .....	41
2. 사업평가의 준비 .....	43
3. 사업평가의 모형 .....	45
4.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	46
5. 보고서 작성과 평가의 활용 .....	47
제2절 일자리 창출정책의 평가방법론 .....	47
1. 정량적 평가방법 .....	48
2. 정성적 평가방법 .....	50
제3절 평가모형 및 성과평가지수의 개발 .....	54
1. 평가모형의 선택 .....	54
2. 보조금사업의 성과평가지수 .....	55
3.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	58
4. 자료 수집방법 .....	61
5. 평가지표의 집계와 가중치 선정 .....	61
제4장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평가 .....	64
제1절 사업 활용실적 .....	64
1.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활용실적 .....	64
2.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의 활용실적 .....	68
제2절 성과평가 종합 .....	76
1. 조사표본의 구성과 점수 계산방법 .....	76
2. 종합 평가 .....	80
제3절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 .....	82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82
2. 교대제전환지원금 .....	88
3.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91

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96
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101
6.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	106
제5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	112
제1절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용실적 .....	112
1. 사업별 예산 및 활용실적 .....	112
2. 노동부 사업 참여자의 인적특성 .....	113
제2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과평가 .....	116
1. 실태조사 개요 및 표본의 구성 .....	116
2. 총량 성과평가 .....	122
3. 사업별 평가 .....	123
4. 사업수행 주체별 평가 .....	132
제6장 결 론 .....	149
1.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평가의 시사점 .....	149
2. 사회적 일자리 사업 평가의 시사점 .....	151
참고문헌 .....	155
[부 록] 정량적 정책평가 방법 .....	159
[부 표] 사회적 일자리 사업 평가 실태분석 결과 .....	182

## 표 목 차

<표 2- 1>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OECD 분류법	8
<표 2- 2> 추가적 일자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	11
<표 2- 3>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창출정책	14
<표 2- 4>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별 예산 내역	20
<표 2- 5>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성격별 예산지출 개요	25
<표 2- 6> 창출예상 일자리수	25
<표 2- 7>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구분	35
<표 2- 8>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 공공부문유형 사업(A유형) 내용	37
<표 2- 9>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 국가 직접수행사업(B유형) 내용	38
<표 2-10>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 정부의존형 사업(C유형) 내용	39
<표 2-11>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 민간위탁을 통한 자립형 사업 (D유형) 내용	40
<표 3- 1> 평가주체, 평가단계 및 평가관점	53
<표 3- 2>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평가지표	61
<표 3- 3> 척도의 배점 원칙(예)	62
<표 4- 1> 업종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	65
<표 4- 2> 사업장규모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	65
<표 4- 3>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	66
<표 4- 4> 업종별 활용실적	67
<표 4- 5> 사업장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	67

<표 4- 6> 업종별 및 규모별 분포 .....	68
<표 4- 7> 활용사업장 현황 .....	69
<표 4- 8> 업종별·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 .....	70
<표 4- 9> 클린사업장 지원실적(2005년) .....	71
<표 4-10> 업종별·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 .....	72
<표 4-11> 평균지급액 및 지급월 .....	73
<표 4-12> 업종별·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 .....	75
<표 4-13> 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평균 지원금액 및 지급월 .....	76
<표 4-14> 사업별 점수 계산에 고려된 응답자 수 .....	77
<표 4-15>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 예(집행기관용) .....	78
<표 4-16>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 예(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업체용) .....	79
<표 4-17> 가중치 평가 .....	80
<표 4-18> 평가점수 종합 .....	81
<표 4-19> 가중치 종합 .....	82
<표 4-20> 업종별 분포 .....	83
<표 4-21> 사업장규모별 분포 .....	83
<표 4-22> 신규채용인원 및 채용자 중 정규직 비율 .....	86
<표 4-23>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 .....	87
<표 4-24> 근로시간단축지원금사업의 평가점수 .....	88
<표 4-25> 교대제전환지원금사업의 평가점수 .....	91
<표 4-26> 조사업체의 업종 및 사업장규모 .....	92
<표 4-27> 신규채용 인원수 .....	94
<표 4-28>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복응답) .....	95
<표 4-29>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의 평가점수 .....	96
<표 4-30> 설문대상 업체의 업종분포 .....	97
<표 4-31> 사업장규모별 분포 .....	97
<표 4-3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평가점수 .....	100
<표 4-33> 업종별 분포 .....	101

<표 4-34> 사업장규모별 분포 .....	102
<표 4-35>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평가점수 .....	105
<표 4-36> 업종별 분포 .....	106
<표 4-37> 사업장규모별 분포 .....	107
<표 4-38>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의 평가점수 .....	110
<표 5- 1> 2004년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 (2004년) .....	113
<표 5- 2>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별 참여자 분포 .....	114
<표 5- 3>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적특성 (성별, 연령) .....	115
<표 5- 4>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유형 .....	116
<표 5- 5> 표본 현황 .....	117
<표 5- 6> 사업별 점수 계산에 고려된 응답자수 .....	118
<표 5- 7>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 .....	120
<표 5- 8> 가중치 평가 .....	121
<표 5- 9> 평가점수 집계과정의 예 .....	121
<표 5-10>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총량 평가 .....	122
<표 5-11> 사업 구분별 평가점수 .....	124
<표 5-12> 사업 구분별 가중치 .....	125
<표 5-13> 숲 가꾸기 사업(환경분야)의 평가점수 .....	126
<표 5-14>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교육분야)의 평가점수 .....	127
<표 5-15> 방문도우미 사업(보건분야)의 평가점수 .....	128
<표 5-16> 보육시설 사회적일자리 사업(보육분야)의 평가점수 .....	129
<표 5-17> 재활용 사업(기타분야)의 평가점수 .....	129
<표 5-18> 공공사회정비 숲 가꾸기 사업(산림청, 환경분야)의 평가점수 .....	130
<표 5-19>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교육부, 교육분야)의 평가점수 .....	131
<표 5-20> 방문도우미 사업(복지부, 보건분야)의 평가점수 .....	131

<표 5-21>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여성부, 보육분야)의 평가점수 .....	132
<표 5-22> 일을 하게 된 동기(N=685) .....	133
<표 5-23> 다른 실업대책과 비교시 근로기회 제공 면에서의 성과 .....	134
<표 5-24> 이 사업에서의 근로경험이 다른 곳에 취업하는 데 도움 여부 .....	134
<표 5-25> 사업프로그램 만족도 .....	135
<표 5-26>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곳 취업 가능성 .....	137
<표 5-27> 사업 참여에 따른 수입의 가계 도움 .....	137
<표 5-28> 전직의사 유무 .....	138
<표 5-29> (전직의사가 있는 경우) 직장을 옮기려는 이유 .....	138
<표 5-30> 정부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다른 곳에서 일할 가능성 .....	139
<표 5-31> 사업지원 지속의 필요성 .....	140
<표 5-32>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도움 여부 .....	141
<표 5-33> 서비스 만족도 .....	141
<표 5-34>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계획 .....	142
<표 5-35> 정부 보조에 의한 서비스 활동의 지속 필요성 .....	143
<표 5-36> 서비스 중단시 생활 불편여부 .....	143
<표 5-37> 이용 중인 서비스 중단시 다른 서비스 이용가능성 .....	144
<표 5-38>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	144
<표 5-39>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 기여도 .....	145
<표 5-40>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고용 여부 .....	146
<표 5-41>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	147
<표 5-42>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현 사업의 유지 가능성 .....	147
<표 5-43> 지원금 규모를 줄일 경우 사업지속 의사 .....	148



## 그림목차

[그림 2-1]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	8
[그림 2-2] 사업장별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	2
[그림 3-1] 일자리 창출사업의 평가단계와 평가항목 .....	5

## 요약

### 1. 연구의 목적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선진국형 장기 고실업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심각한 구직난이나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확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동력을 공고화하고 추가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4년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추가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들은 장단기적인 다양한 정책수단이 혼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정책수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함으로써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부가 새로이 시작한 추가적 일자리 사업, 즉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 일자리 나누기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이들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정부가 2004년에 실시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추가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의 경우 주로 경제학적 분석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성과분석에 집중하여 정책사업 을 위한 투입자원의 성과, 즉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후자는 정책 사업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특성상 그 결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업 의 전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설문을 통해 정책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 도이다. 즉, 관련 당사자의 주관적인 진술 선호(state preference)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수치화된 양적 자료 가 충분하지 못하여 정량적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정성적 분석을 시도할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예산과 취업인원수 정보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등 정 책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량 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평가결 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평가결과

2004년도에 추가적 일자리 사업으로 수행된 사업들의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으로 시

행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 4개의 사업실적을 보면 앞의 두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사업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있어 2004년의 지원실적은 8개 사업장에서 46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05년에는 다소 늘어난 15개 사업장의 161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경우에도 지원실적은 미미한데, 2005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사업장은 17개 사업장이며 지원인원은 77명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7,967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41,530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2005년 지원실적을 보면 364개 기업에서 787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추가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채용보조금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성고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사업실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된 일자리수는 2004년에 339개 사업장에서 1,337개이며, 2005년에는 353개 사업장에서 1,541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경우 2005년에 6개의 사업장에서 284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상 정량적인 측면에서 지원인원수만을 볼 때 교대제전환지원금이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들에 비해 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방향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적 평가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즉, 위의 사

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각 사업의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각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종합점수에서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이 58.8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61.1점), 근로시간단축지원금(61.4점)이며, 상대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64.5점)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65.5점) 사업은 정성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 프로세스별로 살펴보면 사업추진 배경이나 사업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계획단계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점이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사후관리의 합리성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의 사후 반영이라는 사후관리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낮은 평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업효과 및 지속성과 취업성과 및 근무안정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교대제전환지원금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장려금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평가결과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의 200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1,638억 원이고, 이 중 95.2%인 1,56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당초 계획인원(2만 1,334명)과 비슷한 수준인 2만 1,632명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별 지원수준이나 지원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에서 자료수집상 한계가 있는 관계로 창출된 일자리 수 자체를 통해 사업별로 비교하는 것은 일정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 사업에 대해 수행기관, 근로자 그리고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효과와 만족도, 취업성과, 그

리고 사업의 지속필요성에 대해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기관의 경우 지속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사업효과(0.23), 만족도(0.21), 취업성과(0.24), 지속성(0.32) 등에 비슷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 수혜자의 경우 사업지속의 필요성(0.41)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수혜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평가에 있어 사업지속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취업성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근로자는 네 항목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지속의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주체별 가중평균을 보면, 수행기관의 가중평균 점수는 81.6점이며, 근로자는 69.3점, 수혜자는 86.9점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77.9점으로 평가된다. 수혜자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항목별 부가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효과의 평가점수가 80.0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지속성(79.8), 취업성과(76.3) 및 만족도(74.8)의 순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혜자의 경우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이 높다(90.3)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취업성과에 가장 높은 점수(87.4)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만족 수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성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로서의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사업군별로 구분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군을 환경, 교육,

보건, 보육분야로 구분하였고,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군은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평가점수를 알아보면, 노동부 주관사업의 총 평가점수는 78.4 점인데 반해 여타부서의 주관사업은 전사업 평가점수가 76.4점이다. 즉, 노동부 주관사업이 전사업 평가점수면에서 여타부서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주관사업에서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하면, 수익형 사업의 평가점수는 78.9점이며, 공익형 사업의 평가점수는 77.9점이다. 즉, 수익형 사업이나 공익형 사업 모두 평가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익형 사업이 공익형 사업에 비해 약간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사업군별 평가점수를 보면, 노동부 주관사업의 경우 보육분야(83.2점: 수익형)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이 보건분야, 환경분야, 교육분야의 순이나, 그 점수의 차이는 거의 없다. 여타부서 주관사업을 보면, 복지부의 보건분야 사업의 평가점수가 82.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교육부의 교육분야 사업(78.7), 여성부의 보육분야 사업(72.3), 산림청의 환경분야 사업(66.9)의 순이다.

노동부 주관사업은 수익형과 공익형 및 각 사업군별 평가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는데 비해 여타부서의 주관사업은 사업 시행부서에 따라 점수의 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시행부처간의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군별 가중치를 보면, 대부분 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평가점수에서도 지속성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 3. 정책 시사점

자료상의 한계 등으로 추가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 나타

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4년도에 추가적 일자리 사업으로 수행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점검이나 의견수렴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구비하여 이를 제도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측면에서 보면, 현저히 사업실적이 낮은 교대제전환금지원제도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실적이 낮은 이유를 규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목표의 조화이다.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목표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서비스의 질 제고는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 이외에 우수인력의 유인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우수인력의 유인은 기존 취업자들의 일자리 이동에 따른 사중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충되는 노동수요에 부응하는 노동공급의 가용성이라는 측면을 볼 때 일자리 이동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보완적 역할이다.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바람직한 사회적 외부성을 갖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적인 시장에서 생산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만큼 공공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활성화에 공적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공적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적지



원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적지원(보조금 형태)을 통한 자립형 모델에 서부터 공적지원이 없으면 서비스의 제공이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능한 분야의 질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가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일자리에 비해 소득이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이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수요를 공급한다는 효과성 외에 비용절감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사회적 서비스의 고유한 역량과 국가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공적지원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목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에 초점을 맞춘 분야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서비스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적수익이 가능한 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선진국형 장기 고실업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심각한 구직난이나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확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는 결국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고용창출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창출능력지표인 고용탄성치<sup>1)</sup>가 2001년 0.63에서 2002년 0.44로 감소하였고, 2003년에는 0.16으로 외환위기 당시 수준(1999년 0.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고용 창출되는 인구를 비교해 보면 2001년 133천 명에서 2003년 36천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1) 고용탄성치란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증가율로 경제가 1%로 성장했을 때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2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또한, 한국은행이 5년 간격으로 발표하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급감하였는데, 전체 산업 평균으로 10억 원어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취업자수(취업계수)가 1995년에는 16.9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2.2명에 그쳤다. 이 중 제조업의 평균 취업계수는 1990년 15.2명에서 1995년 8.6명, 2000년 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0억 원어치 수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수 역시 1995년 25.8명에서 2000년 15.7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0년 이래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기업들의 인력감축이 본격화되고 생산설비의 자동화로 인한 투입노동력의 감소, 대기업의 고용흡수력둔화와 향후 기업경영환경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인한 투자확대기피, 제조업의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의 공장 이전, 고용효과가 작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비중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구조화된 것이라면 더 이상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일자리 창출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업률 상승 및 양극화심화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을 자체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다, 성장을 하더라도 과거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또는 ‘고용정체형 성장(growth without additional employment)’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기술 전쟁, 지식기반경제의 확산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흡수력이 하락하고, 여기에다가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서비스 산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한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그나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국내기업들은 사업여건이 악화되면서 해외투자에 발길을 돌리게 되고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장은 경제와 정치·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경제 환경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은 기업의 소유권 변동이나 고용조정과 더불어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대두와 정보화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WTO의 출범, 시장개방과 국제시장의 통합 등 세계화로 인한 기업간·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업 공동화와 중국의 급부상은 국내의 취업기회를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간 수준의 일자리 숫자를 축소시켜 일자리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노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열어 주어야 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학력화 현상은 심각한 고학력자의 취업난 및 하향취업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고학력화에 따라 취업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급격한 구조적인 환경변화는 일자리 창출능력의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경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대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능력(job creation capacity)이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큰 폭의 일자리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일자리 창출’ 문제가 경제·사회적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고용친화적 환경(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동력을 공고화하고 추가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재경부 외, 2004). 특히 2004년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추가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들은 장단기적인

#### 4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다양한 정책수단이 혼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정책수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함으로써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정부가 새로이 시작한 추가적 일자리 사업, 즉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 일자리 나누기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이들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투입기준(input)의 평가와 산출기준(output)의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 투입기준의 평가는 어떠한 정책 프로그램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하였는가,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얼마나 되는가, 프로그램의 지속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등을 기준으로 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산출기준의 평가는 그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사후적인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취업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임금(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중간 과정에 상관없이 사후적인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집행자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요인(예를 들면 당시 경제상황, 노동시장 상황,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특성)들로 인하여 중요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어도 사후적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더구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투입기준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순서별로 평가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정

책 결정과정(policy formation evaluation)에서의 평가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시되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평가(process evaluation)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정책이 실행되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평가(outcome evaluation)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된 결과가 새로운 정책 결정에 어떤 형태로 피드백(feedback)이 되는가이다.

위에서 논의한 방법 중 전자는 정량적 평가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정성적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량적 평가의 경우 주로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성과분석에 집중하여 정책사업을 위한 투입자원의 성과, 즉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후자는 정책사업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특성상 그 결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설문문을 통해 정책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즉, 관련 당사자의 주관적인 선호(state preference)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수치화된 양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정량적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정성적 분석을 시도할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예산과 취업인원수 정보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등 정책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 및 특징을 통해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평가대상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특성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결과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의 근본적인 문제 및 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계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 6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추가적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각각 추가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보조금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제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 제2장

### 일자리 창출정책과 추가적 일자리 사업

#### 제1절 추가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과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보험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조기퇴직자 대책 등과 같이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가리킨다.

<표 2-1>은 OECD가 분류하고 있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OECD의 분류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크게 취업 알선,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창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뉘 볼 수 있으며,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실업보조금 지급이나 조기퇴직자들을 위한 대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 제시되고 있는 것과 견주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경쟁 심화와 지



8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표 2-1>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 OECD 분류법

적극적 일자리 창출정책 (Active measures)	취업알선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administration)	- 구직구인정보 제공 - 직업지도 및 상담 - 취업통계DB 구축
	직업훈련 (Labor market training)	- 성인 실업자 대상 훈련 - 취업 중인 성인대상 훈련
	청년대책 (Youth measures)	- 청년 실업자 또는 청년 중 취약집단 에 대한 대책 - 청년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Subsidised employment)	- 민간부문의 고용에 대한 보조금 - 창업지원 - 공공부문 및 비영리부문 일자리 창 출
	장애인대책 (Measures for the disabled)	- 장애인 직업훈련 - 장애인 대상 사업
소극적 일자리 창출정책 (Passive measures)	실업보조금 (Unemployment compensation)	-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조기퇴직 대책 (Early retirement for labour market reasons)	- 노동시장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 보조금

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등을 배경으로 내수 부진, 투자 감소, 경제 양극화 등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 비해 현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이전의 고도 성장기에 비하여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되어 왔다. 더군다나 비록 성장률이 둔화되었기는 하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경제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2월 노동부·재정경제부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추

구하여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다시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산업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자리 창출 동력을 공고화하고자 하는데, 먼저 주력 기간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력을 유지하고, 고용흡수력이 큰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관광·사회서비스업 등을 중심적인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육성한다.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건설 투자의 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가능한 한 추가적 일자리를 발굴한다. 먼저 근로시간단축 효과가 신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공익적 일자리의 확대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하여 고용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은 크게 3가지 정책 방향 - 첫째,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둘째, 추가적 일자리 발굴, 셋째,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 등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의 전반적인 운영 기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추가적 일자리 발굴만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추가적 일자리 사업의 방향 및 목표

추가적 일자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나누기, 빈 일자리 채우기,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2-2와 2-3 참조).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세부 정책들은 근로시간단축 지원, 교대근무제 지원, 자발적 단시간 근로지원,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이 있다. 일자리 나누기 부문의 정책들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은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생산성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먼저, 근로시간단축 지원은 2004년 7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력난 심화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단축이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교대근무제 개선 등 고용창출·노동생산성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은 규모의 확대 및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과거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교대제 개편을 통한 뉴패러다임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지원은, 주5일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발적 단시간 근로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자를 위해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다. 단시간 근로자 지원은 육아부담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잠재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기업의 경영난 등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연공급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직무체계 개편을 위한 혁신 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정착시켜 성과주의와 직무기초형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다음으로 빈 일자리 채우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에 따른 빈 일자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지만 경제·기술적 이유로 인하여 작업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작업환경 불량 또는 재해·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개선하

<표 2-2> 추가적 일자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

	추진방향	소관부처
1. 일자리 나누기		
1-1. 근로시간 단축지원	1-1-1.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등 지원대책 마련	노동부
1-2. 교대근무제 지원	1-2-1. 교대근무제 개선 등 고용창출 노동생산성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노동부
1-3. 자발적 단시간 근로 지원	1-3-1. 단시간 근로 희망자 적합직종 근로형태 모델 개발보급	노동부
1-4.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1-4-1.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통한 감원 최소화 노력에 고용보험기금 지원	노동부
	1-4-2.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 설치(2004년 상반기 중)	노동부
2. 빈 일자리 채우기		
2-1.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2-1-1.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금액 확대	노동부
	2-1-2.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입	노동부
2-2.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2-2-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우선분양	중기청
	2-2-2.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노동부
	2-2-3. 각종 훈련사업 지원 확대	노동부
3.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3-1. 사회적 일자리 창출	3-1-1.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부
	3-1-2. 집수리·간병 등 자활사업 확대	복지부
	3-1-3. 노인 일자리 제공	복지부
	3-1-4. 장애인 일자리 발굴	복지부
3-2. 보육·노인·보건·의료관련 일자리 확대	3-2-1. 보육서비스 활성화	복지부
	3-2-2. 간병서비스 활성화	복지부
	3-2-3.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복지부
3-3.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3-3-1. 공공시설 개장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문광부
	3-3-2. 복지서비스 인력확충	복지부

고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종 전환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설비투자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주택 우선분양, 전문인력 채용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그리고 수강장려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보육·노인·보건·의료 관련 일자리 확대,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등이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유용성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이 재원을 부담하는 일자리 창출로 매우 협소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와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등 공익성 있는 분야에서의 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일자리 규모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 역시 확대한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력 급증 및 노인에 맞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노인 부양부담 해결과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립한다.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은 일반 사업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을 확대하고, 더불어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요건을 완화하여 자영업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노인·보건·의료 관련 일자리 확대정책은 보육서비스, 간병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보육 수요를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법인 등의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보육교사 등 시설 종사자 고용을 증대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한편 장기요양보호노인의 간병 수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간병·수발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적노인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정책은 먼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 개장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문화서비스 향유를 제고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더불어 예방적 복지 및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으로는 먼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연수기회 제공, 공무원 증원 등이 있으며, 공기업·산하기관·출연연구소 등의 조기채용, 추가 증원, 인턴채용 확대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과 고용보험 지원 등이 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2004년보다 늘어난 인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청년층 실업대책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가급적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정부 정책의 기조가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됨에 따라 경찰, 집배원, 식약품 안전 등 대민 서비스 확대 및 사회복지·방재 분야 등 신규 행정수요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인력 채용을 추진한다. 또한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의 신규 채용을 가급적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경영여건, 인력운용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한다. 또한 신규사업 물량 확대, 법령 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명백히 증가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 증원을 추진한다. 일자리

14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창출과 청년실업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공기업·산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인턴 활용이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고용증대를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신규 고용이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청년 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고용보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표 2-3>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창출정책

	추진방향	소관부처
1. 정부부문 일자리·취업지원 강화		
1-1. 일자리와 연수직 업훈련 기회 제공	1-1-1. 34.4만 명에게 장단기 일자리, 연수직 업훈련 기회 제공(2004년) - 1/4분기 중 목표인원의 52%, 상반기 중 74% 이상을 조기추진	예산처
1-2. 공무원증원 추진	1-2-1. 경찰소방·집배원 등 대민서비스 분 야에 7천여 명 추가 증원(2004년)	행자부
2. 공기업·산하기관·출연연구소 신규채용		
2-1. 조기채용	2-1-1. 1/4분기 중 목표인원의 61%, 상반기 중 70% 이상 채용(총 1.2만 명): 공기업 산하기관	예산처
	2-1-2. 조기채용(정부출연연구기관)	국조실
2-2. 추가증원	2-2-1. 공기업 등의 2천여 명 추가증원	예산처
2-3. 인턴채용 확대	2-3-1. 각 기관 수요에 따라 인턴채용 확대실 시(공기업·산하기관)	예산처
	2-3-2. 인턴채용 확대(정부출연연구기관)	국조실
3. 고용증대를 위한 한시적 지원		
3-1. 세제 지원	3-1-1. 기업 고용확대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 원방안 강구	재정부
3-2. 고용보험 지원	3-2-1. 기업 고용확대에 대한 한시적 고용보험 지원방안 강구	노동부

## 제2절 현행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

### 1. 일자리 창출사업의 개념 및 분류체계

앞에서 2004년 2월에 발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추구하여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다시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따라서 단순한 일자리 창출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노사관계 안정, 인력양성, 사회안전망 확충까지 다양한 범위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정책은 경제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크게 두 개념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일자리를 노동의 파생수요로 인식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으면서도 고용창출효과도 큰 산업을 육성하는 제반 방안을 담고 있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정책과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담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정책을 광의의 개념인 경제정책까지 포괄할 경우 정책의 범위를 한정시키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경제정책의 상당수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경제정책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정책의 범위를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지원정책이라는 범위로 한정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은 크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과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보험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조기퇴직자 대책 등과 같이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가리킨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96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소개서비스와 상담만을 의미하였으나, 1970년대 초부터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한계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실업, 장기실업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조금제도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OECD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은 실업자의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을 통해 실업자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기능(job matching process)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래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정책의 중점을 변경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전병유 외, 2005: 18~19).

## 2.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분류체계

일자리 창출지원정책은 크게 정책수단에 따른 구분과 정책대상인 목표

2) OECD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래,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를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취업알선, 직업지도, 상담 등의 고용안정서비스(employment service),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작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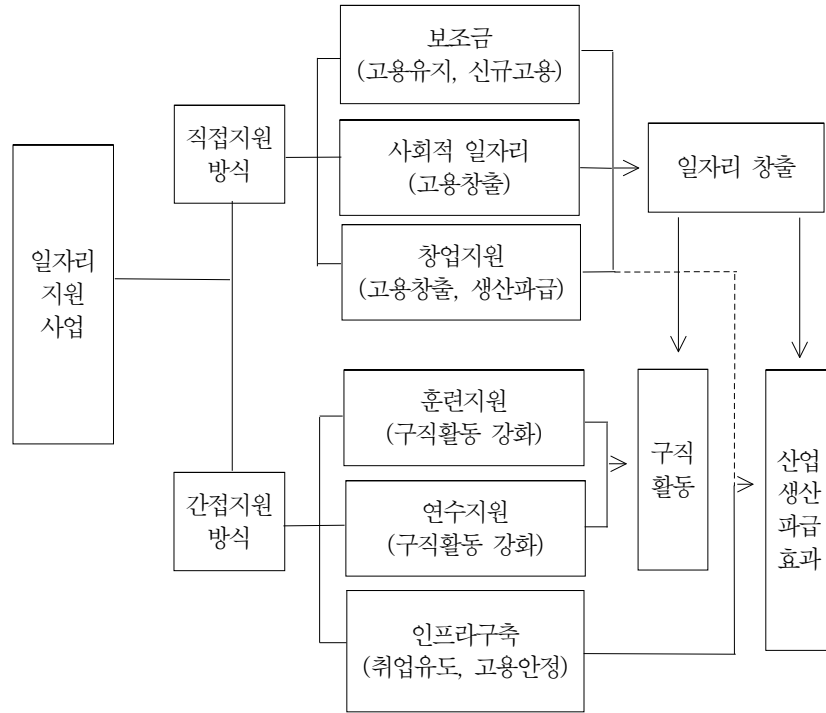
집단(target group)에 따른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수단에 따른 구분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정책방법을 활용하는가에 의존하는데 이는 다시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간접적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public)영역이나 비영리(non-profit)분야에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일자리지원사업은 보조금지급이나 훈련 등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사업주가 특정 대상집단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목표 집단에 따라 일자리 창출정책을 분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대상 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특정 대상 집단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집단의 취업 또는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대상 집단에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학력자, 장기실업자, 여성가장과 가사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포함된다.

두 분류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방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지원정책의 구분은 정책수단이 유사한 만큼 공통적인 기준의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유사한 사업군별 정책효과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정책대상 집단별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분류하는 방법은 정책대상 집단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정책대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정책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어떤 분류체계를 사용할 것인가는 활용목적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분류체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두 분류체계를 조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가령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내용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일차적으로는 정책대상 집단별로 분류를 한 후 각 대상 집단별로 정책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재분류하여 정책집단별로 유효한 정책지원수단을 파악할 수가 있다. 반대로 정책지원수단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정책대상 집단별로 재분류하면, 특정의 정책수단이 어

[그림 2-1]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편 정책집단에 유효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획예산처의 분류<sup>3)</sup>에 따르면 2004년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청년 실업대책(54개 사업), 사회적 일자리(16개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20개 사업), 일자리 관련 보조금사업(9개 사업)의 4개 대분류 총 9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예산처의 분류체계는 정책대상 집단별 분류와 정책수단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정책수단별로 크게 분류하면 분류상의 한계가 있지만 크게 보조금 사업, 일자리 만들기 사업, 창업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원사업, 직장체험·연수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가지 정책수단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3) 기획예산처, 「2005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2005. 1.

보조금 지원사업은 고용유지 혹은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나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직접적인 고용유지나 신규고용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유도하거나, 구직자가 취업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훈련 및 연수사업은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 구직자, 혹은 해고자의 재훈련 및 인턴제도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업지원은 구직자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이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목적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직접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은 보조금지원, 창업지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이며, 간접지원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인프라 구축, 훈련, 연수사업 등이라 할 수 있다.

### 3. 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별 예산과 특징

이하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별 예산과 특징을 살펴보자

#### 가. 2005년 예산지출 내역 및 창출 일자리 수

<표 2-4>는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기금 포함)의 총액 규모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은 2003~05년간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조 1천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1조 3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금액은 증가율로 보면 2004년 예산에 비해 12.4%가 늘어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관련 2005년 예산을 사업 성격별로 살펴보면, 청년실업대책이 6천 5백억 원 규모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대책 중에서는 특히 청년층 직업훈련 강화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20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표 2-4>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별 예산 내역

<청년실업대책 사업>

(단위: 억 원, 명, %)

	소관부처	2004		2005		증가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전 체		6,057	161,061	6,504	189,322	7.4	17.5
예산		3,883	114,763	3,229	113,858	△16.8	△0.8
기금		2,174	46,298	3,275	75,464	50.6	63.0
① 직장체험 활성화		1,551	80,455	1,117	82,260	△27.9	2.2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노동부	846	70,000	625	75,000	△26.1	7.1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산자부	300	6,000	150	3,000	△50.0	△50.0
·IT인턴십 지원사업	정통부	6	210	10	350	66.7	66.7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교육·산자부	230	2,005	160	1,570	△30.4	△21.7
·문화산업 청년인턴채용	문광부	129	2,240	129	2,240	-	-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중기청	40	(55,000)	40	(55,000)	-	-
·농업인턴십 지원	농림부	-	-	4	100	순증	순증
② 단기 일자리 제공		1,245	12,843	1,042	9,358	△16.3	△27.1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정통부	470	2,000	430	2,000	△8.5	-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행자부	30	323	45	308	50.4	△4.6
·구인업체 개척사업	노동부	56	2,800	56	2,800	△0.6	-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문광부	120	720	120	600	-	△16.7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산자부	100	3,000	-	-	△100.0	△100.0
·국민연금 상담사 채용	복지부	219	2,000	225	1,650	2.9	△17.5
·군부사관 인력확충	국방부	250	2,000	166	2,000	△33.6	-
③ 해외취업인턴 활성화		470	5,398	452	4,903	△3.9	△9.2
·전문직 해외취업지원	노동부	137	2,500	107	2,000	△21.8	△20.0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노동부	85	1,000	85	1,000	-	-
·청년무역인력 양성	산자부	20	200	19	190	△5.0	△5.0
·IT인력 해외연수 지원	정통부	50	500	-	-	△100.0	△100.0
·KOICA개발협력단 사업	외교부	164	898	223	1,393	35.9	55.1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정통부	14	300	18	320	25.0	6.7
④ 청년층 직업훈련강화		2,034	60,037	1,935	58,737	△4.8	△2.2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453	27,020	439	26,520	△3.2	△1.9
·정부위탁훈련	노동부	903	12,000	831	11,000	△7.9	△8.3
·취업 유망분야 훈련	노동부	410	13,667	428	14,267	4.4	4.4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정통부	39	(34,188)	39	(35,120)	△0.6	2.7

&lt;표 2-4&gt;의 계속

	소관부처	2004		2005		증가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제대예정사병 취업지원	국방부	10	-	3	-	△70.0	-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중기청	191	6,000	175	5,500	△8.4	△8.3
·지방대 TradeIncubator 설치	산자부	13	1,250	13	1,250	-	-
·IT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정통부	15	100	5	100	△66.7	-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농림부	-	-	3	100	순증	순증
⑤ 청년취업인프라 확충		299	-	257	-	△13.8	-
·고용안정센터 육성	노동부	116	-	76	-	△34.5	-
·창업교육 강화	중기청	51	-	67	-	30.6	-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노동부	20	-	26	-	29.3	-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노동부	11	-	30	-	162.3	-
·중장기인력수급 전망모델 구축	노동부	14	-	14	-	2.9	-
·종합직업체험관 (JobWorld)	노동부	-	-	10	-	순증	-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교육부	12	-	9	-	△28.8	-
·기타	노동, 정통, 문광, 교육부, 중기청	75	-	25	-	△33.3	-
⑥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328	2,228	1,519	33,604	362.8	1408.3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기청	208	-	238	-	△3.4	-
·중소기원금	노동부	-	-	204	3,851	순증	순증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노동부	-	-	78	516	순증	순증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노동부	-	-	97	1,354	순증	순증
·교대제 전환지원금	노동부	-	-	115	3,197	순증	순증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120	2,228	787	24,686	554.4	1008.0
⑦ 기 타		130	100	180	460	38.5	360.0
·뉴패러다임 확산	노동부	20	-	20	-	-	-
·학교기업육성	교육부	100	100	130	130	30.0	30.0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교육부	-	-	20	330	순증	순증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중기청	10	-	10	-	-	-

22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표 2-4>의 계속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소관부처	2004		2005		증가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전 체		835	27,491	1,513	41,235	81.1	50.0
예산		513	21,103	1,082	32,568	101.2	54.3
기금		332	6,388	480	8,667	49.1	35.7
·장애아 교육보조원	교육부	39	2,000	57	2,000	45.3	0.0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교육부	-	-	9	36	순증	순증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교육부	-	-	3	320	순증	순증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8	32	0	0	△100.0	△100.0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복지부	12	500	49	500	307.0	0.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125	1,849	216	4,280	73.6	131.5
·방문도우미사업	복지부	176	4,500	359	7,000	104.5	55.6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복지부	10	75	-	-	△100.0	△100.0
·숲기꾸기사업	산림청	-	-	235	2,000	순증	순증
·생태우수지역 일자리창출	환경부	29	398	64	480	122.7	20.6
·사회적 일자리 제공	노동부	187	3,000	258	4,000	37.9	33.3
·사회적 노인일자리 지원 <sup>1)</sup>	복지부	28	5,000	42	5,950	48.9	19.0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	문광부	65	1,304	71	1,504	9.2	15.3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	문광부	50	550	35	550	△30.0	0.0
·생활체육지도자	문광부	86	1,263	86	1,117	△0.3	△11.6
·여성 사회적일자리창출 지원	여성부	20	4,000	28	4,000	41.0	0.0
·각종 사회복지시설 증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순증, 누계)	복지부	-	3,020	-	7,498	-	148.3

주: 1) 취약계층 일자리 중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일부.  
 자료: 기획예산처.

&lt;표 2-4&gt;의 계속

&lt;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gt;

	소관부처	2004		2005		증가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전 체		4,501	180,044	4,800	181,597	6.7	0.9
예산		2,590	114,830	2,901	121,942	12.0	6.2
기금		1,911	65,214	1,899	59,655	△0.6	△8.5
·노인인력기관 운영지원	복지부	84	-	115	-	36.9	-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노동부	3	-	4	-	28.6	-
·노인일자리 지원	복지부	142	25,000	199	35,000	39.9	40.0
·여성창업활성화	중기청	22	-	22	-	-	-
·여성창업자금 지원	여성부	130	60	130	60	0.0	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복지부	154	7,400	164	7,304	6.4	△1.3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복지부	167	1,000	166	867	△0.4	△13.3
·장애인 취업지원	노동부	130	224	68	100	△47.7	△55.4
·자영업 창업지원	노동부	400	550	400	720	0.0	30.9
·자활근로	복지부	1,774	60,000	2,021	60,000	13.9	0.0
·자활취업 촉진	노동부	25	1,230	23	1,200	△5.5	△2.4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	노동부	1,155	60,000	1,189	54,395	2.9	△9.3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126	13,000	102	10,371	△19.6	△20.2
·자활훈련	노동부	82	5,000	82	5,000	0.0	0.0
·산재장애인 직업훈련	노동부	79	3,000	87	3,000	10.7	0.0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지원	여성부	5	1,380	5	1,380	0.0	0.0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노동부	25	2,200	24	2,200	△1.5	0.0

주: 공공근로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집계에서 제외.

자료: 기획예산처.

청년실업 대책 다음으로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예산 중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사업에 4천 8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일자리 창출 예산의 약 3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총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약 12%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율 면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회적 일자리<sup>4)</sup> 창출을 위한 2005년 예산은 2004년에 비해 81.1%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2003년 이래 꾸준히 늘어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 중 3.5%에 불과하였으나 내년에는 1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기존의 '장애아 교육보조원 지원사업' 외에 '장애아 순회교육지원사업'과 '대학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이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및 보육분야에서는 2005년 중 4,280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신규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에 대한 '방문도우미 사업'도 2005년에는 참여인원이 4,5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농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을 고용하여 새로이 2,000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도 일자리 창출관련 정부지출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55.7%가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44.3%는 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과 기금의 지출 비중은 2003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2004년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예산에서 61.2%가 쓰였으며 38.8%는 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표 2-6>은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지출에 따라 생성되는 일자리의 예상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년 중 재정을 통하여 지원되는 일자리는 총 40만 6천 명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을 통해 약 19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취약계층 일자리 및

4) 기획예산처는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일자리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로 정의한다.

&lt;표 2-5&gt;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성격별 예산지출 개요

(단위: 억 원, %)

	2003		2004		2005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 청년실업대책	3,903	48.5	6,057	53.3	6,504	50.9	7.4
- 사회적 일자리 창출	278	3.5	835	7.3	1,513	11.8	81.1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3,862	48.0	4,501	39.6	4,801	37.6	6.7
전 체	8,044	100.0	11,365	100.0	12,775	100.0	12.4
·예산	4,429	55.1	6,958	61.2	7,121	55.7	2.3
·기금	3,614	44.9	4,407	38.8	5,654	44.3	28.3

주: 증가율은 2004년 대비 2005년의 일자리 창출예산의 증가율임.  
 자료: 기획예산처.

직업훈련을 통해서 약 18만 명의 일자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2004년에 비해 각각 17.5%와 0.9%가 각각 늘어나는 것이다.

2005년 중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사회적 일자리는 장애아 교육보조원, 방문도우미 사업, 생태우수지역 보존 등 14개 사업에 4만 1천 명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일자리는 인원 면에서는 2004년의 2만 7천 명에 비해 50.0% 증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신규사업 적극적 발굴, 지원단가의 현실화 등에 따른 것이다.

&lt;표 2-6&gt; 창출예상 일자리수

(단위: 명, %)

	2003		2004		2005		증가율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 청년실업대책	116,258	44.3	161,061	44.3	189,322	46.6	17.5
- 사회적 일자리 창출	7,062	2.7	27,491	7.6	41,235	10.2	50.0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 훈련	139,073	53.0	180,044	49.5	181,597	44.7	0.9
전 체	262,420	100.0	363,596	100.0	406,204	100.0	11.7
·예산	157,115	59.9	245,696	67.6	262,418	64.6	6.8
·기금	105,305	40.1	117,900	32.4	143,786	35.4	22.0

주: 증가율은 2004년 대비 2005년의 일자리 창출인원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기획예산처.

### 제3절 평가대상 추가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특징

추가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는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증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와 교대제 근로의 전환을 통해 근로자수를 늘린 경우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 제도가 있다. 즉,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측면보다는 현재의 일자리를 노동시간을 줄여서 현재보다 많은 일자리로 분배하는 데 의미가 있다.

##### 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기존의 고용촉진사업에 속하여 지원되던 것이 2004년 10월 법 개정과 함께 고용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변경 시행된 것으로,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sup>5)</sup>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

---

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으로서,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00인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시행규칙 제15조).

[그림 2-2] 사업장별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금융, 공공부문 및 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20인 이상	20인 미만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1일	2006년 7월 1일	2007년 7월 1일	2008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추후규정 예정

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 전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된다. 다만, 근로시간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2004년 7월 1일인 금융보험업 및 공공부문, 근로시간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양잠수산업 및 2004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채용시 증가하는 노동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내 욕구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인력난 가중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인력을 확보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 원씩을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내에서 단축 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1인당 분기 150만 원인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까지만 지급한다.

나. 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4조 이하의 경우에 한함)하여, 전환 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된 경우 초과고용 1인당 분기 180만 원(고시금액)을 1년간 지급

(전환 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3 한도)한다.<sup>6)</sup>

## 2.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장애요인 중 하나인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가 목표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과 중소기업 전문 인력의 채용을 늘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달성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실업상태의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있다. 결국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을 지원하고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제도는, 중소 제조업 및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 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미리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1인당 분기 180만 원(고시금액)을 1년간 지원(30명 한도)한다. 여기서 지원되는 '신규업종 진출'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신규업종진출계획 수립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6) 교대제전환지원금은, 노사정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서 교대제전환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 또는 고용유지의 모델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대제전환에 따른 기업의 초기 인건비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 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는, 중소 제조업 및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1,0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고시금액)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 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 원(최대 30명)을 1회 지급(고시금액)한다. 반면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 없이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1인당 120만 원(최대 30명)을 1회 지원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sup>7)</sup>.

한편, 근로자수 산정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근

#### 7) 작업환경설비·복지시설의 범위(고시)는 아래와 같다.

##### 가. 작업환경설비

- 안전 관련 설비: 프레스절단기, 가스용접기(산소·아세틸렌, CO<sub>2</sub>),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 용접기,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공기압축기, 롤러기, 연삭기, 산업용로봇, 절연방호구 및 환선작업용 기구, 단조기, 버프연마기, 용해로, 주형조형기, 다이캐스팅기, 소성로, 포장기, 폐지압축기, 사출성형기, 벽돌·블럭성형기, 혼합기, 스크류컨베이어 등.
- 작업환경개선 관련 설비: 흡음시설 및 방음시설, 격리 및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습윤상태 유지설비, 고열·한냉다습장해 예방설비, 온습도 조절장치 등.
- 작업공정개선 설비: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설비(탑승식 차량 제외),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에어벨런스, 진공빨판 등), 섬유원단적재설비, 원사빔 적재설비, 자동조형 및 탈사설비, 용탕주입 자동화설비, 도금자동화설비,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공정의 자동화 설비 등.

##### 나. 복지설비

- 생활필수시설: 구내식당, 샤워실(목욕시설), 의무실, 구내휴게실(매점 등을 포함), 기숙사(독신자숙소 포함), 탁아시설, 세탁시설
  - 문화, 체육, 금융, 편의시설: 도서실, 단체활동실, 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소체육 시설을 포함), 이·미용실, 종합구관장, 휴양소(콘도 포함), 노래방, 테니스장, 마을금고,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사내 교육시설.
- ※ 통근차량의 경우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확인 필요.

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축탁근로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그리고 월 임금을 60만 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와 65세 이상인 자는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대상 사업주에서 제외된다. 첫째, 지원금수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둘째,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및 휴폐업 중인 사업장, 셋째, 지원금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고용조정을 한 경우이다.

#### 다. 중소기업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기존의 취업취약계층(고령자·여성·장기 구직자 등)의 신규고용촉진 지원의 성격을 가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한 것이다. 제도가 통합되면서 청년실업자(29세 이하)와 장애인(실업상태 3월 이상, 중증장애인은 1월)까지 포괄함으로써 대부분의 취업취약집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지급액은 각 계층에 대한 노동부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2004년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 ①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대상: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신청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①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②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③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및 부상, 신체적 감각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지급액: 근로자 1인당 1년 동안 고용 후 최초 6개월 동안은 매월 30만 원, 이후 6개월 동안은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제조업 500인 이하)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장애인

- 지급대상: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지급액: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이외의 장애인은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45만 원을 지급한다.

③ 청년실업자

- 지급대상: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한다.
- 지급액: 고용 후 1년 동안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후 12개월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 제도시행기한: 청년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악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3년간으로 제도 운영에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④ 여성가장

- 지급대상: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대상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한다<sup>8)</sup>.
- 지급액: 고용 후 1년 동안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

8) 고용보험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를 부양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제도는, 중소 제조업 및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변호사, 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인력(고시)을 채용하고,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분기 360만 원(고시)을 채용 후 1년간 지원(3명 한도)하는 제도이다<sup>9)</sup>. 단,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전문인력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2004. 1. 1 시행)에 근거하여 신제품·신상품 개발,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있다.

9) 여기서 전문인력이란 아래와 같다.

- 경영기획 담당자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
- 제품기술 개발자
  -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우수 기술기능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 3. 사회적 일자리 사업

2004년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일반적인 경제·산업 정책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대안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대안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황덕순 외, 2004).

사회적 일자리는 주로 유럽국가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 넓게 정의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제3섹터형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는 협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3섹터형 기업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integration, 프랑스의 경우 insertion)을 위해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포함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개념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은 1997년 말의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실업대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실행된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은 위에서 제시한 개념 정의를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부문이 재원을 부담하는 일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인 개념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에서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매우 협소한 것이다. 물론 이는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논의 자체가 협소한 시야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에 접근해 온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전병유 외, 2003).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의들이 제시된 바 있다. 노동부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

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보완적으로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sup>10)</sup>

한편, 기획예산처에서는 2005년도에 실시할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일자리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1)</sup>

두 정의 모두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노동부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출 주체 측면도 고려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 동원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정책방향을 평가하고,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료한 정의와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민간기업이 현재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사회적 기업에 의해 제공되거나, 사회적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라고 개념정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성격에 따라 공공부문형 사회적 일자리, 협의의 사회적 일자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형 사회적 일자리란 민간화시킬 수 없는 사업으로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적 사업으로 소관부처의 고유업무에 대한 행정보조적

10)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충방안」,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2004년 3월 26일) 회의자료.

11)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내년도 “사회적 일자리” 27천 명 지원요구」(2004년 6월 17일).

개념이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공공산림정비 숲 가꾸기 사업,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 포함된다.

협의를 사회적 일자리란 민간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차후 독립시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협의의 사회적 일자리는 수행주체에 따라 국가직접수행방식, 민간위탁방식(out-sourcing)으로 구분된다. 민간화가 가능함에도 국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방과후 교실사업, 장애아 교육보조원, 장애아 순회교육지원사업이 포함된다.

민간위탁방식의 사업도 수익구조에 따라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사업과 수익구조를 확보하여 자립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사업은 정부지원 중단과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는 공공근로성 사업으로 방문도우미 사업, 대학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연극국악영화 시간제 강사풀,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다.

<표 2-7>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구분

		사업명
A. 공공부문형 사회적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산림정비 숲 가꾸기 사업</li> <li>▪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li> </ul>
협의의 사회적 일자리	B. 민간화가 가능함에도 국가가 직접수행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교실 사업</li> <li>▪ 장애아 교육보조원</li> <li>▪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li> </ul>
	C.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 중이나, 정부지원에만 의존함으로써 지원중단과 동시에 중단되는 공공근로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도우미 사업</li> <li>▪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li> <li>▪ 지역아동센터 공부방</li> <li>▪ 연극국악영화 시간제 강사풀</li> <li>▪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li> <li>▪ 생활체육지도자</li> </ul>
	D. 민간에 위탁하여 수익구조 확보, 민간자원 결합 등 다양한 재원동원으로 자립성을 추구하는 사업 ⇒가장 이상적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일자리 창출</li> <li>▪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li> <li>▪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li> <li>▪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li> </ul>

마지막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민간자원결합 등 다양한 재원 동원으로 자립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다.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A유형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공산림정비 숲 가꾸기 사업과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일자리로서 가치가 있는 공공근로 성격과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공공산림정비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인 1,700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지도요원 300명을 2005년도 목표인원으로 잡았다.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공관련자와 환경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2005년도 48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원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형 사업은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성격과 일반 구직자에게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제공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고용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공익성 높은 사업추진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목적(행정자치부)”으로 하고 있다. 즉, ‘취업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생계유지 수단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것이다(김수현, 2003).

A유형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는 공공근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평가지표는 수혜자 만족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이나 국립공원, 생태우수지역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 국민을 설문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제시한 기관에서 시행한 만족도 조사를 사업평가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B유형은 민간화가 가능함에도 국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유형으로 방과후 교실사업, 장애아 교육보조원, 장애아 순회교육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사업수행 주체로 질 높은

<표 2-8>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 공공부문유형 사업(A유형) 내용

	공공산림 정비 숲가꾸기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기능인	현장지도요원	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생태보전지역 자연환경안내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농산촌 지역 실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임업관련 대학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 환경 관련 전공관련자 등</li> <li>선발방법: 공개 채용(서류전형, 면접)</li> <li>배치방법: 전국 18개 공원내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 환경 관련 단체 등</li> <li>선발방법: 공개 채용(서류전형, 면접)</li> <li>배치방법: 전국 9개 생태계보전지역</li> </ul>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개월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개월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일</li> </ul>
주요 내용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명</li> </ul>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숲가꾸기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숲가꾸기 사업 현지 지도, 작업장 임지관리, 공무원 보조사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탐방객들에게 자연해설 수행</li> </ul>
지원 금액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51,73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51,73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46,020원 등</li> <li>법정부담금 8.62%</li> </ul>
	부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장구, 장비유지비 등 전체 27억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숲가꾸기 사업 현지 지도, 작업장 임지관리, 공무원 보조사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정액여비 지급 (월 115천 원)</li> <li>피복비등 (연 100천 원)</li> </ul>
교육 훈련	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조합중앙회 3개 훈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조합중앙회 3개 훈련소</li> </ul>	-
	기술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에 대한 기본지식, 안전교육, 장비사용법 등(2주 교육, 3회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업에 관한 전문지식(2주 교육, 3회 실시)</li> </ul>	-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인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장애아 교육보조원의 경우는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아 순회교육지원사업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일자

<표 2-9>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 국가 직접수행사업(B유형) 내용

	장애아 교육보조원	장애아 순회교육지원사업
신분	▪ 일용직(향후 학교회계직 적용 검토)	▪ 강사
자격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 있는 자(시·도교육청 주관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를 전제로 채용)	▪ 특수교육 교사 및 치료교육 교사 자격 소지자
근무일수	▪ 220일 (학생 수업일수 적용, 향후 학교회계직 기준 적용 검토)	▪ 365일(교원복무 기준 적용)
배치	▪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취학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	▪ 농산어촌(군지역)의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에 개소당 2명 배치
지원내용	▪ 시·도교육청 주관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 시·도교육청 주관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참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 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를 대리할 수 없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li> <li>▪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육구, 교수</li> <li>▪ 학습활동, 문제행동 관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회교육 대상자 및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추가 교육지원(방과 후 별도 시간 편성 지원)</li> <li>▪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li> <li>▪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li> <li>▪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 지원</li> </ul>

주: 방과후 교실은 추후 보완 예정.

리를 제공하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구직자를 고용하는 면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 A유형과 상이하다.

셋째, C유형은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원 중단과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는 공공근로성 사업으로 방문도우미 사업, 대학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연구국악영화 시간제 강사풀,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다.

C유형의 사업은 민간화가 가능하여 민간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만 의지하여 정부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빨리 민간에서 수익구조

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익구조 확보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표 2-10>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 정부의존형 사업(C유형) 내용

	구분	내 용	
방문 도우미사업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우미 선정 대상: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00~150% 범위 내에 있는 저소득층 중 사·군구에서 선정</li> <li>▪ 서비스 수혜대상: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소년소녀 가장 중에서 사·군구에서 도우미 서비스 필요자를 선정</li> </ul>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인건비를 지원</li> <li>-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전문교육 실시</li> </ul>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li> </ul>	
	선발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 장애학생의 학습도우미 수요 조사 및 봉사활동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한 도우미 선발</li> <li>▪ 배치: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후 배치</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에 대한 장학금 지원</li> </ul>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도 중 8개월(1·2학기)</li> </ul>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월 200천 원(대응투자분 포함)</li> </ul>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법인, 단체, 개인</li> </ul>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천 원/개소·월(2004년 672천 원/개소·월)</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 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li> </ul>	
연극·국악·영화 시간 제 강사풀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전공자 및 장기(10년) 경력자</li> </ul>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월</li> </ul>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당 40,000원</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료 지원</li> </ul>	
아동복지시 설문화예술 교육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보육)시설 대상 예술강사</li> </ul>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2005년 6~12월</li> </ul>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연 600만 원 정도 지원</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에 문화예술장르별 전공자 강사 파견 및 현장체 협학습 제공</li> </ul>	
생활체육 지도자사업	구 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7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명</li> </ul>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1~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1~12월</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당 및 법정부담금 50%</li> <li>▪ 교육비 등 운영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당, 출장여비, 법정부담금</li> <li>▪ 운영비 지원</li> </ul>



40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넷째, D유형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민간자원결합 등 다양한 재원 동원으로 자립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다. D유형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일자리로 사회의 필요와 함께 민간에서 수익구조까지 확보한 사업이다.

<표 2-11>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 민간위탁을 통한 자립형 사업(D유형) 내용

	구분	내 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장기실직자, 여성, 고령자, 자활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65만~70만 원 지원(12개월)</li> <li>취업취약계층으로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한 자에게 외국인상담소,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에서 공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li> </ul>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구 분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별도 보육교사 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시 30분 이후까지 보육하는 별도 보육교사 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장애아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li> </ul>
	지원기간	보육교사로 재직시 계속 지원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의 50% 지원(200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의 80% 지원(200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의 80% 지원(2005년)</li> </ul>
	지원내용	보육교사 인건비		
	구 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지원대상	2005년 시설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가 결정함		
	지원기간	2005년 1~12월		
	지원금액	인건비의 30~80% 지원(2005년)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구 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원장, 교사, 취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법인 영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원장, 교사, 취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법인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원장, 교사, 취사부)</li> </ul>
	지원기간	2005년 1~12월		
	지원금액	인건비의 30~80% 지원(2005년)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제3장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평가방법론

### 제1절 사업평가의 체계와 구성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의 가장 중요한 두 수단은 성과감독과 사업평가이다.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인 정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정부 사업의 평가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업평가의 의의, 관점 및 종류

##### 가. 사업평가의 의의

사업평가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기관과 평가자들이 참여하며, 평가 범위와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석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어떤 정책은 몇 개의 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 평가는 넓은 의미의 사업평가라고 간주할 수 있다.

사업평가의 정의를 보면, OECD(1999)에서는 “특정 사업의 중요한 제반 측면과 그 가치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European Commission

(1997)은 다음과 같이 사업평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업평가는 분석적(analytical)이어야 한다. 즉, 사업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연구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사업평가는 체계적(systematic)이어야 한다. 사업평가에는 면밀한 계획하에 선택된 연구기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셋째, 사업평가는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평가자가 동일한 자료에 동일한 연구기법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사업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업평가는 논점중심(issue-oriented)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업평가는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을 다루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평가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user-driven)해야 한다. 주어진 정치적 환경, 사업의 제약요인, 그리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사업평가를 설계하고 실시해야 한다.

#### 나. 사업평가의 관점과 종류

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논점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EC의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성(relevance) 논점이다. 사업의 제반 목표가 사업의 수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효율성(efficiency)을 고려해야 한다. 즉, 투입물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결과로 전환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이다. 즉 사업의 영향이 사업의 특정 목표 및 일반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효용성(utility)이다. 즉, 사업의 영향이 실제로 사업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즉,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

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평가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운영평가와 효과평가로 구분한다. 운영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사업의 관리와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개 사업관리주체들을 위해 실시된다. 반면 효과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사업의 본질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효과평가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와 사업 집행자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거나 예산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중간평가(intermediate evaluation)는 사업집행 도중에 실시되는 평가를 의미하며, 사후평가(ex post evaluation)는 사업완료 후에 실시되는 평가를 의미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의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시도하지 않는다. 반면 사후평가는 효과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후평가는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셋째,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구분이다.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는 평가대상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기구에서 내부인력에 의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외부평가(external evaluation)는 외부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이다. 이 외부인력은 전문가 그룹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면평가의 일환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수혜자나 일반인 그룹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평가는 사업평가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유용하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 2. 사업평가의 준비

### 가. 관리체계의 구성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원회는 평가대상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부처의 공무원, 지원부처의 공무원, 민간 이해집단 관련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전문가 등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성한다.

#### 나. 평가계획과 설정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평가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평가계획의 설정에는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설정, 분석의제와 비교기준의 설정, 정보 수집과 작업계획 수립, 평가담당자 선정과 평가 실시 등의 구성요소가 채택된다.

평가목적과 범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평가의 목적은 집행체계의 개선, 책임성 확보 및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에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 사업의 사업평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의 범위가 조직, 기구, 시간, 지역 등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의 논점을 설정해야 한다. 평가의 논점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특성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분석의제란 사업평가를 위해 제시하는 다양한 질문간의 논리적 구조를 말한다. 분석의제는 사업평가를 위한 질문의 불명확성을 배제하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분석의제가 설정되면 엄밀하고 비교가능한 비교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사업평가의 목적이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것이므로 평가를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의 수집은 사업평가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사업 감독기관으로부터 취할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문헌이나 행정자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범위와 시간

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작업계획에는 사업평가의 예산내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평가담당자를 선정한다. 평가담당자는 전문적인 컨설팅 관련자, 대학 등 연구기관 혹은 다양한 전공을 종합한 평가기구의 컨소시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3. 사업평가의 모형

적절한 평가모형을 설정하는 일은 사업평가에서 중요한 일이다. 평가자는 예산, 시간,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형을 구성해야 한다. 평가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가. 이상적인 평가모형

이상적인 평가모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업시행 전의 관찰결과와 사업시행 후의 관찰결과를 모두 비교할 수 있는 평가모형이다.

#### 나. 무작위실험모형과 준실험모형

이상적인 평가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하게 무작위 실험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이 두 집단이 갖는 동일한 평균 및 확률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러한 실험모형을 구성하기 힘들 경우에는 준실험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준실험모형은 가능한 실험집단과 유사하도록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하다는 통계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석상 유의할 점이 있다.

#### 다. 암묵적 모형

암묵적 모형은 비교대상이 되는 통제집단이 없이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된 후의 집단특성을 관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험집단의 상태를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의 실험집단 상태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 4.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 가.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방법에는 문헌조사(literature survey)와 검토(review), 관측(observation), 사례연구(case study) 등이 있다.

문헌조사는 유사한 분야의 기존 사업평가 자료나 연구결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검토는 기존자료를 검토하는 것이지만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측은 문헌조사 혹은 검토와는 달리 관측대상을 선정, 관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평가대상 사업이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몇 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분석 방법

분석방법은 사업평가의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분석방법에 맞도록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에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방법이 있다. 정량적 분석방법에는 모형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주로 한다. 모형은 평가대상 사업과 그 효과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석모형에는 일반적으로 시물레이션모형, 투입산출모형, 미시경제모형, 거시경제모형 등이 있다.

## 5. 보고서 작성과 평가의 활용

평가보고서의 체계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업평가의 대상, 목적, 평가모형, 평가방법, 분석모형, 평가의 결과, 정책건의 및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하는 목적은 정책결정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 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정책관리는 ‘계획 → 예산배정 → 집행 → 성과 → 평가 → 평가결과의 환류’라는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내용을 개선하거나 확대, 폐지 혹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는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예산배분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는 사업평가가 사업 또는 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둘째,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는 사업평가의 결과가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칠 때 가능해진다.

셋째, 책임성 확보수단의 제공은 사업평가가 정부활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이나 국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 제2절 일자리 창출정책의 평가방법론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사업은 일반적으로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정책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과, 정책사업의 프로세스를 추적하여 각 단계별 성과지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주로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주로 성과



분석에 집중하여 정책사업을 위한 투입자원의 성과, 즉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후자는 정책사업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특성상 그 결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설문을 통해 정책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즉, 관련 당사자의 주관적인 진술 선호(state preference)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수치화된 양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정량적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정성적 분석을 시도할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1. 정량적 평가방법<sup>12)</sup>

일자리 창출정책을 평가하기 이전에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명확히 규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평가의 지표가 잘못 설정되는 경우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참가 후의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가로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평가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들로 하여금 취업률만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적합한 직종보다 못한 직종에 하향취업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든다. 더 심한 경우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취업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참가 시키는 문제(creaming effect)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지표로 선정된 취업률 이외에도 프로그램에서 부가적으로 얻고자 하는 생산성의 향상효과, 생계보호효과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정책결과 평가(outcome evaluation)에 있어서는 사전에 평가지표 설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가능성의 제고 효과, 임금상승효과, 실업기간 단축효과, 생계보호효과 등이 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

12) 구체적인 정량적 평가방법론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 미친 영향과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취업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다른 근로자가 실직을 할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업에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인력수요를 이 지원금에 연계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모형, 개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미시적 효과분석, 투입산출모형, 전치효과/대체효과 등을 고려한 거시적 평가, 그리고 사회적 순이익을 계산하는 비용-편익 분석모형 등이 이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모형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모형으로 입력자료, 수확모형, 출력자료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자금이 수혜산업 혹은 기업의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지를 모형을 통해 추출해 내는 작업이다. 시뮬레이션모형은 회귀분석과 같은 다른 통계적 기법과 접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은 경제내 각 부문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정태적 파급효과 모형이다. 투입산출모형에서 각 부문의 산출물은 다른 부문의 투입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각 산업부문은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를 맺으며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을 받은 산업의 생산이나 고용이 타업종의 생산이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파급효과를 거친 지원사업이 경제 전체적으로 총고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미시적 분석에서 주된 평가항목은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수혜를 입은 후에 실제 노동시장의 성과(취업, 취업가능성, 임금 등)가 더 나아졌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보다 취업가능성이 더 늘어났는지, 혹은 취업자의 경우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임금이 더 상승하였는지 등이 주요 평가의 대상이 된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하여 개별 근로자의 생계보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사업에 참가한 덕분에 향후 취업가능성이 높아졌는지 등이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거시적인 평가는 노동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 즉 산업경쟁력과 물가안정, 실업률 감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미시 평가에서 알 수 없는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임금보조금 정책(혹은 훈련정책)이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반면 다른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시적인 평가만으로는 이 같은 효과를 분석할 수 없지만 거시적인 평가에서는 이 모든 효과를 분석하여 노동시장에 미친 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비용-편익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다른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순이익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직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이 프로그램만을 평가하지 않고, 만약 이 프로그램 대신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며, 이 결과보다 훈련프로그램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2. 정성적 평가방법<sup>13)</sup>

### 가. 평가단계

정성적 평가란 정책사업의 프로세스를 추적하여 각 단계별 성과지표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시책사업의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등의 사업 단계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평가지표는 상기의 사업 특성 구분을 감안하고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로 적절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그 특징상 중앙정부의 전 관련 부서가 연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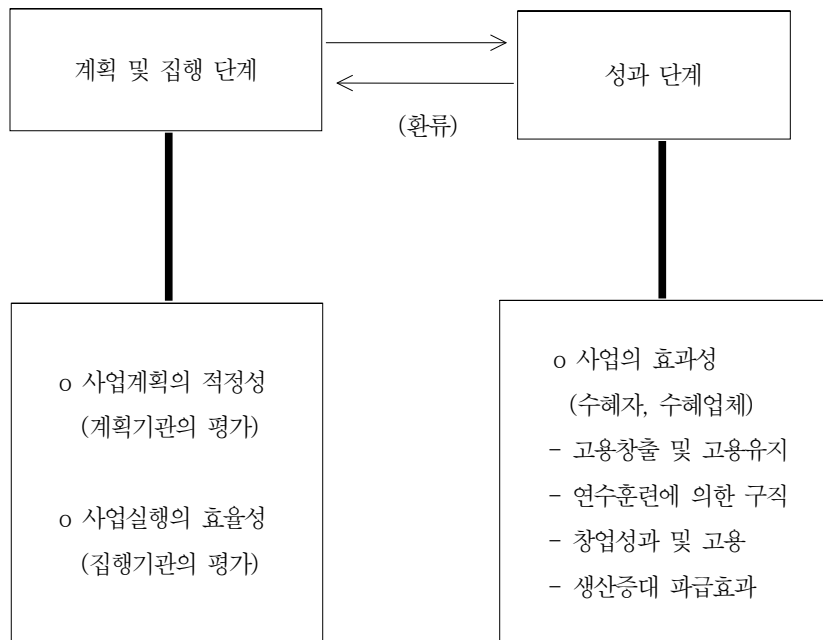
13) 여기서의 정성적 평가모형은 고영선·윤희숙이주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2004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과평가 모형을 구성한 것이다.

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보면,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지원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시행의 단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의 수행과정을 “계획 및 집행 → 성과”의 2단계로 요약하면 계획 및 집행 단계의 평가 대상은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이며, 집행단계의 평가대상기관은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청이나 고용안정센터 등이 될 수 있다.

성과단계의 평가 대상은 지원사업의 수혜자 혹은 수혜업체가 된다. 직접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신규고용 창출, 고용유지, 근무조건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이용하여 사업성과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반면, 간접지원의 경우에는 사업특성에 따라 연수나 훈련에 의한 구직활동의 성과, 창업지원으로 인한 성과 등을 사업성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성과단계에서는 주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평가의 주요 핵심이 된다.

[그림 3-1] 일자리 창출사업의 평가단계와 평가항목



나. 평가관점

평가의 관점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각 단계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 것 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크게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시의성의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필요성: 사업목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관점이다.
- 효율성: 계획입안, 시책의 행정적 집행절차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관점이다.
- 효과성: 사업 시행이 기대되는 결과를 얻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관점이다.
- 시의성: 평가대상 사업이 시의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관점이다.

필요성 관점이란 시책목적과 사업목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즉,

- ① 가장 중요한 평가관점으로,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상 그룹이 적절히 선정되었는가?
- ② 일자리 지원사업의 시책목표인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고용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각 세부사업의 내용이 타당한가?
- ③ 각 사업주체의 사업목적이 시책목표에 부합되고 있는가? 시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점검한다.

효율성 관점이란 주로 '일자리 창출'사업의 행정적 집행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즉,

- ①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지원사업의 예산이 각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 ② 일자리 지원사업의 행정적 집행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점검한다.

효과성 관점은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과, 즉 고용효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즉,

- ① 가장 중요한 평가관점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된 사업성과(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②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 ③ 동 지원사업으로 인한 고용유지 정도, 고용안정성,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 등을 점검한다.

시의성 관점이란 일자리 지원사업이 시의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관점이다. 또한 시책의 변화 가능성, 지원대상의 변화 가능성, 유사정책과의 중복성 등을 평가하는 관점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평가주체, 평가단계와 평가관점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우선 시책단계의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자체평가를 보면, 필요성의 평가는 주로 계획단계의 평가에 해당된다. 효율성은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단계를 모두 걸쳐고 있으나 집행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효과성은 성과단계에서 주로 점검한다. 시의성은 계획과 집행단계에서 점검한다. 또한 자체평가는 단계별, 관점별 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 평가는 관점별 평가로 구분한다.

<표 3-1> 평가주체, 평가단계 및 평가관점

평가주체	평가단계	평가의 관점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시의성
전문가평가 자체평가	계획단계	◎	○		○
	집행단계		◎		○
	성과단계		○	◎	
	사후관리단계		○		
수요자 평가		○	◎	◎	○

### 제3절 평가모형 및 성과평가지수의 개발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모형에 적합한 공통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통적인 지표는 자료의 접근성, 분석의 용이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sup>14)</sup>

#### 1. 평가모형의 선택

추가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고, 특정사업의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의 분석모형에서 제시한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가 않다.<sup>1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추가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의 경우 평가대상 주체가 사업의 집행기관과 수혜사업체가 되는데, 사업의 집행기관의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 집행기관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혜기업 중심의 평가가 주축이 된다. 물론 수혜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으

---

14)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고영선·윤희숙이주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2004를 참조. 또한 노동부사업 관련 성과지표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대해서는 금재호·김승태·윤미래, 『노동행정에 있어서 성과관리제도 도입방안』, 노동부, 2004를 참조.

15)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고용보조금사업으로 이에 대한 평가기법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는 금재호 외,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2003을 참조.

나 사업주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사업의 성격상 수혜근로자가 동 제도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집행기관, 고용된 근로자, 서비스수혜자의 구분이 가능하고 이들을 각각 대상으로 한 사업의 평가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평가방법을 각각 다르게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다. 즉, 사업의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등의 사업 단계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단계에서 사업효과를 집중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계량화 지표와 수요자 만족도 지표를 결합하여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성과평가지수”로 정한다.<sup>16)</sup>

## 2. 보조금사업의 성과평가지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 평가단계와 평가관점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관점별 평가기준과 평가사항을 점검한다. 평가지표는 객관성 담보를 위한 정량적 지표를 선정하고, 정성적 지표는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를 정량화한다.

평가주체는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와 관련 당사자에 의한 내부평가, 수혜업체 및 해당구직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평가(설문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내부평가 혹은 수요자 평가를 통해 점수화를 시도한다.

16) 통상 지표(indicator)와 지수(index)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두 개념은 구분되는데, 즉 각 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계산하여 가중합계를 하나의 점수로 산출한 것을 지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 지표들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점수는 성과평가지수(Performance Evaluation Index: PED)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 필요성 관점의 기준과 평가지표

1) 사업의 필요성

- 시책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사업이 시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

2)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직접 및 간접 지원사업에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는가?
- 주어진 예산으로 이 사업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평가지표: 정성적 분석]  
[평가지표: 정량적 지표]  
· 사업별 예산규모, 사업별 목표 일자리수

3) 계획 입안의 효율성과 정책 공감대

-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직간접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계획수립시 관련당사자인 입안기관-집행기관-교육훈련기관-수혜업체 및 구직자간의 의견교환이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 사업의 목표, 지원내용, 추진성과 등에 대한 관련기관 사이의 정책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  
[평가지표: 정성적 분석]

4) 지원자금의 조성 및 배분의 적절성

-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의 자금조성 및 자금배분이 적절한가? 특히 간접지원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가?  
[평가지표: 정성적 분석]

[평가지표: 정량적 지표]

- 사업별 자금 조성 내역과 자금배분 실적
- 사업별 자금 배분액, 산업별(사업별) 총생산액, 산업별(사업별) 고용 인원수 및 취업자수

나. 효율성 관점의 기준과 평가지표

1) 집행절차의 효율성

- 추진체계가 적절하고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지원시책의 홍보체계가 효율적인가?
- 담당기관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 절차의 공정성은?
- 준비서류는 간편하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 사업별 지원 조건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 시책관리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2) 지원조건 및 절차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 수혜기업은 자금지원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 해당구직자는 사업의 교육 및 훈련, 수혜조건 및 절차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3) 사후관리의 효율성

- 사후관리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가?
-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평가는 효율적으로 환류되고 있는가?

[평가지표: 정성적 분석]

- 실태조사 유무
- 성과관리 유무
- 차기 계획에 반영 여부
- 사후관리 시스템의 보유 유무와 효율적 운영 정도

58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 성과평가의 공개 여부
- [평가지표: 정량적 지표]

다. 효과성 관점의 기준과 평가지표

- 자금지원이 수혜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가?
- [평가지표: 정량적 지표]
-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으로 취업한 취업자 수
  - 지원액, 사업별(산업별) 취업자 수
  - 복합지표(DEA지표)
  - 투입요소: 자본, 노동, 시설,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자금 등
  - 산출요소: 매출액, 고용자 수,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
  - 평가지표: 기술효율성 지수, 지원자금의 감축가능성 지수
    - 복합지표(고용유발계수)

라. 시의성 관점의 기준과 평가지표

- '일자리 창출'이란 상위의 정책목표에 비추어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 [평가지표: 정성적 분석]

3.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① 모든 세부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② 계량화가 가능하며, ③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효율성, 사업효과, 취업성과, 수혜자 만족도, 사업지속성 항목을 정하고, 각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각각 예산효율성(항목) 지표, 사업효과(항목) 지표, 취업성과(항

목)지표, 수혜자 만족도(항목) 지표, 사업지속성(항목) 지표라고 한다.

#### 가. 예산효율성 지표

예산효율성 지표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집행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 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즉, 예산효율성은 지원된 예산대비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었으며, 지원된 금액이 수혜자의 고용을 유인하는 데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고용효과는 지원예산대비 총지원인원수 및 실제취업인원수를 통해 파악될 수 있으며, 지원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혜택으로 취업한 수혜자들이 받은 임금 대비 지원금 지급수준으로 파악될 수 있다. 예산효율성 항목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주요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예산대비 취업자 수 혹은 지원 인원수
- ② 수혜자 평균임금대비 지원금액

#### 나. 사업효과성 지표

사업의 성과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사업효과성 항목을 선정하였다. 사업효과성 지표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사업목표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접적인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사업효과성 지표는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혜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것으로 주관적 평가지표이다.

#### 다. 취업성과 지표

일자리 창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과 취업 후의 고용안정성에 있다. 취업성과 항목의 계량화가 가능한 주요 성과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총고용효과: 취업자수

- ② 순고용효과 : 총고용효과-사중손실-전치효과-대체효과
- ③ 고용지속성
- ④ 사업만족도

여기서 순고용효과는 총고용효과에서 사중손실과 전치효과 및 대체효과를 차감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국민경제적 거시적 입장에서 볼 때, 지원사업의 순고용효과는 가장 이상적인 성과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순고용효과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효과, 즉 지원대상 목표그룹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거시적 시각에서 포착할 수 있는 지표는 지원예산과 지원사업의 순고용효과 및 고용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순고용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중손실을 측정해야 한다. 이 사중손실 자료는 지원사업 시행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축할 수 있다. 고용지속성과 고용만족도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주관적인 지표이다.

#### 라. 수혜자 만족도 지표

이 지표는 상이한 사업목적에서 수혜자가 동 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포착하고, 또한 사업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수요자의 사업서비스 만족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사업의 집행과정과 사업성과 및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지표이며 보조적 성격이 강한 지표이다.

#### 마. 사업지속성 지표

모든 세부사업의 사업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업지속성 지표를 선정하였다. 동 지표는 수혜자 만족도 지표와 같이 보조적 성격이 강한 지표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시의성을 평가하는 주관적 보조지표이다.

&lt;표 3-2&gt;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평가지표

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자료
예산효율성 지표	예산대비 지원인원 수	행정통계
	예산대비 취업자 수	행정통계
	임금대비 지원금액	행정통계
사업효과 지표	사업 효과성	실태조사
취업성과 지표	순고용 효과	행정통계 및 실태조사
	고용 지속성	실태조사
	고용 만족도	실태조사
수혜자 만족도 지표	수행기관 만족도	실태조사
	수혜자 만족도	실태조사
사업지속성 지표	사업 지속성	실태조사

#### 4. 자료 수집방법

사업의 기초현황에 대한 자료는 행정통계를 통해 수집된다. 보조금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인 활용실적에 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용가능한 행정통계가 별로 없는 만큼 행정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수혜근로자의 특성이나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유들이 본 연구에서 평가방법으로 정성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모형에 입각한 설문지개발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표들을 추출한다. 성과평가지표를 추출하기 위한 세부사업의 실태조사 설문은 [부록]에 나타나 있다.

#### 5. 평가지표의 집계와 가중치 선정

설문을 통해 자체평가 혹은 수요자 시책평가를 실시하여 지수화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와 조사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 경우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객관화시키고, 종합평가 점수로 집계하기 위해서는 평가단계와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 가중치는 항목점수를 각 단계의 단계점수로 집계하거나 단계점수를 종합평가 점수로 집계하는 데 이용된다. 이 가중치의 크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가중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중치의 선정은 전문가 그룹에서 결정하여 모든 응답자의 항목 및 단계점수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응답자 스스로가 항목이나 단계의 중요도에 따라 자신이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세부사업별 평가는 사업평가지표, 항목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실태조사나 행정통계를 기초로 조사된 세부평가지표는 항목평가지표로 집계되고, 항목평가지표는 사업평가지표로 집계된다. 이 사업평가지표를 통해 세부사업별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설문조사에 의한 조사결과를 점수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문 항목은 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가장 낮은 척도에 20점을 부과하고 가장 높은 척도에 100점을 부과하였다. 3점 척도의 선택에는 가장 낮은 척도에 20점, 중간 척도에 60점, 가장 높은 척도에 100점을 부과하였다. 2점 척도에서는 최저 20점, 최고 100점으로 배점하였다.

척도로 관측되지 않고 수치로 나타난 응답에 대해서는 응답한 수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 최소 20점에서 최대 100점이 되도록 표준화하였다. 가중치는 모든 응답자의 가중치를 단순 평균하여 대표 가중치로 선정하였다.

<표 3-3> 척도의 배점 원칙(예)

5점 척도	척도	1	2	3	4	5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배점	100	80	60	40	20
3점 척도	척도	1		2		3
		명확		보통		미흡
	배점	100		60		20
2점 척도	척도	1				2
		있다				없다
	배점	100				20

평가항목 척도에 대한 배점 점수를 가중치를 고려하여 집계한다. 즉, 점수의 집계는 항목 평가점수와 항목 가중치의 곱을 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K$  사업의 설문에 의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K = \sum_i w_i A_i \dots \dots \dots (1)$$

여기서,  $K$  사업의 성과평가 점수는  $E^K$ 로 표현된다.  $A_i$ 는  $i$  평가항목의 점수이며,  $w_i$ 는  $i$  평가항목의 가중치이다.

가중치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상기와 같이 단순평균 가중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부평가지표와 항목평가지표의 집계도 식(1)과 같은 방법으로 가중치 집계를 원칙으로 한다.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의해 지표별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 제4장

###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평가

#### 제1절 사업 활용실적

여기서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활용실적을 통하여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1.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활용실적

###### 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 339개 사업장, 2005년 353개 사업장이 지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실적이 2005년 8월까지의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사업장이 2004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증가정도를 보면 2004년은 1,33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이에 대한 지원금은 37.9억 원이다. 2005년에는 1,5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35.5억 원이 지원되었다. 사업장당 창출된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2004년은 평균 3.95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4.36개이다.

<표 4-1> 업종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 원)

	2004			2005		
	지원 사업장	지원 인원	금액	지원 사업장	지원 인원	금액
제조업	130	765	2,229,625	138	902	2,031,836
건설업	8	17	59,560	5	13	22,926
도소매업	41	87	241,025	37	97	235,026
숙박음식점업	2	9	14,190	1	4	8,028
운수창고통신업	6	25	78,235	8	35	85,536
금융보험업				2	3	5,508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37	397	1,069,220	144	451	1,081,034
교육서비스업	2	1	4,655	3	2	2,718
보건사회복지사업	2	15	31,660	2	7	13,212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11	21	67,825	13	28	67,728
전 체	339	1,337	3,795,995	353	1,541	3,553,552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4-2> 사업장규모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5인 미만	19	38	99,575	19	43	88,596
5~9인	60	52	118,730	61	52	115,148
10~29인	90	158	414,175	100	181	430,914
30~49인	62	188	560,010	66	235	581,168
50~69인	36	144	451,790	30	149	351,936
70~99인	24	124	301,895	24	161	384,108
100~149인	17	146	528,065	18	172	382,608
150~299인	21	286	799,465	24	300	720,978
300~499인	8	116	349,805	8	158	334,890
500~999인	2	87	172,485	3	91	163,206
전 체	339	1,337	3,795,995	353	1,541	3,553,552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lt;표 4-3&gt;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서울	170	509	1,438,730	176	586	1,355,060
부산	9	39	65,945	8	20	35,604
대구	8	29	58,515	12	49	119,880
인천	9	32	77,460	11	62	127,248
광주	3	10	19,780	3	6	11,286
대전	10	49	175,955	10	13	32,256
울산	2	2	3,255	4	7	12,792
경기	58	329	948,770	68	390	879,464
강원	7	47	215,005	6	46	130,050
충남	12	76	155,575	10	93	174,222
충북	3	14	60,340	2	10	35,814
전북	4	5	8,155	3	3	8,484
경남	16	80	203,255	16	94	187,212
경북	26	111	362,245	24	162	444,180
제주	2	5	3,010			
전 체	339	1,337	3,795,995,000	353	1,541	3,553,552,00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활용사업장 특성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40.4%)과 제조업(38.3%)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78.7%를 점유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전체 활용사업장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의 활용정도가 70~80%에 이르고 있다. 즉, 2004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49.9%에 이르고, 30~99인 사업장이 36.0%이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9%에 불과하다. 200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소재지별 활용실적을 보면 수도권지역이 각각 전체 활용사업장의 69.9%(2004년), 72.3%(2005년)에 이르고 있다. 이어서 영남지역이 2004년과 2005년 모두 18.1%를 차지하고 있다.

나. 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의 경우 2개 제조업체에서만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의 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교대제전환에 따라 늘어난 일자리는 80개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48백만 원에 불과하다. 2005년 들어 활용사업장이 다소 증가했지만 2005년 8월 현재 6개 업체에 불과하고 늘어난 일자리는 284개에 그치고 있다.

한편 사업장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은 <표 4-5>와 같다.

<표 4-4> 업종별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 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제조업	2	80	48,204	3	90	148,998
보건사회복지사업				3	194	134,100
전 체	2	80	48,204	6	284	283,098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4-5> 사업장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 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사업장 규모	10~29인				1	165	98,700
	30~49인				1	2	2,400
	50~69인				1	5	8,406
	70~99인	1	5	3,204	1	10	6,204
	150~299인				1	28	33,000
	1,000인 이상	1	75	45,000	1	75	134,388
지역	대구	1	5	3,204	1	10	6,204
	경기				2	30	35,400
	충북	1	75	45,000	1	75	134,388
	경북				2	169	107,106
전 체		2	80	48,204	6	284	283,098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다. 기초 통계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경우 2004년 10월 이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활용실적에서 보이듯 기업의 참여도가 극히 적다. 그래서 설문 참여업체도 단 2개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수혜업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2개 설문대상 업체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육상운송업이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은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교대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 규모가 1,000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업종별 및 규모별 분포

		빈도	비중(%)
업종	조립금속제품업	1	50.0
	육상운송업	1	50.0
규모	30~49인	1	50.0
	1,000인 이상	1	50.0
전체		2	100

2.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의 활용실적

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에는 8개 사업장, 2005년에는 15개 사업장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 이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이고, 사업장규모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신규업종 진출에 따라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2004년의 경우 46개로 사업장당 평균 5.8개에 불과하다. 반면 2005년에는 161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사업장당 평균 10.7개

&lt;표 4-7&gt; 활용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명, 천 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업종	제조업	5	32	33,804	8	94	152,172
	부동산임대업	3	14	16,008	7	67	121,194
규모	5인 미만	3	19	22,404	8	87	157,176
	5~9인	4	21	20,208	3	21	37,800
	10~29인				3	45	63,396
	50~69인	1	6	7,200	1	8	14,994
지역	서울	4	25	28,608	8	110	180,396
	대전	1	6	7,200	1	8	14,994
	경기	2	11	8,400	2	16	28,188
	충남				1	6	10,800
	전북	1	5	5,604	2	15	26,388
	경남				1	7	12,600
전 체		8	46	49,812	15	161	273,366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지원금은 2004년 49백만 원, 2005년 27천만 원에 불과하다.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주는 부담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에 6개 사업장, 2005년에는 17개 사업장만이 제도를 활용하였고, 고용환경개선에 따라 늘어난 일자리는 2004년 16개, 2005년 77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원액은 2005년의 경우 5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장당 평균 지원액은 27백만 원(2004년)에서 29백만 원(2005년)에 불과해 30백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70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표 4-8> 업종별·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 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
업종	제조업	5	15	145,476	17	77	502,195
	부동산임대업	1	1	16,863			
규모	5인 미만	1	1	16,863	3	23	98,805
	5~9인				3	2	54,182
	10~29인	2	7	68,400	4	10	117,421
	30~49인	3	8	77,076	2	11	72,768
	50~69인				3	13	102,211
	70~99인				1	4	16,402
	150~299인				1	14	40,404
지역	서울	1	1	16,863	1	1	10,015
	광주				1	3	33,600
	경기	1	5	21,542	3	17	107,419
	충북	1	1	30,804			
	전북	1	2	24,730			
	경남				8	25	235,965
	경북	2	7	68,400	4	31	115,195
전 체		6	16	162,339	17	77	502,195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 제조업이 활용하며 이들 사업장의 규모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활용정도가 높다. 한편, 참고로 2005년 클린사업장 지원실적을 보면 모두 50개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였고 지원인원은 271명에 이르고 있다. 클린사업장 역시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사업장규모도 5~30인 사업장 비율이 높다.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제도의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양 제도의 통합 혹은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t;표 4-9&gt; 클린사업장 지원실적(2005년)

(단위: 개소, 명, 천 원)

		활용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전 체		50	271	325,620
업종	제조업	47	259	310,428
	전기가스수도사업	1	3	3,600
	도소매업	1	7	7,992
	부동산임대업	1	3	3,600
규모	5인 미만	8	25	30,000
	5~9인	17	80	96,396
	10~29인	21	137	164,424
	30~49인	4	29	34,800
지역	대구	1	1	1,200
	인천	12	69	83,196
	경기	17	97	115,992
	경남	15	73	88,032
	경북	5	31	37,20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활용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04년의 경우 2,560개 사업장이 이 제도를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6,11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사업장 특성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732개(2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 614개(24.0%), 도소매업 480개(18.8%) 순으로 나타나 이들 3개 업종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71.4%에 이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309개소로 전체 활용사업장의 90.2%에 이르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개로 0.5%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이어져 앞에서 언급했던 3개 업종(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도소매업)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70.3%에 이르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7,342개소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나 소규모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반면 30~99인과 100~299인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 1.7%에 불과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lt;표 4-10&gt; 업종별·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 원)

	2004			2005			
	지원 사업장	지원 인원	금액	지원 사업장	지원 인원	금액	
업 종	농수림어업	4	6	4,253	14	71	41,296
	광업	1	3	900	2	12	4,475
	제조업	614	1,513	829,451	1,781	9,347	5,285,666
	전기가스수도사업	6	10	5,463	10	53	28,813
	건설업	185	380	206,019	635	2,682	1,547,886
	도소매업	480	1,110	621,659	1,563	7,525	4,375,314
	숙박음식점업	23	60	33,443	57	338	194,095
	운수창고·통신업	116	251	142,786	340	1,723	1,007,767
	금융보험업	27	71	40,840	72	478	272,010
	부동산업대업	732	1,828	1,006,273	2,253	12,560	7,199,129
	교육서비스업	122	277	159,990	414	2,169	1,261,946
	보건사회복지사업	67	130	72,729	290	1,685	979,768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182	472	266,815	535	2,883	1,656,299
기타 산업	1	2	1,200	1	4	2,090	
규 모	5인 미만	1,404	3,197	1,812,799	4,440	21,826	12,647,491
	5~9인	474	1,099	602,737	1,593	8,008	4,573,977
	10~29인	431	1,014	542,686	1,309	6,974	3,980,829
	30~49인	96	288	156,847	251	1,477	827,386
	50~69인	42	121	63,584	122	677	375,857
	70~99인	35	96	50,175	82	454	247,083
	100~149인	38	158	87,272	81	726	408,908
	150~299인	27	76	41,033	53	561	324,092
	300~499인	9	21	9,963	23	421	238,148
	500~999인	4	43	24,726	11	361	203,974
1,000인 이상				2	45	28,810	
지 역	서울	707	1,622	907,335	2,377	11,759	6,836,007
	부산	310	842	449,881	918	5,276	3,032,516
	대구	135	310	172,921	429	2,218	1,264,201
	인천	78	157	82,534	264	1,353	765,514
	광주	96	235	125,590	292	1,677	959,700
	대전	167	399	210,502	435	2,574	1,462,100
	울산	36	81	46,155	117	525	302,275
	경기	317	741	414,034	898	4,276	2,436,809
	강원	50	105	58,979	182	837	479,636
	충남	45	134	76,109	136	770	431,110
	충북	59	124	72,680	189	953	546,057
	전남	55	140	76,387	177	791	454,270
	전북	238	546	314,220	731	4,131	2,364,240
	경남	136	333	190,553	383	1,903	1,086,133
	경북	102	272	147,895	320	1,813	1,031,279
	제주	29	72	46,045	119	674	404,705
전 체	2,560	6,113	3,391,827	7,967	41,530	23,856,56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4-11> 평균지급액 및 지급월

(단위: 원, 월)

	2004			2005			
	평균 지원금	평균 지급월	지원액	평균 지원금	평균 지급월	지원액	
업 종	농수림어업	708,923	11.5	4,253,540	581,646	4.2	41,296,890
	광업	300,000	11.0	900,000	372,983	2.8	4,475,800
	제조업	543,190	11.4	829,451,660	562,364	3.6	5,285,666,570
	전기·가스·수도사업	546,387	11.5	5,463,870	543,651	3.4	28,813,540
	건설업	540,733	11.4	206,019,410	576,708	3.7	1,547,886,280
	도소매업	557,042	11.4	621,659,320	580,126	3.7	4,375,314,180
	숙박·음식점업	557,386	11.3	33,443,210	567,529	3.7	194,095,120
	운수·창고·통신업	566,612	11.4	142,786,340	583,198	3.7	1,007,767,540
	금융·보험업	559,460	11.5	40,840,620	567,871	3.9	272,010,400
	부동산임대업	548,079	11.4	1,006,273,810	571,042	3.7	7,199,129,510
	교육서비스업	569,362	11.4	159,990,860	580,980	3.8	1,260,146,000
	보건·사회복지사업	554,840	11.5	72,129,260	580,017	4.0	976,168,760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555,865	11.3	266,815,250	573,465	3.7	1,653,299,820
기타 산업	600,000	11.5	1,200,000	522,580	2.3	2,090,320	
규 모	5인 미만	562,631	11.4	1,812,799,900	577,880	3.7	12,647,491,820
	5~9인	543,987	11.4	602,737,570	569,824	3.8	4,573,977,710
	10~29인	534,666	11.4	542,686,820	567,473	3.7	3,980,829,240
	30~49인	533,494	11.3	156,847,420	556,039	3.5	827,386,960
	50~69인	525,488	11.3	63,584,080	551,111	3.6	375,857,780
	70~99인	522,660	11.4	50,175,430	543,039	3.4	247,083,010
	100~149인	548,883	11.4	87,272,480	561,687	3.4	408,908,500
	150~299인	526,070	11.4	41,033,470	577,704	3.6	324,092,260
	300~499인	452,888	11.4	9,963,540	565,673	3.5	238,148,700
	500~999인	575,033	11.1	24,726,440	565,026	4.2	203,974,470
1,000인 이상				626,310	4.5	28,810,280	
전 체	550,800	11.4	3,391,827,150	572,511	3.7	23,856,560,73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36개로 0.5%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 활용사업장을 비교해 보면 2004년의 경우 역시 서울이 707개소(2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남권 719개소(27.2%), 수도권 395개소(14.6%) 순이다.

끝으로 사업장당 평균 신규고용인원을 보면 2004년은 2.4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은 5.2명으로 신규고용된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신규고용인원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5.0명에 그쳤지만 100~299인은 9.6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0명으로 나타나 사업장규모에 따른 격차는 큰 편이다. 한편 평균지급액 및 지급 개월수를 보면 2004년은 평균지급월 11.4개월, 평균지원액 55만 원으로 나타났다.

#### 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에 179개 사업장에서 245명이 신규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364개 사업장에서 787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채용한 전문인력을 보면 2004년은 평균 1.4명에 불과하였고, 2005년에는 다소 증가한 2.2명이다.

지원금액은 2004년에는 5.4억 원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활용인원의 급증으로 지원금액이 23.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문인력채용장려금 활용 사업장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0%를 넘어 활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부동산임대업도 전체 활용사업장의 40% 가까이를 차지해 이들 2개 업종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90%를 점하고 있다.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기업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78%를 차지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에 0.8%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27.4%)과 수도권(29.6%)의 비중이 높다.

한편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인별DB를 이용해 평균 지원금액 및 지급월을 보면, 2004년의 경우 1인당 평균지원액은 222만 원으로 나타났고 4개월 동안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의 평균지원액은 298만 원이다. 제도상으로는 채용된 전문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지만, 2004년의 경우 평균 지원기간이 4개월에 그친 원인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다.

제4장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평가 75

<표 4-12> 업종별·규모별 및 지역별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 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업종	제조업	105	139	310,036	190	383	1,184,186
	건설업				3	5	17,832
	도소매업	3	3	4,615	15	36	98,918
	운수창고통신업				2	7	17,264
	부동산임대업	69	101	224,544	152	353	1,053,494
	교육서비스업	1	1	3,600	1	1	3,600
규모	5인 미만	70	92	215,752	136	281	883,075
	5~9인	23	35	73,393	61	132	393,986
	10~29인	48	65	143,373	88	186	547,624
	30~49인	13	14	32,592	29	66	204,981
	50~69인	8	13	30,270	13	34	105,836
	70~99인	5	8	16,025	10	20	56,505
	100~149인	7	9	16,811	10	30	85,211
	150~299인	5	9	15,582	14	31	83,249
	300~499인				3	7	24,425
지역	서울	49	72	148,277	108	272	831,754
	부산	13	19	35,283	20	45	153,730
	대구	8	9	19,277	14	26	81,530
	인천	3	5	8,640	7	13	34,726
	광주	6	7	12,504	10	23	65,763
	대전	12	17	36,636	31	67	196,995
	울산	1	1	2,400	2	5	13,885
	경기	50	68	157,883	95	183	555,374
	강원	1	1	2,941	2	2	3,600
	충남	3	3	7,741	8	14	39,700
	충북	4	5	11,600	7	14	39,641
	전남	1	2	7,200	2	5	17,922
	전북	10	13	30,240	14	30	85,619
	경남	14	18	49,641	30	58	176,340
	경북	4	5	13,532	13	24	74,607
	제주				1	6	13,703
전체	179	245	543,802	364	787	2,384,896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4-13> 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평균 지원금액 및 지급월

(단위: 원, 월)

	2004			2005			
	평균 지원금	평균 지급월	지원액	평균 지원금	평균 지급월	지원액	
업종	제조업	2,234,222	4.0	308,322,713	3,075,809	1.4	1,184,186,517
	건설업				3,566,554	1.6	1,783,277
	도소매업	1,538,493	4.0	4,615,480	2,673,465	1.5	98,918,214
	운수창고통신업				2,466,358	1.6	17,264,510
	부동산임대업	2,223,212	4.0	224,544,480	2,918,267	1.4	1,053,494,531
	교육서비스업	3,600,000	4.0	3,600,000	3,600,000	1.0	3,600,000
규모	5인 미만	2,378,208	4.0	214,038,780	3,131,472	1.4	883,075,153
	5~9인	2,096,955	4.0	73,393,431	2,896,959	1.5	393,986,457
	10~29인	2,205,753	4.0	143,373,967	2,928,475	1.4	547,624,844
	30~49인	2,172,815	4.0	32,592,235	2,970,744	1.4	204,981,390
	50~69인	2,328,535	4.0	30,270,960	3,112,849	1.5	105,836,870
	70~99인	2,003,168	4.0	16,025,350	2,568,415	1.2	56,505,142
	100~149인	1,867,955	4.0	16,811,600	2,840,386	1.4	85,211,590
	150~299인	1,731,422	4.0	15,582,800	2,601,540	1.3	83,249,292
	300~499인				3,489,400	1.3	24,425,804
	전체	2,221,676	4.0	542,089,123	2,984,851	1.4	2,384,896,542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 제2절 성과평가 종합

### 1. 조사표본의 구성과 점수 계산방법

#### 가. 조사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를 위해 제3장의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구성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의 조사표본수는 <표 4-13>과 같다. 우선 추가적 일자리 사업에서 집행기관의 조사표본수는 40개인데 이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들 사업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한

&lt;표 4-14&gt; 사업별 점수 계산에 고려된 응답자 수

사 업 명		응답자수	
		집행기관	수혜업체
일자리나누기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40	86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2
빈 일자리채우기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36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82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97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사업	7	

평가 항목을 하나의 설문지에 통합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수혜업체는 사업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0개의 표본을 조사하였다.

#### 나. 평가점수 집계방식

평가점수의 집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응답자의 설문항을 점수화한다. 5점 척도의 경우, 가장 낮은 척도에 2점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척도에 10점을 부여한다. 즉, 척도에 따라 각각 2점, 4점, 6점, 8점, 10점으로 배점한다.
- ② 하나의 평가항목에 여러 개의 평가문항이 있을 경우, 평가문항들의 점수를 단순평균한 점수를 평가항목의 점수로 한다.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평가주체별 평가항목의 종류를 보면, 수행기관은 사업효과, 취업성과, 사업지속의 필요성의 3항목, 수혜자는 사업효과, 서비스 만족도, 사업지속의 필요성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위에서 구한 각 평가항목의 점수는 아래에서 구한 각 항목의 가중치로 곱하여 가중평균한다. 이 가중평균한 값이 평가주체별 가중평균 평가점수가 된다.
- ④ 평가주체를 종합한 사업의 평가점수는 수행기관, 수혜자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한 점수를 평가대상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로 한다.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는 항목별 점수로 구해진다.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는 각 항목의 가중치로 곱하여 합산함으로써 사업의 가중평균 평가점수가 된다.

<표 4-15>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 예(집행기관용)

평가항목	평가문항	변수명	변수 설명	설문항 배점기준
I. 계획단계	I.A. 사업추진 배경	A1	다른 유사한 실업 대책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전점검	1) 조사 없음(2점) 2) 조사부족(4점) 3) 보통(6점) 4) 상당히 조사(8점) 5) 철저히 조사(10점)
		A2	계획단계의 사전 조사나 사전점검	1) 조사 없음(2점) 2) 조사부족(4점) 3) 보통(6점) 4) 상당히 조사(8점) 5) 철저히 조사(10점)
		A3	사업 추진 당위성 (필요성)	1) 매우 불필요(2점) 2) 불필요(4점) 3) 보통(6점) 4) 필요(8점) 5) 매우 필요(10점)
		A4	사업추진의 시기 적절성	1) 매우 부적절(2점) 2) 부적절(4점) 3) 보통(6점) 4) 적절(8점) 5) 매우 적절(10점)
	I.B. 사업목표 타당성/실현 가능성	B5	명확한 목표성과	1) 매우 미흡(2점) 2) 미흡한 편(4) 3) 보통(6) 4) 명확(8) 5) 매우 명확(10)
		B6	사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1) 매우 낮음(2점) 2) 낮음(4) 3) 보통(6) 4) 높은 편(8) 5) 매우 높음(10)
		B7	사업대상과 사업방법의 적절성	1) 전혀 적절하지 않음(2), 2) 적절하지 않음(4), 3) 보통(6), 4) 적절한 편(8), 5) 매우 적절함(10)
II. 집행단계	II.C. 정책공감대	C1, C2	추진배경 및 목표/사업내용의 의견 교환	1) 매우 부족(2) 2) 부족(4) 3) 보통(6) 4) 충분(8) 5) 매우 충분(10)
	II.D. 집행과정의 효율성/합리성	D3-1~ D3-6	집행과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정도	1) 매우 부적절(2) 2) 부적절(4) 3) 보통(6) 4) 적절(8) 5) 매우 적절(10)
III. 성과 단계	III.E. 사업효과 및 지속성	E1	타 실업대책과의 비교	1) 매우 적다(2) 2) 적은 편(4) 3) 보통(6) 4) 큰 편(8) 5) 매우 크다(10)
	III.F. 근무조건 및 근무기간의 안정성	F2	고용안정 및 고용 지속성 평가	1) 매우 불안정(2) 2) 불안정(4) 3) 보통(6) 4) 안정적(8) 5) 매우 안정적(10)
		F3	근무기간 안정성	1) 매우 불안정(2) 2) 불안정(4) 3) 보통(6) 4) 안정적(8) 5) 매우 안정적(10)
IV. 사후 관리	IV.G. 사후관리의 합리성	G1	불만사항, 개선점 모니터링	1) 매우 비효율적(2) 2) 비효율적(4) 3) 보통(6) 4) 효율적(8) 5) 매우 효율적(10)
		G2	근무 연속가능성 모니터링	1) 매우 비효율적(2) 2) 비효율적(4) 3) 보통(6) 4) 효율적(8) 5) 매우 효율적(10)
	IV.H. 본부와외 피드백	H3	피드백 전달 시스템	1) 매우 비효율적(2) 2) 비효율적(4) 3) 보통(6) 4) 효율적(8) 5) 매우 효율적(10)

제4장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평가 79

<표 4-16>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 예(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업체용)

평가항목	평가분항	변수명	변수 설명	설문항 배점기준
I. 계획 단계	I.A. 사업추진 배경	A1	다른 유사한 실업대책 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전점검	1) 조사 없음(2점) 2) 조사부족(4점) 3) 보통(6점) 4) 상당히 조사(8점) 5) 철저히 조사(10점)
		A2	계획단계의 사전조사나 사전점검	1) 조사 없음(2점) 2) 조사부족(4점) 3) 보통(6점) 4) 상당히 조사(8점) 5) 철저히 조사(10점)
		A3	사업 추진 당위성(필요성)	1) 매우 불필요(2점) 2) 불필요(4점) 3) 보통(6점) 4) 필요(8점) 5) 매우 필요(10점)
		A4	사업추진의 시기적절성	1) 매우 부적절(2점) 2) 부적절(4점) 3) 보통(6점) 4) 적절(8점) 5) 매우 적절(10점)
	I.B. 사업목표 타당성/실현가능성	B5	명확한 목표성과	1) 매우 미흡(2점) 2) 미흡한 편(4) 3) 보통(6) 4) 명확 (8) 5) 매우 명확(10)
		B6	사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1) 매우 낮음(2점) 2) 낮음(4) 3) 보통(6) 4) 높은 편(8) 5) 매우 높음(10)
II. 집행 단계	II.C. 정책공감대	C1	집행기관과 기업간 의 견교환 여부	1) 매우 부족(2) 2) 부족(4) 3) 보통(6) 4) 충분(8) 5) 매우 충분(10)
	II.D. 집행과정의 효율성/합리성	D2.	만족도 1), 2), 3), 4), 5), 6)	1) 매우 부적절(2) 2) 부적절(4), 3) 보통(6) 4) 적절(8) 5) 매우 적절(10)
III. 성과 단계	III.E. 사업효과 및 지속성	E2	동 제도가 없을 경우의 조치	1) 실시 안함(10) 2) 실시함(4)
		E3	고용 성과	1) 매우 적다(2) 2) 적은 편(4) 3) 보통(6) 4) 큰 편(8) 5) 매우 크다(10)
		E4	타 실업대책과의 비교	1) 매우 적다(2) 2) 적은 편(4) 3) 보통(6) 4) 큰 편(8) 5) 매우 크다(10)
		E5	사업지속성	1) 지속할 필요가 없다(4) 2) 개선하여 지속(6) 3) 현행대로 지속(10)
		F6	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율(B)/10
	III.F. 취업성과 및 근무안정성	F7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	1) 매우 감소함(2) 2) 다소 감소함(4) 3) 보통(6) 4) 다소 향상됨(8) 5) 매우 향상됨(10)
		F8	근로자 만족도에 미친 효과	1) 매우 불만족(2) 2) 불만족(4) 3) 보통(6) 4) 만족(8) 5) 매우 만족(10)
		F9	지원금이 없을 경우 인 원증가 유무	1) 그렇다 사중손실인원비중=(지원채용 인원(F6)-지원 없을 시 증가인원(F9-1))/(지원채용 인원 (F6))*10 2) 아니다(2)
		F10	사업종료 후 계속고용 여부	1) 현재 지원기간 고용(6) 2) 지원종료계속 고용(10) 3) 고용계약 종료(2)
		F11	타 대책과 근무조건 비교	1) 매우 불안정적(2) 2) 불안정적(4) 3) 보통(6) 4) 안정적(8) 5) 매우 안정적(10)
		F12	타 대책과 근무기간 비교	1) 매우 불안정적(2) 2) 불안정적(4) 3) 보통(6) 4) 안정적(8) 5) 매우 안정적(10)
		IV. 사후 관리	IV.G. 사후관리의 합리성	G1
G2	사업점검의 합리성			1) 매우 비합리적(2) 2) 비합리적(4) 3) 보통(6) 4) 합리적(8) 5) 매우 합리적(10)
G3	의견수렴 시스템			1) 매우 비효율적(2) 2) 비효율적(4) 3) 보통(6) 4) 효율적(8) 5) 매우 효율적(10)
IV.H. 제도에 대한 의견반영	H4		차기 계획에 의사반영 여부	1) 전혀 반영되지 않음(2) 2) 반영되지 않음(4) 3) 보통(6) 4) 반영되는 편(8) 5) 매우 잘 반영(10)



<표 4-17> 가중치 평가

평가주체	평가문항	변수명	변수설명	배점기준
근로자	I.	E1-1	계획 단계	각 평가문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가문항 점수/100
	II.	E1-2	집행 단계	
	III.	E1-3	성과 단계	
	IV.	E1-4	사후관리 단계	

- ⑤ 예를 들어, 수행기관의 평가점수 집계과정을 도식화하면 <표 4-15>와 같다.
- ⑥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설문에서 응답한 백분비(%)를 비중으로 표현하면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난다. 만약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혹은 1에 미달될 경우에는 (각 평가항목의 백분비 배점)/(백분비 배점의 합)으로 조정하여 모든 평가항목의 가중치 합이 1이 되도록 조정한다.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은 <표 4-16>, <4-17>과 같다. 이는 집행기관과 사업체로 구분되었다.

## 2. 종합 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가중평균값이 60.1점,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63.2점으로 평가되었다. 두 사업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업별로 보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으로 65.5점을 기록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으로 58.8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54.0점,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을 56.3점으로 평가한 데 반해, 수혜업체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66.0점,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을 70.1점으로 평가하였다. 집행기관보다 수혜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집행기관과 수혜업체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제 일자리 창출지원정책 사업이 수혜업체의 입장에서는 집행담당자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혜업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기록한 사업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으로 73.0점을 기록하고 있다. 수혜업체 평가를 평가단계별로 보면,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이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단계에 각각 77.0점, 67.3점, 71.2점, 64.0점으로 나타났는데 계획단계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계획단계에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은 82.4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은 78.4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4-18> 평가점수 종합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	종합	
집행 기관 평가	일자리나누기	전 체	57.4	53.6	53.4	49.8	54.0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62.0	56.7	57.3	50.6	56.8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52.8	50.5	49.5	49.0	50.1
	빈 일자리채우기	전 체	60.4	55.1	57.1	50.4	56.3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57.9	52.8	53.0	49.5	53.2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61.5	55.9	61.1	51.6	57.2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68.3	61.3	64.1	51.5	61.6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53.8	50.3	50.1	49.1	50.7	
수혜 업체 평가	일자리나누기	전 체	72.0	67.0	64.2	59.8	66.0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71.5	64.1	65.8	59.7	65.8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72.5	70.0	62.5	60.0	66.5
	빈 일자리채우기	전 체	77.0	67.3	71.2	64.0	70.1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74.2	68.6	66.5	62.1	68.0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78.4	71.0	75.7	65.2	73.0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72.9	64.4	70.3	59.5	67.0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82.4	65.2	72.4	69.0	72.1	
평균	일자리나누기	전 체	64.7	60.3	58.8	54.8	60.1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66.8	60.4	61.5	55.1	61.4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62.6	60.3	56.0	54.5	58.8
	빈 일자리채우기	전 체	68.7	61.2	64.2	57.2	63.2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66.1	60.7	59.7	55.8	61.1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69.9	63.5	68.4	58.4	65.5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70.6	62.8	67.2	55.5	64.5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68.1	57.8	61.3	59.1	61.8	

<표 4-19> 가중치 종합

			계획	집행	성과	사후 관리
집행기관평가			0.32	0.29	0.20	0.19
수혜업체 평가	일자리 나누기	전 체	0.25	0.28	0.27	0.20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0.26	0.28	0.26	0.21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0.24	0.28	0.28	0.20
	빈 일자 리채우기	전 체	0.25	0.28	0.27	0.20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0.27	0.26	0.27	0.20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0.24	0.29	0.27	0.19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0.24	0.28	0.27	0.22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사업	0.24	0.28	0.28	0.20

가중치 평가를 보면, 집행기관의 경우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단계가 각각 0.32, 0.29, 0.20, 0.19로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에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두는 반면, 수혜업체는 집행단계(0.28)와 성과단계(0.27)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 제3절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

####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가. 기초 통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모두 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대상 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산업이 24(27.9%)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20> 업종별 분포

	빈도	비중 (%)		빈도	비중 (%)
음식료품 제조업	1	1.2	재생재료 가공업	1	1.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1	1.2	전기, 가스 및 증기업	1	1.2
화학제품 제조업	5	5.8	건설업	1	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	1.2	전문직별 공사업	3	3.5
비금속광물제품	1	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	3.5
제1차 금속산업	1	1.2	여행알선, 운송관련 서비스업	2	2.3
조립금속제품	2	2.3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24	27.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	7.0	연구 및 개발업	4	4.7
컴퓨터 및 사무회계용 기기 제조업	1	1.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6	7.0
전기기계 제조업	2	2.3	사업지원 서비스업	2	2.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	5.8	사회복지사업	1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	1.2	영화방송 및 공연사업	1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	2.3	회원단체	1	1.2
기타 운송장비	1	1.2	기타 서비스업	6	7.0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1> 사업장규모별 분포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4인	2	2.3	30~99인	34	39.5
5~9인	5	5.8	100~299인	9	10.5
10~29인	33	38.4	300인 이상	3	3.5

나. 계획단계

사업추진 배경에서는 사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사전조사나 점검이 충분했는지, 이들 사업이 필요하고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먼저 사업 입안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전점검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 ‘보통’이 64.0%, ‘상당히 조사가 되었다’가 26.7%로 나타나 사전조사가 보통 이상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당업체나 수혜근로자에 대한 사전조사나 사전점검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업입안 및 계획단계에서의 사전 점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보통이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전조사 및 점검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사업의 추진 당위성에 대한 평가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90% 정도의 업체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 지원사업이 주40시간 근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응답 업체 중 90% 정도의 업체가 모두 적절했다고 답변해 기업들은 이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물은 결과,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51.2%가 근로시간 단축시점, 증원계획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해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 또한 45.3%로 나타나 지원금 수혜업체가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타당성을 좀 더 인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무제 조기정착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촉진이라는 사업취지에 수혜업체의 사업목표가 타당하고 실현가능하다는 질문에 '보통'이거나 '높다'라는 응답이 각각 46.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3.5%로 매우 낮아 근로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집행단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해 계획 및 집행기관과 수혜대상 기업 간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이 3.081로 계획단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들었고, 사업의 예산, 홍보 및 안내,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고, 사업의 내용(지원요건,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만족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지원금을 수혜받고 있는 업체들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기관과 좀더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 사업의 각 항목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라. 성과단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성과 평가를 위해 먼저 사중손실효과를 측정할 결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도 67.4%의 업체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해 지원금 수혜업체의 사중손실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중손실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없었더라면 일자리 창출 정도가 어떠했을 것인가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 동 지원금이 없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원이 증가했을 것이란 응답이 53.5%로 나타나 사중손실정도가 50%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신규고용이나 고용유지가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큰 편’이라는 응답이 40.7%, ‘매우 크다’는 5.8%로 나타나 지원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계속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13개, 지원종료 후 고용계약을 종료한 업체는 1개로, 지원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통의 경우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출된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다른 실업대책과 비교했을 때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와 같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성과가 크다는 응답이 43.1%로 나타나 근로시간단축지원 사업이 업체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응답업체의 53.5%가 이 사업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사업장이 43.5%로 나타났는데,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지원 금액의 증액, 금액 산정법의 개선, 일용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적하였다.

실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취업성과를 보면,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평

&lt;표 4-22&gt; 신규채용인원 및 채용자 중 정규직 비율

신규채용인원	빈도	비율(%)	채용자 중 정규직비율	빈도	비율(%)
1~10인	60	69.8	0~30% 미만	6	7.0
11~20인	10	11.6	30~70% 미만	2	2.3
21~30인	5	5.8	70~100% 미만	4	4.7
30인 이상	5	5.8	100%	68	79.0
무응답	6	7.0	무응답	6	7.0
전 체	86	100	전 체	86	100
평 균	9.225		평 균	91.2%	

균 9.2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금은 평균 1,69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된 인원의 월평균 급여는 17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79%가 정규직으로 나타나 창출된 일자리의 질이 생각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시간단축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보면 다소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0% 정도를 차지하여 근로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근로시간단축이 근로자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응답사업체의 77.9%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 마.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점검 횟수를 조사한 결과 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은 업체가 30%를 차지하고, 3회 이상 점검을 받은 업체는 22%를 차지해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업체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30%에 불과해 제도개선을 위한 피드백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수혜업체가 제시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다음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업체(73.3%)가 '보통'의 중립적인 의견을

&lt;표 4-23&gt;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

	빈도	비율(%)
홍보부족	31	27.0
지원금액이 적다	9	7.8
주5일 근무로 인한 비용증가부담	8	7.0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익률, 생산성 감소	5	4.3
기타	33	53.9
전 체	86	100.0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영될 것이라는 응답과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14.0%, 12.8%로 나타나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홍보부족’(27.0%), ‘지원 금액이 적다’(7.8%), ‘주5일 근무로 인한 비용증가부담’(7.0%)을 꼽았다. 또한 생산성 감소나 이익률의 감소를 걱정하는 업체도 4.3%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홍보부족은 앞의 다른 문항에서도 엿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 많은 업체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바. 종합평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사업은 집행기관의 평가점수가 56.8점, 수혜업체의 평가점수가 65.8점으로 종합평균점수는 61.4점을 기록하였다. 집행기관에 비해 수혜업체가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다.

집행기관을 보면, 계획단계를 62점, 집행 및 성과단계를 각각 56.7점 및 57.3점, 사후관리단계를 50.6점으로 평가하였다. 수혜업체의 평가점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기관의 평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가 각각 71.5점, 64.1점, 65.8점 및 59.7점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관이나 수혜업체 모두 계획단계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동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세운 사업프로세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보다 수혜업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수



<표 4-24> 근로시간단축지원금사업의 평가점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점수		가중치		종합평균 점수
평가단계		집행 기관	수혜 업체	집행 기관	수혜 업체	
계획	평 균	62.0	71.5	0.32	0.26	66.8
	사업추진 배경	63.1	73.2			
	사업목표 타당성·실현가능성	60.8	69.9			
집행	평 균	56.7	64.1	0.29	0.28	60.4
	정책공감대	51.3	61.6			
	집행과정의 효율성	62.1	66.5			
성과	평 균	57.3	65.8	0.20	0.26	61.5
	사업효과 및 지속성	54.0	68.4			
	근무조건(기간) 안정성/취업성과	60.5	63.2			
사후관리	평 균	50.6	59.7	0.19	0.21	55.1
	업체(근로자)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합리성	50.8	59.3			
	본부와의 피드백/제도에 대한 의견반영	50.5	60.0			
	가중평균점수	56.8	65.8			61.4

혜업체는 동 사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집행기관과 수혜업체의 가중치를 비교하면, 집행기관은 계획단계의 가중치가 0.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수혜업체는 집행단계가 0.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교대제전환지원금

### 가. 계획단계

사업추진시 사전조사의 측면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나와 충분히 준비된 사업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사업의 당위성이나 시점의 적절성은 2개 업체 모두 긍정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사업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는 2개 업체 모두 필

요하다고 답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교대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2개 업체 모두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원사업의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이 명확한 목표성과를 가지고 있고, 교대제 전환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촉진이라는 사업목표가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 나. 집행단계

집행기관과 대상업체간 정책공감대 수준은 중간수준이었다. 집행과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수준을 보면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두 업체 모두 적절하다고 평가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업체들에게 까다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홍보 및 안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서 보통의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홍보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했다. 예산, 참여요건, 지원금 규모,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보통’, ‘적절’의 응답을 하여 중간의 만족은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 다. 성과단계

먼저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사중손실효과의 측정을 위해 지원사업이 없었을 경우 업체의 교대제 전환여부를 물은 결과, 두 업체 모두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도 교대제로 전환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해 지원금의 사중손실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일자리 창출성과는 높지 않았지만, 생산성 및 근로자만족도에 미친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신규고용이나 고용유지가 실제로 업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보통’, ‘큰 편’이라고 응답해 지원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다른 실업대책

과 비교했을 때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와 같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원금에 대한 업체의 참여도가 낮은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여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 라. 사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들의 교대제전환지원금 참여도가 낮은 이유로는 홍보부족, 불경기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 고용안정센터의 기피현상을 꼽았다.

#### 마. 종합 평가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은 집행기관의 평가점수가 50.1점, 수혜업체의 평가점수가 66.5점으로 종합평균점수는 58.8점을 기록하였다. 집행기관에 비해 수혜업체가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두 평가주체 사이의 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기관을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점수가 각각 52.8점, 50.5점, 49.5점 및 49.0점을 기록하였다. 수혜업체의 평가점수를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가 각각 72.5점, 70.0점, 62.5점 및 60.0점으로 나타났다. 두 평가주체 모두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단계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배열되어 있다. 즉,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계획이나 집행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나 사후관리면에서는 비교적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계획기관에서는 동 사업의 효율성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수혜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행기관이나 수혜업체는 모두 동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효과 및 사업 지속성에 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 이해된다.

<표 4-25> 교대제전환지원금사업의 평가점수

평가단계		교대제전환지원금		점수		가중치		종합평균 점수
		집행 기관	수혜 업체	집행 기관	수혜 업체			
계획	평균	52.8	72.5	0.32	0.24			62.6
	사업추진 배경	54.0	70.0					
	사업목표 타당성·실현가능성	51.5	75.0					
집행	평균	50.5	70.0	0.29	0.28			60.3
	정책공감대	46.8	70.0					
	집행과정의 효율성	54.3	70.0					
성과	평균	49.5	62.5	0.20	0.28			56.0
	사업효과 및 지속성	43.5	50.0					
	근무조건(기간) 안정성/취업성과	55.5	75.0					
사후관리	평균	49.0	60.0	0.19	0.20			54.5
	업체(근로자)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합리성	48.5	60.0					
	본부와의 피드백/제도에 대한 의견반영	49.5	60.0					
가중평균점수		50.1	66.5	1.00	1.00			58.8

집행기관이나 수혜업체 모두 계획단계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동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세운 사업프로세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보다 수혜업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수혜업체는 동 사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계획기관과 수혜업체의 가중치를 비교하면, 집행기관은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수혜업체는 집행단계와 성과단계를 높은 가중치로 평가하고 있다.

### 3.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가. 기초 통계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평가를 위한 총 설문 업체가 모두 7개에 불과해 통계적으로는 부족한 수치이나, 교대제전환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표 4-26> 조사업체의 업종 및 사업장규모

업종	빈도	비중(%)	규모	빈도	비중(%)
비금속광물제품	1	14.3	1~4인	0	0
조립금속제품	1	14.3	5~9인	0	0
영상 및 통신장비	1	14.3	10~29인	5	71.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	14.3	30~99인	2	28.6
전문직별 공사업	1	14.3	100~299인	0	0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1	14.3	300인 이상	0	0
연구 및 개발업	1	14.3			
전체	7	100	합계	7	100.0

가지로 업체의 의견들을 모아 그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자료로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설문 대상 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비금속광물제품, 조립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의 업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연구 및 개발업과 같은 전문 업종도 각각 한 업체씩 설문하였다. 설문 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설문업체 중 5개로 71.4% 차지하고 있고, 7개 업체 모두 100인 미만으로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수혜가 중간규모의 중소기업들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계획단계

사업 입안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전점검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이 3.429로 보통 이상의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계획단계에서의 해당업체나 수혜근로자에 대한 사전조사나 사전점검 정도 역시 '보통'과 '상당히 조사'가 각각 42.9%로 나타나 사전조사정도에 대해 업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사업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 85.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42.9%가 '적절했다', 57.1%가 '매우 적절했다'고 응답해 만족도도 높았다.

지원사업 수혜업체의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모두 평균 3.5 정도로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수혜업체들이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통해 사업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업체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증원계획 등 명확한 목표성과의 수립정도를 묻는 설문에는 85.7%가 명확한 편이라고 대답해 지원금 수혜업체들이 진출업종 및 인력 증원계획 등 명확한 목표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집행단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해 계획 및 집행기관과 수혜대상 기업 간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이 3.286으로 계획단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들었고, 사업의 예산, 홍보 및 안내, 지원금 지급 규모,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고,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만족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특히, 홍보 및 안내, 지급요건은 평균이 2.7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성과단계

먼저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 없었을 경우에도 신규업종에 진출했을 것 인가를 질문한 결과,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도 신규업종에 진출하였을 것 이란 응답이 71.4%로 사중손실효과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 없었더라도 현재 인원보다 채용 인원이 증가하였을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원으로 증가하였 을 것이란 응답이 28.6%에 불과해 신규업종진출과 일자리 창출 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응답 업체의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평균 8.6 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 신규채용에 대해 평균 3,357만 원을 지급받았다. 신규채용된 인원의 월평균 급여는 146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lt;표 4-27&gt; 신규채용 인원수

	빈 도	비율(%)
1~10인	5	71.4
11~20인	2	28.6
21~30인	0	0
30인 이상	0	0
소 계	7	100
전 체	8,571	

100%가 정규직으로 나타나 창출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규채용되거나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5개 업체(57.1%)가 모두 안정적이라고 대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질은 만족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신규고용이나 고용유지가 실제로 업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통’과 ‘큰 편’이라는 응답이 각각 28.6%, 71.4%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은 다른 실업대책과 비교했을 때도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와 같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더 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해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모든 응답자가 이 제도가 현행대로 혹은 수정 후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월별 인원 집계를 말일 기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6개 업체가 아직 지원금 지원 기간이며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계속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개, 지원종료 후 고용계약을 종료한 업체는 응답 업체수가 없어서 응답 업체들은 일자리의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사후관리

집행기관의 점검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3.429회로 나타나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28&gt;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중복응답)

	빈 도	비율(%)
홍보 부족	4	36.4
신규 진출기업에 대한 교육시스템 부재	1	9.1
요구하는 서류 많음	2	18.2
업종제한	1	9.1
신규업종 진출시 판로 및 지원체제 미흡	1	9.1
기타	2	18.2
전 체	11	100

다. 제도에 관한 의견 제시나 의견을 수렴하는 피드백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업체들의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3개 업체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제도에 대한 의견의 수렴이 좀 더 효율적일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36.4%에 해당하는 업체가 홍보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18.2%)고 응답했다. 또한 업종제한, 신규업종 진출기업에 대한 교육시스템 부재, 신규업종 진출시 판로 및 지원체제의 미흡을 이유로 든 업체들이 있었다.

#### 바. 종합평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은 집행기관의 평가점수가 50.7점, 수혜업체의 평가점수가 72.1점으로 종합평균점수는 61.8점을 기록하였다. 집행기관과 수혜업체의 평가가 20점 이상의 높은 차이가 난다. 즉, 집행기관은 동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수혜업체의 동 사업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관의 단계별 평가를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점수가 각각 53.8점, 50.3점, 50.1점 및 49.1점으로 타사업과 유사한 평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혜업체의 평가점수를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가 각각 82.4점, 65.2점, 72.4점 및 69.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혜업체는 사업성과면에 72.4점, 사업계획에 82.4점의 높은 평가를 보인



<표 4-29>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의 평가점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점수		가중치		종합평균 점수
평가단계		집행 기관	수혜 업체	집행 기관	수혜 업체	
계획	평 균	53.8	82.4	0.32	0.24	68.1
	사업추진 배경	54.8	80.0			
	사업목표 타당성·실현가능성	52.8	84.8			
집행	평 균	50.3	65.2	0.29	0.28	57.8
	정책공감대	47.3	65.7			
	집행과정의 효율성	53.4	64.8			
성과	평 균	50.1	72.4	0.20	0.28	61.3
	사업효과 및 지속성	45.5	72.1			
	근무조건(기간) 안정성/취업성과	54.8	72.7			
사후관리	평 균	49.1	69.0	0.19	0.20	59.1
	업체(근로자)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합리성	49.3	75.2			
	본부와의 피드백/제도에 대한 의견반영	49.0	62.9			
	가중평균점수	50.7	72.1	1.00	1.00	61.8

데 반해 집행과정에서는 65.2점으로 낮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동 사업의 집행과정의 효율성에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가중치 평가를 보면 집행기관이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의 평가에서 각각 0.32, 0.29, 0.20, 0.19인 데 반해, 수혜업체는 각각 0.24, 0.28, 0.28, 0.20으로 집행과 성과단계에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 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가. 기초 통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설문 대상 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1(30.6%)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이 5개 업체로 13.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0>에서 보듯이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제조업, 재료 가공업 등 업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업종임을 파악할 수 있다.

&lt;표 4-30&gt; 설문대상 업체의 업종분포

	빈도	비중 (%)		빈도	비중 (%)
음식료품 제조업	1	2.8	조립금속제품	5	13.9
목재 및 나무제품	1	2.8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30.6
펄프 및 종이제품	2	5.6	전기기계 제조업	1	2.8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1	2.8	영상 및 통신장비	1	2.8
화학제품 제조업	3	8.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	5.6
고무 및 플라스틱	2	5.6	자동차 트레일러	2	5.6
비금속광물제품	1	2.8	재생재료 가공업	1	2.8
제1차 금속산업	2	5.6	전 체	36	100

&lt;표 4-31&gt; 사업장규모별 분포

	빈도	비중(%)
1~4인	0	0
5~9인	3	8.3
10~29인	20	55.6
30~99인	11	30.6
100~299인	2	5.6
전 체	36	100.0

사업장규모는 10~99인 미만의 업체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 규모의 중소기업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나. 계획단계

사업 입안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전점검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보통’ 44.4%, ‘상당히 조사’ 36.1%로 나타나 사전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업체나 수혜근로자에 대한 사전조사나 사전점검 역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업체가 필요하거나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 지원사업이 작업환경 개

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응답 업체 중 80% 정도의 업체가 모두 적절했다고 답변해 업체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보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수혜업체들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통해 사업목표에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업체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증원계획 등 명확한 목표성과의 수립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 50.0%가 '명확한 편', 13.9%가 '매우 명확한 편'이라고 대답해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흡한 편'이 8.3%, '보통'이 25.0%로 지원금 수혜업체가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타당성을 좀 더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집행단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해 계획 및 집행기관과 수혜대상 기업 간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이 3.514로 지금까지의 지원금들과는 다르게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이는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원금 각 항목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홍보 및 안내의 필요성이 보였고,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업체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성과단계

사중손실효과의 측정을 위해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도 고용환경을 개선하였을 것이냐는 질문에 개선하였을 것이라는 응답이 63.9%로 나타나 지원금 수혜업체의 약 64%는 사중손실효과로 평가된다.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원으로 증가했을 것이란 응답이 55.6%를 차지해 사중손실의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지원금의 취업성

과를 보면,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평균 5.36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 신규 채용에 대해 평균 1,134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정규직 비율은 93%로 다른 지원금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신규고용이나 고용유지가 실제로 업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큰 편’이라는 응답이 55.0%로 매우 높았고, ‘매우 큰 편’이라는 응답도 8.3%를 차지해 지원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다른 실업대책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와 같은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가 큰 편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고 보통이란 응답이 30.6%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결과 사업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41.7%를 차지하였고, 52.8%는 제도개선 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3D업종에 대한 지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지원대상 업종 범위확대 등 지원범위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지원기간의 연장, 지급절차의 간소화, 홍보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업체도 있었다.

한편,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2.8%, 매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22.2%이고 부정적인 의견은 전혀 없었다. 이는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에 수혜업체들이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의 만족도 역시 75%로 나타나 고용환경 개선으로 근무환경이 좋아진 근로자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사후관리

집행기관의 점검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회 점검을 받아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행기관의 점검 평가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의 업체가 보통이거나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해서 점검평가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도에 관한 의견 제시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는지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효율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35% 정도에 머물러 수혜업체의 만족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26%에 해당하는 업체가 홍보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신고절차의 복잡성으로 답한 업체가 9.4%, 그 다음으로는 지원 금액의 부족(5.7%)을 꼽았다. 또한 영세업자의 시설비투자부담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바. 종합평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은 집행기관의 평가점수가 53.2점, 수혜업체의 평가점수가 68.0점으로 종합평균점수는 61.1점을 기록하였다. 집행기관에 비해 수혜업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두 평가주체 사이의 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기관을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점수가 각각 57.9점, 52.8점, 53.0점 및 49.5점을 기록하였다. 수혜업체의 평가점수를

<표 4-3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평가점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점수		가중치		종합평균 점수
		집행 기관	수혜 업체	집행 기관	수혜 업체	
평가단계						
	평 균	57.9	74.2	0.32	0.27	66.1
계획	사업추진 배경	60.1	76.7			
	사업목표 타당성 실현가능성	55.7	71.7			
	평 균	52.8	68.6	0.29	0.26	60.7
집행	정책공감대	49.0	70.3			
	집행과정의 효율성	56.7	66.9			
	평 균	53.0	66.5	0.20	0.27	59.7
성과	사업효과 및 지속성	49.0	62.4			
	근무조건(기간) 안정성/취업성과	57.0	70.6			
	평 균	49.5	62.1	0.19	0.20	55.8
사후관리	업체(근로자)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합리성	49.5	62.6			
	본부와의 피드백/제도에 대한 의견반영	49.5	61.7			
가중평균점수		53.2	68.0	1.00	1.00	61.1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가 각각 74.2점, 68.6점, 66.5점 및 62.1점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계획이나 집행, 성과에 비해 사후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계획기관과 수혜업체의 가중치를 비교하면, 집행기관은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수혜업체는 계획, 집행, 성과단계를 비교적 높은 가중치로 평가하고 있다.

### 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가. 기초 통계

우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평가를 위한 설문 대상 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표 4-33> 업종별 분포

	빈도	비중 (%)		빈도	비중 (%)
음식료품 제조업	1	1.0	숙박 및 음식점업	2	2.1
섬유제품 제조업	3	3.1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	6.2
펄프 및 종이제품	1	1.0	통신업	1	1.0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4	4.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	2.1
화학제품 제조업	2	2.1	부동산업	2	2.1
조립금속제품	5	5.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9	9.3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	3.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7	7.2
사무회계용 기계	2	2.1	사업지원 서비스업	5	5.2
전기기계 제조업	1	1.0	교육서비스업	5	5.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	3.1	보건업	3	3.1
전기, 가스 및 증기업	1	1.0	사회복지사업	1	1.0
종합 건설업	6	6.2	영화방송 및 공연사업	2	2.1
전문직별 공사업	6	6.2	하수처리 및 청소관련사업	1	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	8.2	수리업	1	1.0
소매업	3	3.1	기타 서비스업	1	1.0
전 체	97	100			

&lt;표 4-34&gt; 사업장규모별 분포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4인	21	21.6	30~99인	7	7.2
5~9인	38	39.2	100~299인	3	3.1
10~29인	27	29.8	300인 이상	1	1.0
전 체	97	100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과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주어지는 지원금이란 특징을 생각해 보면 산업별 분포가 이처럼 지금까지의 지원금과 달리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널리 분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 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이하 사업장들에서 지원금 수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도 21.6%나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들의 활용실적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계획단계

사업 입안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전점검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 '보통'이 47.4%, '상당히 조사'가 27.8%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사전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단계에서의 사전조사 및 사전점검 역시 비슷한 응답이 나와 계획단계는 보통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사업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는 90% 정도의 업체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응답 업체 중 90% 정도의 업체가 모두 적절했다고 답변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4.1%에 불과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원사업 수혜업체의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모두 평균이 3.6 정도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수혜업체들이 신규고용촉진장

려금을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다. 집행단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해 계획 및 집행기관과 수혜대상 기업간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이 3.1로 계획단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들었고, 응답 분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예산, 홍보 및 안내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고, 사업의 내용(지원요건, 지급절차,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만족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지원사업도 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홍보 및 안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라. 성과단계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신규고용이나 고용유지가 실제로 업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큰 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6.7%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3.8로 많은 기업들이 성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른 실업대책과 비교했을 때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와 같은 일자리 창출면에서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56.7%가 '큰 편', 9.3%가 '매우 큰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자(99.9%)가 사업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홍보부족과 3개월 이상의 구직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업에 알맞은 인재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과 고용안정센터내 구직자의 전문성 부족, 지원금 종료 후 퇴직 우려와 지원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꼽기도 하였다.

동 사업의 취업성과를 보면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평균 3.2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된 인원의 월평균 급여는 11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91.7%가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



람들이 많아 월평균 급여가 다른 지원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질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없었더라도 현재 인원만큼 채용하였을 것 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원으로 증가했을 것이란 응답이 39.2%로 나타나 사중손실의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60% 정도는 현재보다 적은 인원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응답해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없었다면 현재 채용한 인원과 같은 준고령자,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 대신 다른 인력을 채용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52.6%가 장려금이 없었더라도 취약계층만 고용했을 것이라 대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려금이 없었다면 다른 청장년층 근로자만 채용했을 것이란 응답이 12.4%, 일부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을 것이란 응답이 28.9%로 장려금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근로자만 채용했을 때 채용인원 평균이 2.6명으로 취업취약계층 신규채용인력 3.2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여 취업취약계층 채용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사후관리

집행기관의 점검 횟수를 조사한 결과 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은 업체가 13.4%를 차지하고, 1~2회의 점검을 받은 업체가 60.8%, 3~5회 16.5%, 6회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집행기관으로부터 2회 정도의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의 편차가 커서 점검평가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에 관한 의견 제시나 의견을 수렴하는 피드백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4%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다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혜업체가 제시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다음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업체 64.9%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고, 평균 점수도 3.1에 머무르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 종합평가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집행기관의 평가점수가 61.6점, 수혜업체의 평가점수가 67.0점으로 종합평균점수는 64.5점을 기록하였다. 집행기관에 비해 수혜업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두 평가주체 사이의 평가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관을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점수가 각각 68.3점, 61.3점, 64.1점 및 51.5점으로 타사업과 유사한 평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혜업체의 평가점수를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가 각각 72.9점, 64.4점, 70.3점 및 59.5점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계획이나 집행, 성과에 비해 사후관리면에서 효율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집행기관이나 수혜기업은 모두 계획단계와 성과단계에 비교적

<표 4-35>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평가점수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점수		가중치		종합평균 점수
평가단계		집행 기관	수혜 업체	집행 기관	수혜 업체	
계획	평 균	68.3	72.9	0.32	0.24	70.6
	사업추진 배경	69.0	73.8			
	사업목표 타당성·실현가능성	67.7	72.1			
집행	평 균	61.3	64.4	0.29	0.28	62.8
	정책공감대	56.0	62.5			
	집행과정의 효율성	66.7	66.3			
성과	평 균	64.1	70.3	0.20	0.27	67.2
	사업효과 및 지속성	69.5	77.4			
	근무조건(기간) 안정성/취업성과	58.8	63.2			
사후관리	평 균	51.5	59.5	0.19	0.22	55.5
	업체(근로자)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합리성	52.0	56.9			
	본부와의 피드백/제도에 대한 의견반영	51.0	62.1			
가중평균점수		61.6	67.0	1.00	1.00	64.5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수혜업체는 사업효과나 지속성면에 77.4점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사업효과가 큼을 시사하고 있으며, 계획단계에도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가중치 평가를 보면 집행기관이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의 평가에서 각각 0.32, 0.29, 0.20, 0.19인 데 반해, 수혜업체는 각각 0.24, 0.28, 0.27, 0.22로 집행과 성과단계에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수혜업체가 동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 6.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 가. 기초 통계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의 설문 대상 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산업이 17(20.7%)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업이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등 고급인력의 수요가 많은 업종에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다수 존재

<표 4-36> 업종별 분포

	빈도	비중 (%)		빈도	비중 (%)
비금속광물광업	1	1.2	의료정밀기계	8	9.8
음식료품 제조업	1	1.2	자동차 트레일러	1	1.2
섬유제품 제조업	1	1.2	기타 운송장비	1	1.2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1	1.2	가구 기타 제조업	2	2.4
펄프 및 종이제품	1	1.2	건설업	1	1.2
화학제품 제조업	7	8.5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2.4
비금속광물 제조업	1	1.2	소매업	1	1.2
제1차 금속산업	1	1.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17	20.7
조립금속제품	3	3.7	연구 및 개발업	3	3.7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13.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3	3.7
전기기계 제조업	3	3.7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2
영상 및 통신장비	8	9.8	기타 서비스업	3	3.7
전 체	82	100			

&lt;표 4-37&gt; 사업장규모별 분포

	빈도	비중(%)
1~4인	12	14.6
5~9인	22	26.8
10~29인	28	34.1
30~99인	13	15.9
100~299인	4	4.9
300인 이상	3	3.7
전 체	82	100

하였다. 또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4%, 영상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기계가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업종에서 고급기술을 지닌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설문 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그 중 10~29인 업체가 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전문인력 채용시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계획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조사나 점검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나 사업 추진시 다른 유사한 실업대책과의 차별성과 합리성을 업체들에게 제대로 인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업체나 수혜근로자에 대한 사전조사나 사전점검 역시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51.2%, 보통이란 응답이 28%를 차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 사업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는 58.5%의 업체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평균점수도 4.512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응답 업체 중 90% 정도의 업체가 모두 적절했다고 답변했다.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각각 3.7, 3.9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확보라는 사업목표가 타당하고 실현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높다'라는 응답이 48.8%, '매우 높다'라는 응답이 24.4%로 나타나 업체들은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매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집행단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해 계획 및 집행기관과 수혜대상 기업간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이 3.573로 계획단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들었고, 사업의 각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홍보 및 안내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예산, 참여요건, 지급규모, 지원요건,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만족을 나타냈다.

#### 라. 성과단계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신규고용이나 고용유지가 실제로 업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60.5%를 차지하여 설문업체들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동 사업은 다른 실업대책과 비교했을 때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와 같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성과가 높다는 응답이 74.4%로 다른 지원사업보다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으며 사업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평가 결과, 제도를 개선해서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2%,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47.6%로 제도의 지속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만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지원기간 연장,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지적되었다. 앞의 사업들에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

던 것과 달리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은 사업 확대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전문인력채용장려금제도의 취업성과를 평가해 보면 평균 1.7명의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평균 212만 원으로 나타나 다른 지원금과 달리 전문인력이라는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적은 인원을 고임금에 채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98.6%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양질의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장려금제도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있었지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8.3%, 지원제도의 도움으로 쉽게 확보하였다는 응답이 46.3%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전문 기술자 또는 고급인력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이 없었더라면 현재 채용한 전문인력보다 더 적은 인원을 채용하였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업체 중 59.8%가 장려금이 없었다면 적은 인원을 채용했을 것이라 대답해 사중손실의 정도가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장려금이 없었더라면 현재 채용한 전문인력 대신 다른 인원을 채용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41.5%가 그래도 전문인력을 채용했을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 또는 전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응답도 20.7%, 37.8%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계속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1.0%, 지원종료 후 고용계약을 종료한 업체는 14.6%로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장려금의 종료 후 일자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 마. 사후관리

집행기관의 점검 횟수를 조사한 결과 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은 업체가 13.4%를 차지하고, 1~2회라고 답한 업체가 53.6%로 가장 많아 집행기관의 점검평가가 많지 않았다. 피드백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와 ‘효율적이다’는 답변이 각각 46.3%, 41.5%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

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혜업체가 제시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다음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58.5%가 ‘보통’의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영되는 편이라고 대답한 업체가 31.7%로 장려금 수혜업체들은 다음 계획에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종합평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은 집행기관의 평가점수가 57.2점, 수혜업체의 평가점수가 73.0점으로 종합평균점수는 65.5점을 기록하였다. 집행기관에 비해 수혜업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두 평가주체 사이의 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38>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의 평가점수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점수		가중치		종합평균 점수
		집행 기관	수혜 업체	집행 기관	수혜 업체	
평가단계						
계획	평 균	61.5	78.4	0.32	0.24	69.9
	사업추진 배경	62.3	80.2			
	사업목표 타당성 실현가능성	60.7	76.6			
집행	평 균	55.9	71.0	0.29	0.29	63.5
	정책공감대	51.3	71.5			
	집행과정의 효율성	60.6	70.5			
성과	평 균	61.1	75.7	0.20	0.27	68.4
	사업효과 및 지속성	57.5	78.4			
	근무조건(기간) 안정성/취업성과	64.8	73.1			
사후관리	평 균	51.6	65.2	0.19	0.19	58.4
	업체(근로자)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합리성	51.8	65.3			
	본부와의 피드백/제도에 대한 의견반영	51.5	65.1			
가중평균점수		57.2	73.0	1.00	1.00	65.5

집행기관을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점수가 각각 61.5점, 55.9점, 61.1점 및 51.6점을 기록하였다. 수혜업체의 평가점수를 보면 계획,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가 각각 78.4점, 71.0점, 75.7점 및 65.2점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계획이나 집행, 성과에 비해 사후관리면에서 효율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집행기관이나 수혜기업은 모두 계획단계와 성과단계에 비교적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수혜업체는 사업효과나 지속성면에 78.4점을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사업효과가 큼을 시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배경을 80.2점으로 평가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혜업체는 사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76.6점을 부여하여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중치 평가를 보면, 집행기관이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의 평가에서 각각 0.32, 0.29, 0.20, 0.19인 데 반해, 수혜업체는 각각 0.24, 0.29, 0.27, 0.19로 집행과 성과단계에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수혜업체가 동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제5장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 제1절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용실적

##### 1. 사업별 예산 및 활용실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금액, 참여인원, 그리고 참여인원의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 등 이에 관련된 기초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된 각 부처의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는 관계로 여기서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 집행된 예산실적과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통계수집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2004년도 실적을 정리한 결과이다.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1,638억 원이고, 이 중 95.2%인 1,56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추진실적은 당초 계획인원(21,334명)과 비슷한 수준인 21,632명이 참여하였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증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04년도에 894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참여인원은 2,864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이 사업은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지자체, 법인 등에

<표 5-1> 2004년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2004년)

(단위: 억 원, 명)

사 업 명	사업비			사업추진실적 (인원)		지원금액(억원) 대비 지원인원수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	계획 인원	참여 인원	
전 체	1,638	1,560	95.2	21,334	21,632	13.9
◦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29	29	100	398	411	14.2
◦ 사회적 일자리 제공	187	157	84.0	3,000	3,752	23.9
◦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	65	65	100	1,162	1,320	20.3
◦ 생활체육지도자	86	86	100	1,561	1,402	16.3
◦ 사회복지시설 증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899	894	99.4	2,864	2,864	3.2
◦ 장애아 교육보조원	39	37	94.9	2,000	1,952	52.8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12	12	100	-	-	-
◦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125	125	100	1,849	1,849	14.8
◦ 방문도우미사업	176	135	76.7	4,500	4,403	32.6
◦ 여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20	20	100	4,000	3,679	184.0

건축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금액 대비 창출된 인원수는 가장 낮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사회적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액대비 지원 인원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정부지원금액이 교육훈련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업집행실적 및 지원인원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고용성과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엄밀한 고용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수혜받은 근로자의 노동시장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현 시점에서 곤란하다.

## 2. 노동부 사업 참여자의 인적특성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수익형, 고령

자적합형, 광역사업으로 구분된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2004년 12월 기준 총 3,743명<sup>17)</sup>으로 작년(2,369명)보다 36.7%(1,374명) 증가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공익형 사업이 2,845명(76.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익형(10.3%), 광역사업(10.1%)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5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상담 및 복지관련 사업, 푸드뱅크 사업 지원,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관련, 성폭력 상담 및 여성보호 관련, 간병사업 등 가정봉사원 파견, 사회복지 시설 지원, 기타 사회복지 관련 상담 및 교육사업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노동분야가 20.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는 외국인 근로자관련 사업, 산재근로자 간병 및 재활 지원사업, 근로자 인권 등 노동분야 상담 지원, 방과후 교실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이 80.0%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반면, 고령자 적합형 사업의 경우는 남성이 46.2%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2>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별 참여자 분포

(단위: 명)

	고령자적합형		광역사업		공익형		수익형		전 체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기타	16	12.1	3	0.8	57	2.0	32	8.3	108	2.9
노동	8	6.1	115	30.3	612	21.5	17	4.4	752	20.1
문화관광교육	13	9.8	6	1.6	196	6.9	33	8.5	248	6.6
보건사업	0	-	0	-	53	1.9	10	2.6	63	1.7
사회복지	62	47.0	255	67.3	1,679	59.0	162	41.9	2,158	57.7
안전	10	7.6	0	-	18	0.6	0	-	28	0.7
환경	23	17.4	0	-	230	8.1	133	34.4	386	10.3
전 체	132	100.0	379	100.0	2,845	100.0	387	100.0	3,743	100.0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2004. 12).

17) 3,743명 중 1/2 미만 중도탈락자는 700명(18.7%), 1/2 이상 중도탈락자는 276명(7.4%), 선발자는 2,763명(73.9%)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의 참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세 미만인 22.1%로 많다. 고령자 적합형 사업<sup>18)</sup>은 사업의 성격상 50세 이상 자들로 구성되며 60대가 50.7%로 가장 많다.

특히 광역사업<sup>19)</sup>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97.9%로 사업의 목적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인 것에 비추어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비율이 전체 청년의 비율보다도 오히려 적어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49.2%로 절반정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기실업자가 18.6%, 고령자가 10.3%, 청년실업이 6.2%, 장애인이 5.3%였다.

<표 5-3>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적특성(성별, 연령)

(단위: 명)

		고령자적합형		광역사업		공익형		수익형		전체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성별	남자	61	46.2	8	2.1	543	19.1	138	35.7	750	20.0
	여자	71	53.8	371	97.9	2,302	80.9	249	64.3	2,993	80.0
연령	30세 미만	0	0.0	37	9.6	720	25.3	68	17.6	825	22.1
	30~39세	0	0.0	139	36.6	806	28.3	91	23.5	1036	27.7
	40~49세	0	0.0	129	34.0	759	26.7	106	27.3	994	26.6
	50~59세	27	20.4	67	17.6	415	14.6	67	17.3	576	15.4
	60~69세	67	50.7	7	1.8	135	4.7	42	10.9	251	6.7
	70세 이상	38	28.7	0	0	10	0.3	13	3.4	61	1.6
전체		132	100.0	379	100.0	2,845	100.0	387	100.0	3,743	100.0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2004. 12).

18) 고령자적합형 사업이란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업무시간은 주 20시간 이하로 파트타임 사업이다.

19) 광역사업이란 사업시행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으로, 사회적 욕구가 크고 아직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인 ① 15~29세의 청년대상(70% 이상)의 문화관광분야 사회적 일자리, ② 여성대상(70% 이상)의 사회복지분야 케어(Care)복지와 장애아 통합교육 도우미, 노동분야의 방과후 교실이 속한다. 광역사업은 2005년도 사업변경으로 그 구분이 삭제되었다.

<표 5-4>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유형

(단위: 명)

	고령자적합형		광역사업		공익형		수익형		전 체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빈도 수	비율 (%)
고령자	119	90.2	14	3.7	188	6.6	65	16.8	386	10.3
일반인	3	2.3	178	47.0	1,488	52.3	174	45.0	1,843	49.2
장기실업자	7	5.3	125	33.0	498	17.5	68	17.6	698	18.6
장애인	1	0.8	1	0.3	164	5.8	33	8.5	199	5.3
청년실업	0	-	17	4.5	201	7.1	15	3.9	233	6.2
기타	2	1.5	44	11.6	306	10.8	32	8.3	384	10.3
전 체	132	100.0	379	100.0	2,845	100.0	387	100.0	3,743	100.0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2004. 12).

## 제2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과평가

### 1. 실태조사 개요 및 표본의 구성

#### 가. 실태조사 개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그룹을 앞에서 분류한 사회적 일자리의 사업특성에 따라 공공부문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A군),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B군),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지만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C군), 민간위탁하여 수익구조가 확보된 사회적 일자리사업(D군)의 4개의 사업군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정책대상 집단이나 사업내용 측면에서 여타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 망라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크게 수익형과 공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부의 수익형 사업은 D사업군에 해당되며, 공익형 사업은 C사업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노동부 이외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로 각 사업군별로 대표 사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사업과 노동부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노동부 사업들을 선정 한 후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사업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된 근로자(이하 근로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혜자(이하 수혜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사업별 표본의 현황은 <표 5-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5> 표본 현황

분류 유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제목	회수 표본
노동부 이외의 사회적 일자리		
<A형>	공공사회정비 숲 가꾸기 사업(산림청) - 수행기관	2
	공공사회정비 숲 가꾸기 사업(산림청) - 근로자	5
<B형>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교) - 수행기관	29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교) - 근로자	28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교) - 서비스 수혜자	47
<C형>	방문도우미 사업(복) - 수행기관	14
	방문도우미 사업(복) - 근로자	80
	방문도우미 사업(복) - 서비스 수혜자	77
<D형>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여) - 수행기관	1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여) - 근로자	45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여) - 서비스 수혜자	45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A형> 비교 사업	숲 가꾸기 사업 - 수행기관	2
	숲 가꾸기 사업 - 근로자	10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 수행기관	3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 근로자	18
<B형> 비교 사업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 수행기관	21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 근로자	108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 서비스 수혜자	94
<C형> 비교 사업	방문도우미 사업 - 수행기관	65
	방문도우미 사업 - 근로자	325
	방문도우미 사업 - 서비스 수혜자	323
<D형> 비교 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 수행기관	3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 근로자	14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 서비스 수혜자	15
<기타 분야>	재활용 - 수행기관	9
	재활용 - 근로자	54
	재활용 - 서비스 수혜자	19
전 체		1,837

나. 조사샘플의 구성과 점수 계산방법

1) 조사샘플의 구성

<표 5-6> 사업별 점수 계산에 고려된 응답자수

부서	분야	사업명	사업 기호	수익 공익 여부	평가주체								비고
					수행기관		근로자		수혜자		계		
					조사	점수 계산	조사	점수 계산	조사	점수 계산	조사	점수 계산	
노동부	환경	숲가꾸기 사업	111	수익	0	0	0	0	0	0	0	0	
			112	공익	5	5	28	27	0	0	33	32	
	교육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121	수익	8	8	40	40	38	33	86	81	
			122	공익	13	13	68	67	56	50	137	130	
	보건	방문도우미 사업	131	수익	16	16	84	80	75	70	175	166	
			132	공익	49	49	241	232	248	222	538	503	
	보육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141	수익	3	3	14	14	15	15	32	32	
			142	공익	0	0	0	0	0	0	0	0	
	기타	재활용	151	수익	6		33		16		55		무응답: 근로자(9)
			152	공익	2		12		3		17		
노동부 사업 소계				수익 공익	33 69	27 67	171 349	134 326	144 307	118 272	348 725	279 665	
				계	102	94	520 (529)	460	451	390	1,073 (1,082)	944	( )무응답 포함
산림청	환경	공공사회정비 숲 가꾸기 사업	210		2	2	5	5	0	0	7	7	
교육부	교육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220		29	27	28	26	46	40	103	93	수혜자(1)
복지부	보건	방문도우미 사업	230		14	14	71	65	71	65	156	144	근로자(9) 수혜자(6)
여성부	보육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240		10	10	37	33	34	32	81	75	근로자(8) 수혜자(11)
노동부 이외 부서 사업 소계				계	55	53	141 (158)	129	151 (169)	137	347 (382)	319	
전 체				수익	35	29	173	136	148	122	356	287	
				공익	122	118	488	453	454	405	1,064	976	
				계	157	147	661 (687)	589	602 (620)	527	1,420 (1,464)	1263	

조사 샘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가 소관하고 있는 사업에서 수행기관은 102개, 근로자는 529개, 수혜자는 451개로 총 1,082개가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평가점수에 고려된 응답수는 수행기관이 94개, 근로자가 460개, 수혜자가 390개로 총 944개의 응답자의 응답결과가 이용되었다. 노동부 이외의 부서에서는 수행기관, 근로자, 수혜자가 각각 55개, 158개, 169개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이 중에서 각각 55개, 141개 및 151개의 응답결과를 평가점수로 집계하였다(표 5-6 참조).

## 2) 평가점수 집계방식

평가점수의 집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응답자의 설문항을 점수화한다. 5점 척도의 경우, 가장 낮은 척도에 2점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척도에 10점을 부여한다. 즉, 척도에 따라 각각 2점, 4점, 6점, 8점, 10점으로 배점한다.
- ② 하나의 평가항목에 여러 개의 평가문항이 있을 경우, 평가문항들의 점수를 단순평균한 점수를 평가항목의 점수로 한다.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평가주체별 평가항목의 종류를 보면, 수행기관은 사업효과, 취업성과, 사업지속의 필요성의 3항목, 근로자는 사업효과, 사업프로그램 만족도, 취업성과, 사업지속의 필요성의 4항목, 수혜자는 사업효과, 서비스 만족도, 사업지속의 필요성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위에서 구한 각 평가항목의 점수는 아래에서 구한 각 항목의 가중치로 곱하여 가중평균한다. 이 가중평균한 값이 평가주체별 가중평균 평가점수가 된다.
- ④ 평가주체를 종합한 사업의 평가점수는 수행기관, 근로자, 수혜자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한 점수를 평가대상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로 한다.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는 항목별 점수로 구해진다.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는 각 항목의 가중치로 곱하여 합산함으로써 사업의 가중평균 평가점수가 된다.



<표 5-7>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문항	변수명	변수 설명	설문항 배점기준	
수행기관	사업효과	I. 1)	A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 기여도	1. 매우 많이 기여(10점) 2. 많이 기여(8점) 3. 보통(6점) 4. 적게 기여(4점) 5. 매우 적게 기여(2점)	
		취업성과	II. 2)	B2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고용 여부	1.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을 것(10)
	II. 2)		B2.1 B2.2	현재 고용 인원(A) 고용 가능 인원(B)	$\text{채용가능인원}/\text{총고용인원} \times 10 = (A-B)/A \times 10$	
	사업지속 필요성	III. 1)	C1	지원 사업 평가	1.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할 필요 없음(2) 2.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6) 3.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10)	
		III. 2)	C2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 유지 가능성	1. 매우 높다(2) 2. 높다(4) 3. 보통(6) 4. 낮다(8) 5. 매우 낮다(10)	
		III. 4)	C4	정부 지원 감소시 사업 유지 의향	1. 매우 높다(2) 2. 높다(4) 3. 보통(6) 4. 낮다(8) 5. 매우 낮다(10)	
		III. 5)	C5	지원금 제도를 이용한 사업 지속 의향	1. 있다(10) 2. 없다(6)	
	근로자	사업효과	I. 1)	A1.1	동기-수입목적	수입목적 비율을 점수화: A%/10
			I. 2)	A2	근로기회 제공 성과	1. 매우 크다(10) 2. 성과 있다(8) 3. 비슷(6) 4. 성과 적다(4) 5. 매우 적다(2)
I. 3)			A3	타 직장 취업시 도움 정도	1. 매우 도움(10) 2. 도움(8) 3. 보통(6) 4. 적게 도움(4) 5. 매우 적게 도움(2)	
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II. 1)	B1.1	훈련의 내용과 기간	1. 매우 불만족(2) 2. 불만족(4) 3. 보통(6) 4. 만족(8) 5. 매우 만족(10)	
		II. 1)	B1.2	현 직장의 계약기간		
		II. 1)	B1.3	월급		
		II. 1)	B1.4	하루 근로시간		
		II. 1)	B1.5	현재 하는 일		
취업성과		III. 1)	C1	본 사업 미참여시 취업 가능성	1. 매우 높다(2) 2. 높다(4) 3. 보통(6) 4. 낮다(8) 5. 매우 낮다(10)	
		III. 2)	C2	본 사업 참여시 가계 도움 정도	1. 매우 도움(10) 2. 도움(8) 3. 보통(6) 4. 적게 도움(8) 5. 매우 적게 도움(10)	
		III. 7)	C7	지원금 중단시 다른 곳에 근무 가능성	1. 매우 높다(2) 2. 높다(4) 3. 보통이다(6) 4. 낮다(8) 5. 매우 낮다(10)	
사업지속 필요성		IV. 1)	D1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1.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할 필요 없음(2) 2. 개선해서 지속(6) 3. 현행대로 지속(10)	
수혜자		사업효과	I. 1)	A1.1	생활의 도움	1. 전혀 도움 안됨(2) 2. 도움 안됨(4) 3. 그저 그렇다(6) 4. 도움이 크다(8) 5. 도움이 매우 크다(10)
			I. 2)	A1.2	비용감소효과	
		서비스 만족도	II. 1)	B1	시설	1. 매우 불만족(2) 2. 불만족(4) 3. 보통(6) 4. 만족(8) 5. 매우 만족(10)
	II. 2)		B2	이용횟수 및 시간		
	II. 3)		B3	서비스 내용		
	사업지속 필요성	III. 1)	C1	향후 이용 의향	1.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2) 2.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4) 3. 그저 그렇다(6) 4. 이용할 것이다(8) 5.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10)	
		III. 2)	C2	정부보조 서비스 지속에 대한 의견	1. 전혀 필요 없다(2) 2. 필요 없다(4) 3. 그저 그렇다(6) 4. 필요하다(8) 5. 꼭 필요하다(10)	
		III. 3)	C3	서비스 중단시 불편 정도	1. 전혀 불편하지 않다(2) 2. 불편하지 않다(4) 3. 그저 그렇다(6) 4. 불편하다(8) 5. 매우 불편하다(10)	

- ⑤ 예를 들어, 수행기관의 평가점수 집계과정을 도식화하면 <표 5-7>과 같다.
- ⑥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설문에서 응답한 백분비(%)를 비중으로 표현하면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난다. 만약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혹은 1에 미달될 경우에는 (각 평가항목의 백분비 배점)/(백분비 배점의 합)으로 조정하여 모든 평가항목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정한다.

<표 5-8> 가중치 평가

평가주체	평가 문항	변수명	변수설명	배점기준
수행기관	I.	E1_1	사업효과	각 평가문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가문항 점수/100
	II.	E1_2	취업성과	
	III.	E1_3	사업지속 필요성	
근로자	I.	E1_1	사업효과	각 평가문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가문항 점수/100
	II.	E1_2	프로그램 만족도	
	III.	E1_3	취업성과	
	IV.	E1_4	사업지속 필요성	
수혜자	I.	E1_1	사업효과	각 평가문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가문항 점수/100
	II.	E1_2	서비스 만족도	
	III.	E1_3	사업지속 필요성	

<표 5-9> 평가점수 집계과정의 예

평가 문항	문항점수	항목점수= 문항점수 평균*10	항목 가중치	수행기관의 가중평균점수
I. 1)	10	사업효과 10(100)	0.3	$(10*0.3 + 8.4*0.4 + 7*0.3)*10 = 84.6$
II. 2)	8.4	취업성과 8.4(84)	0.4	
III. 1)	6	사업지속 필요성 7(70)	0.3	
III. 2)	8			
III. 4)	4			
III. 5)	10			

2. 총량 성과평가

<표 5-10>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총량 평가

		항목별 점수				항목별 가중평균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수행기관		81.5	0.0	87.4	77.3	81.6
근로자		73.8	65.4	65.3	71.8	69.3
수혜자		84.8	84.3	0.0	90.3	86.9
전 체		80.0	74.8	76.3	79.8	77.9

	응답자수	가중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계
수행기관	156	0.35	0.00	0.28	0.37	1.00
근로자	656	0.23	0.21	0.24	0.32	1.00
수혜자	545	0.26	0.33	0.00	0.41	1.00
전 체	(1,357)	0.24	0.23	0.22	0.31	1.00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총량 평가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보자. 수행기관의 경우 지속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사업효과(0.23), 만족도(0.21), 취업성과(0.24), 지속성(0.32) 등에 비슷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 수혜자의 경우 사업지속의 필요성(0.41)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수혜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평가에 있어 사업지속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취업성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근로자는 네 항목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지속의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체별 가중평균을 보면, 수행기관의 가중평균 점수는 81.6점이며, 근로자는 69.3점, 수혜자는 86.9점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77.9점으로 평가된다. 수혜자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항목별 부가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효과의 평가점

수가 80.0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지속성(79.8), 취업성과(76.3) 및 만족도(74.8)의 순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혜자의 경우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이 높다(90.3)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취업성과에 가장 높은 점수(87.4)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만족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성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로서의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3. 사업별 평가

#### 가. 사업구분별 평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사업군별로 파악하자. 우선 사업군은 환경, 교육, 보건, 보육분야로 구분하였고, 노동부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군은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평가점수를 알아보면, 노동부 주관사업의 총 평가점수는 78.4점인 데 반해 여타부처의 주관사업은 전사업 평가점수가 74.1점이다. 즉, 노동부 주관사업이 전사업 평가점수면에서 여타부처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노동부 주관사업에서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하면, 수익형 사업의 평가점수는 78.9점이며, 공익형 사업의 평가점수는 77.9점이다. 즉, 수익형 사업이나 공익형 사업이나 평가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익형 사업이 공익형 사업에 비해 약간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사업군별 평가점수를 보면, 노동부 주관사업의 경우 보육분야(83.2점: 수익형)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이 보건분야, 환경분야, 교육분야의 순이나 그 점수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여타부처 주관사업을 보면, 복지부의 보건분야 사업의 평가점수가 82.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

이 교육부의 교육분야 사업(78.7), 여성부의 보육분야 사업(72.3), 산림청의 환경분야 사업(66.9)의 순이다.

노동부 주관사업은 수익형과 공익형 및 각 사업군별 평가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는 데 비해 여타부처의 주관사업은 사업 시행부처에 따라 점수의 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시행부처간의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군별 가중치를 보면, 대부분 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평가점수에서도 지속성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표 5-11> 사업구분별 평가점수

부처	분야 및 사업명	code	수익/ 공익 여부	항목별 점수				가중 평균 점수	
				사업 효과	만족도	취업 성과	지속성		
노동부	환경분야 (숲 가꾸기 사업)	111	수익	0.0	0.0	0.0	0.0	0.0	
		112	공익	76.4	73.9	70.5	85.3	77.5	
	교육분야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121	수익	79.8	75.0	77.0	74.2	76.3	
		122	공익	79.9	73.7	74.9	77.1	76.9	
	보건분야 (방문도우미 사업)	131	수익	80.1	72.2	76.8	78.4	77.5	
		132	공익	80.0	74.5	78.8	79.7	78.7	
	보육분야 (보육시설 사회적일자리)	141	수익	88.0	79.9	74.5	84.9	83.2	
		142	공익	0.0	0.0	0.0	0.0	0.0	
	노동부 사업 평균		수익		82.6	75.7	76.1	79.1	78.9
			공익		78.7	74.0	74.7	80.7	77.9
평 균			80.7	74.9	75.4	79.9	78.4		
산림청	환경분야	212		73.7	67.2	84.0	48.3	66.9	
교육부	교육분야	222		76.9	77.5	77.1	81.3	78.7	
복지부	보건분야	232		83.2	76.2	85.4	83.6	82.5	
여성부	보육분야	242		78.8	74.4	54.6	74.3	72.3	
여타 부처 평균		평 균		77.6	73.8	74.6	70.7	74.1	
전 체				79.3	74.4	75.0	75.7	76.4	

<표 5-12> 사업구분별 가중치

부처	분야 및 사업명		샘플수	항목별 가중치				가중치합	
				사업 효과	만족 도	취업 성과	지속성		
노동부	환경분야 (숲 가꾸기 사업)	수익	0	0.00	0.00	0.00	0.00	0.00	
		공익	32	0.27	0.11	0.28	0.34	1.00	
	교육분야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수익	81	0.26	0.19	0.16	0.38	1.00	
		공익	130	0.28	0.17	0.16	0.38	1.00	
	보건분야 (방문도우미 사업)	수익	166	0.25	0.17	0.19	0.40	1.00	
		공익	503	0.28	0.18	0.18	0.36	1.00	
	보육분야 (보육시설 사회적일자리)	수익	32	0.28	0.18	0.16	0.38	1.00	
		공익	0	0.00	0.00	0.00	0.00	0.00	
	노동부 사업 평균(계)			(944)	0.27	0.17	0.19	0.37	1.00
	산림청	환경분야		7	0.36	0.13	0.20	0.32	1.00
교육부	교육분야		93	0.29	0.17	0.17	0.38	1.00	
복지부	보건분야		144	0.27	0.17	0.16	0.39	1.00	
여성부	보육분야		75	0.32	0.21	0.17	0.30	1.00	
여타 부처 평균(계)			(319)	0.32	0.17	0.17	0.34	1.00	
전체 평균(계)			(1,263)	0.29	0.17	0.18	0.36	1.00	

나. 개별사업별 평가

1) 노동부의 개별사업별 평가점수

먼저 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표사업의 평가점수를 보자.

첫째, 숲가꾸기 사업(생태지역 사업 포함)의 평가점수를 보면, 전체 가중평균이 77.1점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이 85.1점, 근로자는 70.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수행기관은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에 비교적 높은 점수(92.0)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 지속의 필요성에 가장 높은 점수(86.7)를 부여하였다.

&lt;표 5-13&gt; 숲 가꾸기 사업(환경분야)의 평가점수

	평가주체	사업코드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평가점수	기관	112.1	92.0	0.0	80.0	84.0	85.1
	근로자	112.2	60.8	73.9	61.0	86.7	70.5
	수혜자	112.3	0.0	0.0	0.0	0.0	0.0
	평균		76.4	73.9	70.5	85.3	77.1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5	0.29	0.00	0.31	0.41	1.00
	근로자	27	0.26	0.22	0.26	0.26	1.00
	수혜자	0	0.00	0.00	0.00	0.00	0.00
	평균	32	0.25	0.20	0.25	0.30	1.00

둘째, 교육분야인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의 평가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익형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의 평가점수는 76.2점이다. 이 중 수혜자는 8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이 수행기관(80.7), 근로자(65.5)의 순이다. 이로써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인 저소득층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임금 근로조건 등 취업성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근로자의 취업성과는 63.5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수행기관의 취업성과는 90.5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태도와 수행기관의 생각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행기관은 일자리의 창출이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참여에 의해 생기는 일자리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의 면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형 사업의 경우, 전체 평가점수는 76.6점으로 수익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성과 평가점수에서 수행기관은 86.7점, 근로자는 63.1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수익형과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일자리를 일자리로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지속성 항목에서 수혜자의 평가점수를 보면, 수익형이 86.2점인 데 반해 공익형은 90.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사업의 수혜자가

<표 5-14>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교육분야)의 평가점수

수익형 사업	평가점수	평가주체	사업번호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수행기관	121.1	87.5	0.0	90.5	71.3	80.7
	근로자	121.2	69.0	65.4	63.5	65.0	65.6	
	수혜자	121.3	82.7	84.6	0.0	86.2	84.7	
	평균		79.8	75.0	77.0	74.2	76.2	
수익형 사업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8	0.30	0.00	0.24	0.46	1.00
	근로자	40	0.22	0.22	0.25	0.31	1.00	
	수혜자	33	0.27	0.36	0.00	0.37	1.00	
	평균	81	0.22	0.25	0.21	0.32	1.00	
공익형 사업	평가점수	평가주체	사업번호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22.1	83.1	0.0	86.7	71.5	79.7
	근로자	122.2	70.0	64.6	63.1	69.6	67.3	
	수혜자	122.3	86.6	82.8	0.0	90.1	86.9	
	평균		79.9	73.7	74.9	77.1	76.6	
공익형 사업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3	0.33	0.00	0.28	0.38	1.00
	근로자	67	0.22	0.20	0.21	0.36	1.00	
	수혜자	50	0.29	0.30	0.00	0.41	1.00	
	평균	130	0.24	0.22	0.21	0.33	1.00	

저소득계층임을 감안할 때 사업지속의 필요성은 공익형 사업 수혜자가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취업성과에서 수익형 사업의 수행기관과 근로자의 평가점수 차이가 공익형 사업의 점수 차이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수익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참여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보건분야인 방문도우미 사업의 평가점수를 보자. 먼저 수익형 사업을 보면, 전체 평가점수가 77.1점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은 80.8점, 근로자는 69.5점, 수혜자는 85.6점으로 수혜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다. 이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사업 지속의 필요성 평가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공익형 사업은 전체 평가점수가 78.3점으로 수익형에 비해 다소 높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이 83.6점, 근로자가 68.4점, 수혜자가 87.1점



<표 5-15> 방문도우미 사업(보건분야)의 평가점수

수익형 사업	평가점수	평가주체	code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31.1	80.0	0.0	88.1	75.0	80.8
	근로자	131.2	77.5	61.1	65.4	71.5	69.5	
	수혜자	131.3	82.8	83.5	0.0	88.5	85.6	
	평균		80.1	72.3	76.8	78.3	77.1	
수익형 사업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6	0.31	0.00	0.32	0.37	1.00
	근로자	80	0.21	0.17	0.24	0.38	1.00	
	수혜자	71	0.23	0.32	0.00	0.45	1.00	
	평균	167	0.21	0.21	0.24	0.34	1.00	
공익형 사업	평가점수	평가주체	code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32.1	80.8	0.0	93.5	78.4	83.6
	근로자	132.2	74.4	64.9	64.1	69.3	68.4	
	수혜자	132.3	84.6	84.0	0.0	91.3	87.1	
	평균		80.0	74.5	78.8	79.7	78.3	
공익형 사업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49	0.36	0.00	0.29	0.36	1.00
	근로자	232	0.23	0.20	0.24	0.34	1.00	
	수혜자	224	0.26	0.34	0.00	0.40	1.00	
	평균	505	0.24	0.23	0.22	0.31	1.00	

으로 수혜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다. 이는 수익형이나 공익형이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업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보건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성 항목에서 수혜자의 평가점수가 수익형은 88.5점이나 공익형은 91.3점으로 나타난 것은, 수혜자 부담이 적은 공익형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성과 항목에서 근로자의 평가점수를 보면, 수익형이 65.4점으로 공익형 64.1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이는 수익형 사업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근로자에 대한 취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보육분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전체 평균이 82.3점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업은 수익형으로의 전환이 용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점수가 91.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지속성 항목의 수혜자 평가점수가 92.7점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표 5-16>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보육분야)의 평가점수

수익형 사업	평가점수	평가주체	사업번호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41.1	93.3	0.0	76.7	73.3	79.6
근로자	141.2	77.4	71.4	72.4	88.6	79.1		
수혜자	141.3	93.3	88.4	0.0	92.7	91.4		
평균		88.0	79.9	74.5	84.9	82.3		
수익형 사업	응답수/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3	0.27	0.00	0.27	0.47	1.00
근로자	14	0.25	0.18	0.23	0.35	1.00		
수혜자	15	0.32	0.35	0.00	0.33	1.00		
평균	32	0.24	0.22	0.21	0.33	1.00		

다섯째, 재활용 사업의 경우, 먼저 수익형 사업을 보면 전체 평가점수가 78.0점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은 80.5점, 근로자는 77.9점, 수혜자는 80.2점으로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다. 이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5-17> 재활용 사업(기타분야)의 평가점수

수익형 사업	평가점수	평가주체	code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51.1	90.0	0.0	79.7	71.7	80.5
근로자	151.2	79.4	71.7	64.9	85.3	77.9		
수혜자	151.3	80.0	77.3	0.0	82.3	80.2		
평균		83.1	74.5	72.3	79.8	78.0		
수익형 사업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6	0.33	0.00	0.34	0.33	1.00
근로자	30	0.29	0.14	0.19	0.39	1.00		
수혜자	15	0.28	0.29	0.00	0.43	1.00		
평균	51	0.26	0.19	0.23	0.33	1.00		
공익형 사업	평가점수	평가주체	code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52.1	90.0	0.0	100.0	85.0	90.8
근로자	152.2	75.1	67.0	64.4	70.0	69.5		
수혜자	152.3	86.7	86.7	0.0	96.7	90.3		
평균		83.9	76.8	82.2	83.9	81.8		
공익형 사업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2	0.33	0.00	0.28	0.40	1.00
근로자	12	0.26	0.22	0.22	0.31	1.00		
수혜자	3	0.27	0.37	0.00	0.37	1.00		
평균	17	0.24	0.25	0.21	0.30	1.00		

공익형 사업은 전체 평가점수가 81.8점으로 수익형에 비해 다소 높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이 90.8점, 근로자가 69.5점, 수혜자가 90.3점으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다.

수익형이나 공익형 사업 모두 취업성과 항목에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각각 64.9점 및 64.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재활용 사업이 해당 근로자의 취업성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여타부처소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개별사업별 평가점수

첫째, 산림청의 공공사회정비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의 평가점수는 73.6점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은 86.3점, 근로자는 64.6점이다. 수혜자는 평가주체에서 제외되었다. 수행기관과 근로자의 평가점수 차이가 상당히 큰 폭이다. 특히 취업성과 항목에서 수행기관은 100점으로 평가한 데 반해 근로자는 68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사업시행에 있어 수행기관이 해당 근로자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의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의 평가점수는 77.8점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은 78.1점, 근로자는 70.8점, 수혜자는 86.5점으로 평가하였다. 취업성과 항목에서 수행기관과 근로자의 평가점수 차이가 20점으로 큰 폭이다. 이 사업 역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기능이 다소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8> 공공사회정비 숲 가꾸기 사업(산림청, 환경분야)의 평가점수

		평가주체	code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평가점수	기관		210.1	80.0	0.0	100.0	85.0	86.3
	근로자		210.2	67.3	67.2	68.0	60.0	64.6
	수혜자		210.3	0.0	0.0	0.0	0.0	0.0
	평균			73.7	67.2	84.0	72.5	73.6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2	0.50	0.00	0.25	0.25	1.00	
	근로자	5	0.22	0.26	0.14	0.38	1.00	
	수혜자	0	0.00	0.00	0.00	0.00	0.00	
	평균	7	0.32	0.23	0.17	0.28	1.00	

<표 5-19>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교육부, 교육분야)의 평가점수

평가점수	평가주체	code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220.1	71.1	0.0	86.4	79.3	78.1
	근로자	220.2	72.4	68.5	66.9	73.8	70.8
	수혜자	220.3	86.5	85.7	0.0	87.0	86.5
	평균		76.7	77.1	76.7	80.0	77.8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27	0.38	0.00	0.26	0.36	1.00
	근로자	26	0.23	0.21	0.23	0.33	1.00
	수혜자	40	0.28	0.30	0.00	0.42	1.00
	평균	93	0.25	0.22	0.21	0.32	1.00

셋째, 복지부의 방문도우미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의 평가점수는 82.3점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은 87.4점, 근로자는 72.1점, 수혜자는 91.0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보건서비스 분야 사업은 수혜자의 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혜자가 사업지속의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취업성과 항목의 점수에서 보면, 근로자의 취업성과가 70.9점으로 다른 사업군(60점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수행기관과 근로자의 평가점수 차이는 매우 큰 편이다.

<표 5-20> 방문도우미 사업(복지부, 보건분야)의 평가점수

평가점수	평가주체	code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230.1	84.3	0.0	99.7	82.1	87.4
	근로자	230.2	77.2	65.4	70.9	72.9	72.1
	수혜자	230.3	88.2	87.1	0.0	95.7	91.0
	평균		83.2	76.2	85.4	83.6	82.3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4	0.33	0.00	0.26	0.42	1.00
	근로자	65	0.24	0.18	0.23	0.34	1.00
	수혜자	65	0.25	0.33	0.00	0.42	1.00
	평균	144	0.23	0.22	0.21	0.34	1.00

&lt;표 5-21&gt;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여성부, 보육분야)의 평가점수

	평가주체	code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평가점수	기관	240.1	88.0	0.0	44.6	76.0	72.6
	근로자	240.2	70.3	65.9	64.6	61.2	65.2
	수혜자	240.3	78.1	82.9	0.0	85.8	82.5
	평균		78.8	74.4	54.6	74.3	71.2
응답수 및 가중치	평가주체	응답수	사업효과	만족도	취업성과	지속성	가중평균
	기관	10	0.44	0.00	0.28	0.29	1.00
	근로자	33	0.24	0.22	0.25	0.30	1.00
	수혜자	32	0.28	0.40	0.00	0.32	1.00
	평균	75	0.27	0.26	0.22	0.26	1.00

넷째, 여성부의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의 평가 점수는 71.2점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행기관은 72.6점, 근로자는 65.2점, 수혜자는 82.5점으로 평가하였다.

보육서비스 분야 사업 역시 수혜자가 사업지속의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으로써 강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취업성과 항목 점수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수행기관 평가점수가 과대평가되고 근로자 평가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수행기관은 44.6점, 근로자는 64.6점으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업수행 주체별 평가

여기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평가를 근로자, 수혜자, 수행기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군별 평가의 경우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노동부 사업의 경우 공익형은 C유형에 속하고 수익형 사업은 D유형에 속하지만 사업의 특성별 비교를 위해 편의상 동일한 사업과 같은 행에 위치하여 사업내용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부표 참조).

가. 근로자 평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근로자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로 사업 효과, 사업프로그램 만족도, 취업성과, 사업지속 필요성 등 4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사업효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척도로 하였고, 사업프로그램 만족도는 임금,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내용을 척도로 하였으며, 취업성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순취업효과, 가계소득 측면에서의 도움여부, 사업 중단시 일자리 유지가능성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끝으로 사업지속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 사업효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수입목적과 봉사(공익)목적으로 구분하여 합이 100이 되도록 질문을 한 결과, 수입목적이 62.2%, 봉사(공익)목적이 37.8%로 나타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의 성격을 봉사로 받아들이는 비율도 꽤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다른 실업대책과 비교시 ‘근로 기회 제공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성과가 크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된 근로자의 고용계약이 단기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취업된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다른 취업기회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이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2> 일을 하게 된 동기(N=685)

	비율(합=100)
수입 목적	62.2
봉사 목적	37.8

<표 5-23> 다른 실업대책과 비교시 근로기회 제공 면에서의 성과

	빈도	비율(%)
성과가 매우 적다	10	1.5
성과가 적다	34	4.9
비슷하다	82	11.9
성과가 크다	356	51.8
성과가 매우 크다	205	29.8
전 체	687	100
5점 척도	4.04	

사업군별로 보면 공공근로성을 갖는 숲 가꾸기 사업이 ‘근로기회 제공’에서의 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육 시설 사회적 일자리(D유형)의 경우 여성부가 운영하는 사업에서의 평점은 3.4점인데 비해 같은 유형의 노동부 수익형 사업의 평점은 4.0점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부표 1 참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근로경험이 계약 만료 후 다른 곳에 취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7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이 사업에서의 근로경험이 다른 곳에 취업하는 데 도움 여부

	빈도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13	1.9
적게 도움이 된다	34	4.9
보통이다	118	17.2
도움이 된다	360	52.4
매우 도움이 된다	162	23.6
전 체	687	100
5점 척도	3.91	

사업군별로 보면 공공근로자사업의 평점이 가장 낮고(3.4점), 나머지 세 종류의 사업은 비슷한 평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직무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 분류에 따른 비교에서보다는 사업내용의 성격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부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부의 수익형과 공익형, 그리고 여타 사업과의 비교 평점들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 사업프로그램 만족도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교육훈련의 내용과 기간, 현 직장의 계약기간, 월급, 하루 근로시간, 현재 하는 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해 볼 때 ‘하는 일’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가 3.8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육훈련, 근로시간이 각각 3.49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기간(2.84점)과 월급(2.68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부터 <부표 7>까지는 사업군별로 구분하여 사업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표 4>에서 보듯이 계약기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노동부의 수익형 사업이더라도 방문도우미 사업의 만족도는 2.5점으로 방과 후 교실보조인력 사업(3.4점)이나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3.4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사업내용에 따라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의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간을

<표 5-25> 사업프로그램 만족도

	교육훈련		계약기간		월급		근로시간		하는 일	
매우 불만족	12	1.7	59	8.6	70	10.2	16	2.3	3	0.4
불만족	29	4.2	201	29.3	206	30.0	47	6.8	25	3.6
보통	305	44.4	244	35.5	296	43.1	266	38.7	187	27.2
만족	289	42.1	160	23.3	103	15.0	303	44.1	361	52.5
매우 만족	52	7.6	23	3.3	12	1.7	55	8.0	111	16.2
전 체	687	100	687	100	687	100	687	100	687	100
5점 척도	3.49		2.84		2.68		3.49		3.80	



비교하면,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의 경우 수익형이 3.4점이고 공익형은 3.3점으로 별 차이가 없는 데 비해 방문도우미 사업의 경우 공익형이 2.8점으로 수익형 2.5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부표 4 참조).

월급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점이 낮는데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노동부의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간 만족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5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익형 사업이 근로자들의 월급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각각 4.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문도우미 사업과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각각 3.7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사업의 공익형과 수익형 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유형이 더 낮은 평가가 곤란하다(부표 7 참조).

### 3) 취업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가 직접 보조금(임금)을 지급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고용된 인원수가 바로 취업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취업된 근로자가 다른 취업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 취업효과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곳에 취업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높다’가 ‘낮다’에 비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조사대상자 687명 중 189명은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취업된 인원의 약 30% 가량은 사중손실효과로 평가된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참여 근로자들과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인력의 특징이 다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부표 8 참조).

<표 5-26>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곳 취업 가능성

	빈 도	비율(%)
매우 낮다	54	7.9
낮다	151	22.0
보통이다	293	42.6
높다	136	19.8
매우 높다	53	7.7
전 체	687	100
5점 척도	2.98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9.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사회적 일자리가 취업된 근로자의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방문도우미 사업(3.6점)과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3.7점) 종사자들의 가계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3.2점)이나 숲 가꾸기 사업(3.2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9 참조).

한편, “현재 일하는 내용과 다르지만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전직할 의향이 있겠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표 5-27> 사업 참여에 따른 수입의 가계 도움

	빈도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23	3.3
적게 도움이 된다	121	17.6
보통이다	135	19.7
도움이 된다	293	42.6
매우 도움이 된다	115	16.7
전 체	687	100
5점 척도	3.52	

<표 5-28> 전직의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463	67.4
없다	207	30.1
무응답	17	2.5
전 체	687	100

<표 5-29> (전직의사가 있는 경우) 직장을 옮기려는 이유

	빈도	비율(%)
무응답	232	33.8
고용보장	186	27.1
높은 급여수준	186	27.1
근무환경	68	9.9
기타	15	2.2
전 체	687	100

응답자의 67.4%가 전직의사를 밝혔으며, 전직계획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고용보장과 높은 급여수준을 지적하여 사회적 일자리가 고용불안 및 낮은 급여 때문에 근로자에게 직장으로서 매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노동부 사업 종사자들의 이직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즉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의 경우 노동부 공익형 사업 종사자들의 이직의향은 전체 종사자들의 77.9%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교육부 사업 종사자들의 이직의향은 60.7%로 나타났다. 방문도우미 사업의 경우에는 복지부 사업 종사자들의 이직의향은 60.3%인 데 비해 노동부 수익형은 76.3%, 공익형은 74.9%로 조사되었다(부표 10 참조).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할 경우 취업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22.0%에 불과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한 근로자들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없을 경우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

<표 5-30> 정부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다른 곳에서 일할 가능성

	빈도	비율(%)
매우 낮다	119	17.3
낮다	174	25.3
보통이다	243	35.4
높다	103	15.0
매우 높다	48	7.0
전 체	687	100
5점 척도	2.69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 공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 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3.2 점), 그 다음으로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2.9점) 순으로 나타났다.

4) 사업지속 필요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향후에도 정부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1.4%가 제도를 개선 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사업내용별로 보면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의 경우 교육부 사 업 종사자들은 ‘현행대로 지속해야 한다’가 37.0%이고, ‘개선해서 지속해 야 한다’가 59.3%로 나타난 데 비해, 노동부 공익형 사업의 경우에는 ‘개 선해서 지속해야 한다’가 64.7%이고 ‘현행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29.4%로 나타났으며, 수익형 사업의 경우 ‘현행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17.5%인 데 비해 ‘개선해서 지속해야 한다’가 77.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수익형 사업 종사자들의 개선요구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방문도우 미 사업의 경우에는 복지부 사업 종사자들과 노동부 사업 종사자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3 가량이 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부표 12 참조).

<표 5-31> 사업지원 지속의 필요성

	빈도	비율(%)
제도 개선이 안 될 경우 효과 없 으므로 사업 중단	29	4.2
제도를 개선하여 지속	422	61.4
현행대로 지속	221	32.2
무응답	15	2.2
전 체	687	100

나. 수혜자 평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서비스 수혜자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로 사업효과, 서비스 만족도, 사업지속 필요성 등 3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사업효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서비스 수혜자들의 생활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감소효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척도로 하였고,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시설, 서비스 내용,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비용의 적정성 등을 척도로 하였다. 사업지속 필요성은 서비스 수혜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향후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1) 사업효과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혜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수혜자의 대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의 90.48%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용감소효과에 대해서는 75.3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일자리의 공공서비스기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노동부 수익형 사업 수혜자들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평점 4.7점), 수익형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차이가 없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부표 13 참조). 비용감소효과에 대해서 보면 노동부 사업의 경우 수익형 사업에 비해 공익형 사업 수혜자들이 비용감소효과가 더 크

<표 5-32>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도움 여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비용감소효과	
	횟수	평균	횟수	평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0.32	10	1.61
도움 안 된다	6	0.97	16	2.58
그저 그렇다	51	8.23	127	20.48
도움이 크다	267	43.06	230	37.10
도움이 매우 크다	294	47.42	237	38.23
전 체	620	100	620	100
5점 척도	4.36		4.08	

다고 응답하였다. 즉,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의 경우 수익형 사업 수혜자들의 비용감소효과 평점은 4.0점인 데 비해 공익형은 4.3점이고, 방문도우미 사업에서도 공익형 사업이 4.0점으로 수익형 사업의 3.9점에 비해 미미하나마 다소 높았다(부표 14 참조).

2) 서비스 만족도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만족도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혜자의 8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서비스시간 및 횟수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81.2%가, 그리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8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33> 서비스 만족도

	시설만족도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서비스 내용	
	횟수	평균	횟수	평균	횟수	평균
매우 불만족	5	0.81	3	0.48	4	0.65
불만족	2	0.32	6	0.97	6	0.97
보통	75	12.10	107	17.26	73	11.77
만족	294	47.42	305	49.19	293	47.26
매우 만족	244	39.35	199	32.10	244	39.35
전 체	620	100	620	100	620	100
5점 척도	4.24		4.11		4.24	

사업내용별로 보면 사업간 시설만족도나 이용횟수 및 시간, 서비스 내용 모두 만족도가 높았는데, 특히 노동부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의 수익형 사업이 시설만족도(4.5점)와 서비스 만족도(4.6점)에서 높은 평점을 보여주었다(부표 15~부표 17 참조).

한편, <부표 18>에서 보면 공익형 사업의 경우 서비스 요금을 받지 않아야 됴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요인이 조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부 수행기관들이 공익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받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 3) 사업지속 필요성

수혜자들에게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 필요성을 계속 이용여부, 서비스활동의 지속 필요성,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불편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먼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계획 여부에 대해 수혜자의 83.7%가 향후에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0.8%에 불과하여 서비스수혜자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업내용별로 보아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각 사업별 수혜자 모두 향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부표 21 참조).

<표 5-34>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계획

	빈도	비율(%)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3	0.48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2	0.32
그저 그렇다	34	5.48
이용할 것이다	271	43.71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310	50.00
전 체	620	100
5점 척도	4.42	

<표 5-35> 정부 보조에 의한 서비스 활동의 지속 필요성

	빈도	비율(%)
필요 없다	4	0.65
그저 그렇다	28	4.52
필요하다	123	19.84
꼭 필요하다	465	75.00
전 체	620	100
5점 척도	4.7	

향후에도 정부 보조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라는 질문에 대해 ‘꼭 필요하다’가 수혜자의 75.0%를 차지하였고, 19.8%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수혜자의 94.8%가 서비스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만일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수혜자의 61.3%가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2%로 나타나 전체 수혜자의 91.4%가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서비스가 이들 수혜자들에게 매우 유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사업내용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방문도우미 사업 수혜자와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수혜자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방과후 교실 보조 인력 수혜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부표 23 참조).

<표 5-36> 서비스 중단시 생활 불편여부

	빈도	비율(%)
전혀 불편하지 않다	2	0.32
불편하지 않다	4	0.65
그저 그렇다	47	7.58
불편하다	187	30.16
매우 불편하다	380	61.29
전 체	620	100
5점 척도	4.51	



&lt;표 5-37&gt; 이용 중인 서비스 중단시 다른 서비스 이용가능성

	빈도	비율(%)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46	23.55
이용할 수 없다	448	72.26
무응답	26	4.19
전 체	620	100

한편,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다른 공공시설이나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2.26%가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다른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의 공익형 사업 수혜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84.3%로 같은 사업특성의 교육부 주관 사업(53.3%)이나 노동부 수익형(56.8%)에 비해 높았으며, 방문도우미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 수익형 사업에서 ‘이용가능하지 않다’가 67.1%인 데 비해 복지부 주관 사업(92.2%)이나 노동부 공익형(81.1%) 사업에서는 ‘이용가능하지 않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4 참조).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3.4%이고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43.4%로 나타나 서비스의 지속 필요성이 있으면서 개선 필요성의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여성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다른 사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부표 25 참조).

&lt;표 5-38&gt;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빈도	비율(%)
사업이 필요 없다	1	0.16
개선되어야 한다	269	43.39
그저 그렇다	81	13.06
개선할 필요가 없다	269	43.39
전 체	620	100

다. 수행기관 평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행기관 평가를 위해 평가 지표로 사업효과, 취업성과, 사업지속 필요성 등 3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사업효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사회복지나 공익적 성격 이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통해 파악하였고, 취업성과는 사중 손실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순취업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사업지속 필요성으로는 사업지원의 필요성과 운영비 보조가 없는 경우 사업의 계속 수행여부를 통해 파악하였다.

1) 사업효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사회복지나 공익적 기능 이외에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8.9%가 기여한다고 조사되어 수행기관의 2/3 이상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를 사업내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여도가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사업의 기여도 평점이 낮았는데 이는 교육부 수행기관의 응답비율이 낮은 데 기인한다. 노동부 사업과 타 부처 사업을 비교하면 방문도우미 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에서 노동부 사업 수행기관들이 기여도가 크다는 응답이 많았다(부표 26 참조).

<표 5-39>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 기여도

	빈도	비율(%)
매우 적게 기여한다	3	1.91
적게 기여한다	5	3.18
보통이다	25	15.92
많이 기여한다	69	43.94
매우 많이 기여한다	55	35.03
전 체	157	100
5점 척도	4.01	

2) 취업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정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운영비 지원여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실질적인 취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귀 단체의 사업성격이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만약 정부의 운영비 보조 지원금이 없었다면 현 재 고용한 인원을 채용하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3 가량이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 수행에서 정부의 운영비 보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없었을 경우 ‘채용인원이 감소하였을 것이다’라는 응답도 35.0%로 나타나 수행기관의 1/3에서 사중손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사업내용별로 보면,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 민간위탁이나 수익형 사업의 경우 지원금이 없을 경우 고용인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어느 정도는 인력을 채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부표 27 참조).

<표 5-40>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고용 여부

	빈도	비율(%)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을 것	102	64.97
감소했을 것	55	35.03
전 체	157	100

2) 사업지속 필요성

일자리 창출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에 견주어 지속적으로 정부의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조사대상 수행기관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자 중 2/3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노동부 수익성 사업 수행기관들이 동 사업을 개선해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부처 사업이나 공익성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부표 28 참조).

<표 5-41>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빈도	비율(%)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할 필요 없음	1	0.64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105	66.88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51	32.48
전 체	157	100

수행기관의 사업성격이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운영비 보조가 없다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기관의 79.6%가 사업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현 사업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의 사업과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없더라도 현 사업의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9 참조).

지원금 규모를 줄일 경우 사업수행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할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수행을 지속할 의사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 사업부문별로는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42>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현 사업의 유지 가능성

	빈도	비율(%)
매우 낮다	64	40.76
낮다	61	38.85
보통이다	18	11.46
높다	13	8.28
매우 높다	1	0.64
전 체	157	100
5점 척도	1.89	

<표 5-43> 지원금 규모를 줄일 경우 사업지속 의사

	빈도	비율(%)
매우 낮다	32	20.38
낮다	52	33.12
보통이다	38	24.20
높다	20	12.74
매우 높다	8	5.10
무응답	7	4.46
전 체	157	100
5점 척도	2.47	

## 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2004년에 실시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추가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평가는 투입기준 평가, 산출기준 평가, 프로그램의 사후적인 효과성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평가의 시사점

2004년도에 추가적 일자리 사업으로 수행된 사업들의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으로 시행된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4개의 사업실적을 보면 앞의 두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사업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은 2004년의 지원실적은 8개 사업장에서 46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05년에는 다소 늘어난 15개 사업장의 161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경우에도 지원실적은 미미한데, 2005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사업장은 17개 사업장이며 지원인원은 77명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실적을 보면 2005

년도에 7,967개 사업장에서 모두 41,530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2005년 지원실적을 보면 364개 기업에서 787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추가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채용보조금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사업실적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된 일자리수는 2004년에 339개 사업장에서 1,337개이며, 2005년에는 353개 사업장에서 1,5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경우 2005년에 6개의 사업장에서 284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정량적인 측면에서 지원인원수만을 볼 때 교대제전환지원금이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들에 비해 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방향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적 평가에서도 보이고 있다. 즉, 위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각 사업의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종합점수에서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이 58.8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61.1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61.4점)이며, 상대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64.5점)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65.5점) 사업은 정성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 프로세스별로 살펴보면 사업추진배경이나 사업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계획단계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점이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비해, 사후관리의 합리성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의 사후 반영이라는 사후관리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낮은 평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업효과

및 지속성과 취업성과 및 근무안정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교대제전환지원금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장려금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2004년도에 추가적 일자리 사업으로 수행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가 사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 사업들의 경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점검이나 의견수렴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시스템을 구비하여 이를 제도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 측면에서 보면, 현저히 사업실적이 낮은 교대제 전환금지지원금이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실적이 낮은 이유를 규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사회적 일자리 사업 평가의 시사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의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1,638억 원이고, 이 중 95.2%인 1,56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추진실적은 당초 계획인원(21,334명)과 비슷한 수준인 21,632명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별 지원수준이나 지원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에서 자료수집상 한계가 있는 관계로 창출된 일자리수 자체를 통해 사업별로 비교하는 것은 일정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 사업에 대해 수행기관, 근로자, 그리고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효과와 만족도, 취업성과, 그리고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기관의 경우 지속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사업효과(0.23), 만족도(0.21), 취업성과(0.24), 지속성(0.32) 등에 비슷한 가중



치를 두고 있다. 수혜자의 경우 사업지속의 필요성(0.41)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수혜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평가에 있어 사업지속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취업성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근로자는 네 항목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지속의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주체별 가중평균을 보면 수행기관의 가중평균 점수는 81.6점이며, 근로자는 69.3점, 수혜자는 86.9점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77.9점으로 평가된다. 수혜자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항목별 부가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효과의 평가점수가 80.0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지속성(79.8), 취업성공(76.3) 및 만족도(74.8)의 순이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수혜자의 경우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이 높다(90.3)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취업성공에 가장 높은 점수(87.4)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만족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성공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로서의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사업군별로 구분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군을 환경, 교육, 보건, 보육분야로 구분하였고,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군은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평가 점수를 알아보면, 노동부 주관사업의 총 평가점수는 78.4점인 데 반해 여타부서의 주관사업은 전사업 평가점수가 74.1점이다. 즉, 노동부 주관사업이 전 사업 평가점수면에서 여타부서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주관사업에서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하면, 수익

형사업의 평가점수는 78.9점이며, 공익형 사업의 평가점수는 77.9점이다. 즉, 수익형 사업이나 공익형 사업이나 평가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익형 사업이 공익형 사업에 비해 약간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사업군별 평가점수를 보면, 노동부 주관사업의 경우 보육분야(83.2점: 수익형)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이 보건분야, 환경분야, 교육분야의 순이나, 그 점수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여타부서 주관사업을 보면, 복지부의 보건분야 사업의 평가점수가 82.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교육부의 교육분야 사업(78.7), 여성부의 보육분야 사업(72.3), 산림청의 환경분야 사업(66.9)의 순이다.

노동부 주관사업은 수익형과 공익형 및 각 사업군별 평가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는 데 비해 여타부서의 주관사업은 사업 시행부처에 따라 점수의 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시행부처간의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군별 가중치를 보면, 대부분 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평가점수에서도 지속성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비록 자료 및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질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목표의 조화이다. 사회 서비스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목표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서비스의 질 제고는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 이외에 우수 인력의 유인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우수인력의 유인은 기존 취업자들의 일자리 이동에 따른 사중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충되는 노동수요에 부응하는 노동공급의 가용성이라는 측면을 볼 때 일자리 이동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보완적 역할이다.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바람직한 사회적 외부성을 갖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적인 시장에서 생산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만큼 공공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사회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에 공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공적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지원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적지원(보조금 형태)을 통한 자립형 모델에서부터 공적지원이 없으면 서비스의 제공이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능한 분야의 질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확보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가 일반 시장에서 형성되는 일자리에 비해 소득이나 고용안정성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이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수요를 공급한다는 효과성 외에 비용절감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사회적 서비스의 고유한 역량과 국가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서비스분야를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목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에 초점을 맞춘 분야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서비스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적수익이 가능한 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04),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 김석진(2004), 「선진국 사례로 본 일자리 창출 포인트 6」, LG주간경제.
- 김안국 외(2005), 『직업훈련 정책평가 계량모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부(2003), 『2003년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
- \_\_\_\_\_ (2004), 『2004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계획』.
- \_\_\_\_\_ (2003), 『국민의 정부 5년(1998~2002) 실업대책 백서』.
- \_\_\_\_\_ (2003),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2004~2008년)』.
- 박세일·우천식·이주호(2002),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2002),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임동진(2002),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재정경제부(2004),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최경수(2001), 『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 황덕순·박찬임·황준욱(2004),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2003),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 한진희 외(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 Aiginger, Karl(2003), *The Relative Importance of Labour Market Reforms to Economic Growth*, 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Bjorklund, A., R. Haveman, R. Hollister and B. Holmlund(1991), *Labo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Insurance*, Clarendon Press, London.

Calmfors, L.(1994),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rucial Design Features”, *OECD Economic Studies*, No.22, Spring.

Doolittle, F. and L. Traeger(1990), *Implementing the National JTPA study*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New York.

European Commission(2002), *Impact Evaluation of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Fay, Robert, G.(1996),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 Evidence from the Programme Evaluations in OECD Countrie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18, OECD, Paris.

Heckman, J.(1992), “Randomization and Social Policy Evaluation”, in C. Manski and I. Garfinkle (eds.), *Evaluating Welfare and Training Program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pp.201 ~ 230.

Heckman, J., H. Ichimura, and P. Todd(1998), “Characerizing Selection Bias Using Experimental Data”, *Econometrica*, Vol.66, No.5, pp.1017 ~ 1098.

Heckman, James, J., Robert J. Lalonde and Jeffrey Smith(1999), “The Economics and Econometrics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IIIA, pp.1865 ~ 2097.

HRDC(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1995), *Evaluation of the Employability Improvement Programme*, Canada.

IMD(2003),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F(1999), *Chronic Unemployment in the Euro Area : Causes and Cures*.

IMF(2003),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 Why Reforms*

*Pay Off.*

- Jackman, R.(1995), “What Can Active Labour Market Policy Do?”,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226, March.
- Lehmann, H.(1990), “Employment Measures in Britain : Their Effects on the Overall and Duration Specific Outflow Rates from Unemployment”, Working Paper No.1173, London : Centre for Labour Economics, London School of Economics.
- Maddala, G. S.(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 Manski, C. F. and I. Garfinkel (eds.)(1992), *Evaluating Welfare and Training Program*,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tin, John, P.(2000), “What Works amo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s”, *OECD Economic Studies.*
- Meyer, B.D.(1995), “Lesson from the U.S. Unemployment Insurance Experi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XXXIII, March.
- New Zealand Department of Labour(1995), “Evaluation of Job Action”, Market Research and Evaluation Team, Strategic Support Group, New Zealand Employment Service and Evaluation Unit, Labour Market Policy Group, August.
- OECD(2003), *Education at a Glance.*
- \_\_\_\_\_(1993), *Employment Outlook*, Paris.
- \_\_\_\_\_(1997), *Implementing the OECD Jobs Strategy: Member Countries' Experience*, Paris.
- \_\_\_\_\_(1999), *Jobs Strategy: Assessing Performance and Policy.*
- \_\_\_\_\_(2000), *Labour Market and Social Safety Net Policies.*
- \_\_\_\_\_(1999), “Labour Market Performance and the OECD Jobs Strategy”, *OECD Economic Outlook.*
- \_\_\_\_\_(2001), *Labour Market Policies and Public Employment Service.*
- \_\_\_\_\_(2004), *OECD Employment Outlook.*

- OECD(2003), *OECD Employment Outlook*.
- \_\_\_\_\_(2004),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Ke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ECD Policy Brief*.
- \_\_\_\_\_(2003),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_\_\_\_\_(1998),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 \_\_\_\_\_(1996), *The OECD Jobs Strategy: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Paris.
- \_\_\_\_\_(1994), *The OECD Jobs Study: Evidence and Explanations*.
- Raaum, O., H. Torp, and H. Goldstein(1995), “Employment Effects of Labour Market Training in Norway”, *Memorandum from the University of Oslo*, No.8, February.
- Tamas, A., A. Harkman, and F. Jansson(1995), “The Effect of Vocationally Oriented Employment Training on Income and Employment”, Arbetsmarknadsstyrelsen.
- Young(2003), “Its Economic Impact and the Case for Reform”,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Papers.

## [부록] 정량적 정책평가 방법

### 1. 실험적 방법

#### 가. 실험적 평가에서의 가정

무작위 자연실험(randomized social experiments)에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집단과 프로그램에 참가시키지 않을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는 질문 1에 대한 대답이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두 집단 간의 노동시장 성과의 평균값 차이를 구하면 그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라는 것이다. 즉, 단순한 평균값의 차이가 질문 1에 대한(평균 개념의) 대답이 된다. 이 비교는 단순한 평균 비교이므로 통계학에 별로 지식이 없는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험적 평가를 위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신청자들의 특성이나 분포가 동일하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 나. 실험적 평가방법의 장점

실험적 평가방법을 이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의 평균치를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도 쉽다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선택적 편익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한 가정이 만족될 경우 정책의 효과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 다. 실험적 평가방법의 단점

첫째, 실행상의 문제가 많다. 프로그램 참여를 무작위로 할당하기 때문



에(신청자는 모두 참가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어떤 사람은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무작위 실험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역시 많이 소요된다.

둘째, 무작위 추출을 하더라도 대상자의 행동이 달라지면 무작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randomization bias). 즉, 앞에서 지적한 가정이 맞지 않으면 실험적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래 실험적 방법은 농업이나 생물학적 실험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실험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은 무작위 할당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자신들의 선택 행위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잘못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많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의 참가가 무작위 할당으로 이루어질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찾거나 혹은 참가자 수가 적어서 확실히 참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무작위 추출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진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경우이다.<sup>20)</sup> 혹 잠재적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속여서 운영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프로그램 담당자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숨기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무작위 할당 영역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신청자의 신청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센터 역시 이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표본의 오염이다. 무작위 할당을 할 경우 프로그램기관에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사람과 탈락될 사람을 구분하는 선발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프로그램에 참가할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프로그램생들의 질적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MDRC)의 보고서(Doolittle and Traeger, 1990; Heckman, 1992)에 따르면 90% 이상의 프로그램기관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생들을 모집할 경우 자신들의 프로그램 수준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실험적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는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무작위 할당에서 탈락한 비교집단(control group)이 자신들이 탈락한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훈련을 받을 경우 이들을 프로그램 미참가자라고 볼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으로 생기는 편의를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라고 부른다. 실제로 미국의 JTPA 평가에서 control 집단에 있던 사람의 상당수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다른 유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과측정이 평균적인 차이의 측정이어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즉, 정책 대상이 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평균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을 확대(축소)할 경우 추가로 진입(퇴출)한 대상자에 대한 효과측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성과에 대한 한계분포만 알 수 있으므로 질문 3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다.<sup>21)</sup> 설령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프로그램 진입과 수료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무작위 할당이 가능하지만 가족 배경에 관한 변수나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 등은 무작위로 할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질문 3의 답은 불가능해진다.

여섯째, 비실험적 방법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중도에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경우 등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비실험적 방법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 2. 도구변수 모형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아래의 방정식을 추정하는 것이다. 즉,  $Y$ 가 참가자의 노동시장 성과(예를 들면 소득)일 경우,

21) 이상적인 실험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성과에 대한 분포는 기껏해야  $F(y1 | D=1)$ 과  $F(y0 | D=1)$ 의 한계분포(marginal distribution)만을 알 수 있지  $F(y1, y0 | D=1)$ 인 결합분포를 알 수는 없다. 한계분포만을 이용해도 프로그램의 평균적인 효과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모수들을 추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결합분포가 없으면 식별할 수 없는 많은 모수들이 존재한다(예를 들면, 질문 3에 대한 답변을 위한 모수들). 그러나 한계분포를 가지고 결합분포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Y = \beta + aD + u, E(u) = 0,$$

여기서  $a$ 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내 주는 계수이다(이 경우는 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의 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프로그램의 참가를 결정해 주는 요인이 동시에 참가자의 노동시장 성과( $Y$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아도 높은 소득(따라서 높은  $u$ 값)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에도 참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u | D=1) \neq 0$  이고 selection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 대신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도구변수( $Z$ )는  $u$ 와는 독립적이고  $D$ 와는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즉,

$$E(u | Z) = 0, E(D | Z) = \Pr(D=1 | Z)$$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정확한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의 문제는 어떤 도구변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민감하게 바뀐다는 점이다. 또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역시 결과가 민감하게 변한다.<sup>22)</sup>

#### 가. 관찰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선택편의가 존재할 경우

선택의 편의 문제는 실제로 평가자가 관찰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선택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순히

22) 도구변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실업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다르다. 주마다 다른 복지혜택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근로자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는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복지수준이 높을 경우 굳이 훈련프로그램 등에 참가해서 취업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군 입대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다. 만약 군 입대 자체를 draft lottery로 할 경우 이것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군 입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두 가지 예에서도 참가자들이 그 과정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도구변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Heckman and Smith(1996)에서는 밝히고 있다.

노동시장의 성과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결정해 주는 방정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참가를 결정해 주는 독립변수가 최소한 하나 필요하다(이 같은 조건을 exclusion restriction이라고 부른다).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위 Heckman의 2 단계 추정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겠다.<sup>23)</sup>

참가자들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Y0t$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t$ 기의 잠재적 소득

$Y1t$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t$ 기의 소득

소득을 결정하는 방정식이 선형이라면

$$Y0t = X_t \beta_0 + U_0t$$

$$Y1t = X_t \beta_1 + U_1t$$

이 된다. 위의 정의를 이용하여 질문 1에 대한 답을 써 보면

$$E(Y1t - Y0t | X_t, D=1)$$

이다. 즉,

$$E(Y1t - Y0t | X_t, D=1) = X_t(\beta_1 - \beta_0) + E(U_1t - U_0 | X_t, D=1)$$

통상의 경우  $E(U_1t - U_0 | X_t, D=1) = 0$  이지만 selection bias가 존재하기 때문에(즉,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관찰 불가능하지만 임금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 $U$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E(U_0t | X_t, D=1) \neq E(U_1t | X_t, D=0) \text{이다.}$$

결국  $D$ 와 ( $U_0t$ ,  $U_1t$ )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즉,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는 방정식의 추정이 필요하다.  $IN$ 을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얻게 되는 순이득이라고 하자. 이 순이득은 관찰 가능한 변수  $Z$ 와 관찰 불가능

23) 보다 자세한 설명은 Maddala(1983) 참조.

한 변수  $V$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IN=IN(Z, V)$$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선형관계를 가정하면

$$IN=ZY+V$$

로 다시 쓸 수 있다.  $IN$ (순이득)이 0보다 크면 각 개인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이고, 0보다 적으면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즉,

$$D=1 \text{ if } IN \geq 0 \\ D=0 \text{ otherwise}$$

한편,  $V$ 의 분포가  $F(v)$ 라면  $\Pr(D=1 | Z)=F(-Z\beta)$ 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질문 1의 답을 다시 써 보면

$$E(Y1t - Y0t | Xt, D=1) \\ =E(Y1t - Y0t | Xt, IN \geq 0) \\ =E(Y1t - Y0t | Xt, V > -ZY)$$

$(U, U)$ 가 결합정규분포를 이루고  $(X, Z)$ 와는 통계적으로 독립이라고 가정하자.<sup>24)</sup> 그러면,

$$Y1t - E(Y0t | D=1) = Y1t - X\beta_0 + \sigma v \frac{f(Z\beta)}{F(Z\beta)}$$

가 되고, 프로그램의 평균효과는

$$E(Y1t - Y0t | Xt, D=1) = X(\beta_1 - \beta_0) + (\sigma v - \sigma_1 v) \cdot \frac{f(Z\beta)}{F(Z\beta)} \\ = X(\beta_1 - \beta_0) + \delta \lambda$$

여기서  $\sigma v$ 는  $\text{Cov}(U, V)$ 이고,  $\sigma_1 v$ 는  $\text{Cov}(U_1, V)$ 이며,  $\lambda$ 는 소위 inverse

24) 여기서 정규분포의 가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비모수적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Mills ratio이다.

참여결정식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미참여집단) 모두의 자료를 이용하여 probit이나 기타 방법으로  $\lambda$ 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위 식을 OLS로 추정할 경우 일치추정치<sup>25)</sup>를 구할 수 있다.

### 3. Matching을 통한 비실험적 방법<sup>25)</sup>

#### 가. 비교집단 구성과 propensity score

비교집단 구성의 기본 아이디어는 관찰되는 독립변수( $X$ )들의 특성을 가급적 동일하게 하여 두 집단간의 종속변수( $Y$ ) 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자료에 변수가 많을 경우 이 작업이 복잡할 것이다. 이 경우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해 매칭을 할 수 있다. 즉, 각 참여자( $i$ )에 대해 정확히 동일한  $X$ 값을 갖도록 통제하여 짝을 맞추는 방식 대신에, 주어진  $X$ 에서 참여에 대한 기대확률, 즉  $X$ 들에서의 성향점수를 이용해 짝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도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을 구성하여 비교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향점수는 단순한 하나의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로 이뤄진  $X$ 보다 매칭이 더 쉽다.

매칭의 구체적 단계를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표본조사와 마찬가지로 비참여자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비참여자 표본이 클수록 좋은 매칭 표본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표본을 합쳐서(pooled sample)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로짓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때 참가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모든 변수들이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로짓으로 추정된 ‘참여 기대확률’이 성향점수(propensity score)가 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든 표본 관측치에 대해 이 성향점수를 추정한다. 네 번째는 비참여표본의 성향점수 중에서 일정 점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비교집단 구성에서 제외

25) 이하 내용은 김안국 외, 『직업훈련 정책평가 계량모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를 주로 참조.

한다. 참여집단에 대해 추정된 성향점수범위는 비참여집단의 부분표본(subsample)의 성향점수와 가깝게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참여표본의 각 개인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갖는 비참여표본 관측치를 찾는다. 그 방법은 성향점수의 차의 절대값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데 이것을 “최근접치(nearest neighbor)”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 5개의 최근접치를 구하면, 이 5개의 ‘최근접치’가 갖는 성과지표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 평균치와 참가집단 관찰치의 실제값간의 차이가 바로 이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여로 얻은 성과의 추정치이다. 그리고 참가그룹 각 개인의 이득의 평균치가 바로 전체 평균이득이 된다. 물론 이 같은 작업은 관심있는 변수별로 계층화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성향점수를 이용한 매칭의 가장 단순한 방식이며, 실제에서는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초과추출(over-sampling)된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choice-based 표본추출방식에서의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다(Manski & Lerman, 1978). 다른 방법으로 매칭에 확률의 비(odds ratio;  $p/(1-p)$ ,  $p$ 는 성향점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접치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가까운 비참여자 모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에서는 개인들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Heckman et al., 1998).

#### 나. 매칭의 장단점

매칭은 비모수적 추정 방법이므로, 모수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회귀분석의 함수형태에 대한 가정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선형성의 가정으로 비롯되는 편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choice based sample 등 모집단 샘플이 왜곡되는 경우 설명변수들에 입각한 매칭의 수행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설명변수가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 즉 모형의 오차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오차항의 확률적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매칭을 통해서 구성된 새로운 샘플에 표본선택 모형이나 도구변수 모형의 추정량을 적용하면 일치성(consistency)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표본선택 모형

이나 도구변수 모형 등의 추정량이 무작위 샘플의 가정에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기선택만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표본선택 모형의 추정량이 분석자들의 매칭과정에서 초래된 선택편의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Heckman et al., 1999).

#### 4. Baseline survey를 통한 Double Difference 모형<sup>26)</sup>

Baseline survey를 통하여 Double Difference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DD방법)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 조사를 통하여 ‘참여할 집단의 성과와 참여하지 않을 집단의 성과의 차이’를 먼저 구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일정 시점 이후 다시 조사를 해서 ‘참여한 집단의 성과와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성과 차이’를 다시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차이를 비교해서 훈련의 최종성적을 추정하는 것이다. DD방법을 수식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text{프로그램 도입 후 임금결정식: } W_{ia} = a + bD_i + cX_{ia} + \varepsilon_{ia}$$

$$\text{프로그램 도입 전 임금결정식: } W_{ib} = a + cX_{ib} + \varepsilon_{ib}$$

두 오차항은 시간불변효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해 쓸 수 있다.

$$\varepsilon_{it} = \eta_i + \mu_{it} (t=a, b)$$

여기서  $\eta_i$ 는 관측되지 않는 시간불변효과로  $D_i$ (프로그램 참가 더미)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mu_{it}$ 는 임의교란항으로 (또는  $X_i$ )와 상관관계가 없다. 이 방법의 핵심은 관측되지 않는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기초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W_{ia}$  방정식에서  $i$ 번째 가구는  $W_{ib}$  식에서도 동일한  $i$ 번째 가구로서 각각 프로그램 도입 후 추적조사자료와 프로그램 도입 전 기초조사자료의 관측치이다. 그래서 도입 후 회귀식과 도입 전 회

26) 이하 내용은 김안국 외, 『직업훈련 정책평가 계량모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를 주로 참조.



귀식간의 차이를 계산하면

$$W_{ia} - W_{ib} = b D_i + c (X_{ia} - X_{ib}) + \mu_{ia} - \mu_{ib}$$

이 식에서 관측되지 않으면서 참가에 관련되는 시간 고정적 변수인  $\eta_j$ 는 차감되어 없어져 버린다. 이제 임금의 변화를 설명변수  $X$ 에 있어 변화와 프로그램참가( $D$ )에 대해 회귀추정할 수 있다. 이 OLS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불편추정치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 관측되지 않는 요소의 영향인 선택편의를 해결하였다.

이 방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측 불가능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표본 탈락 편의(attrition bias)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추적조사(follow-up survey)는 한 시점에서 조사된 표본을 여러 시점으로 확장,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본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 기초조사의 모든 가구가 실시 후에도 조사되어야 하지만 이사, 응답거부 등으로 빠지는 가구가 생길 수 있다. 표본 탈락 편의는 이러한 탈락이 순전히 통계적으로 임의적(random)이지 않고 체계적인 어떤 경향이 있을 경우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락 편의가 처리집단에 대해 발생한다면 DD방법은 프로그램 평가에 확실하게 편의를 초래할 것이다.

## 5. 투입산출모형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의 추정을 통해 간접적인 산업지원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지원 사업의 과정을 보면, “특정 혹은 일반적인 산업지원 → 자체 산업의 생산, 투자 증가 및 산업파급효과에 의한 타 산업의 생산, 투자 등 유효수요 증가 → 자체 산업 및 연관산업의 신규 고용창출 →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의 과정을 거친다.

상기의 과정을 거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은 산업연관모형이다.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의 정도가 어떤 파급경로를 거쳐

전체 경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노동 시장의 조건이나 노동시장의 임금탄력성 등의 시장조건은 고려되지 않는다.

직간접 고용유발계수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투자 대상 산업을 외생화하지 않고 전산업에 대해 일정 수준의 투자수요가 있을 경우를 가정한 후 개별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산업연관분석의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L=K(I-A^d)F \dots\dots\dots (1)$$

여기서  $L(1*1)$ 은 총유발 고용자 수,  $K(1*n)$ 은 전산업의 고용계수 대 각행렬,  $A^d(I*n)$ 는 국산투입계수 행렬,  $(I-A^d)^{-1}(I*n)$ 는 투입계수행렬의 역행렬,  $I(I*1)$ 는 전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이다. 이 경우  $K(I-A^d)^{-1}$ 는 투자수요 단위당 산업별 총 유발계수이며,  $K$ 는 직접유발계수이다. 총 유발계수에서 직접유발계수를 차감하면 간접유발계수가 된다.

다음으로 특정산업을 외생화한 모형을 소개하기로 하자.

<부표 3-1>은 특정 지원산업의 과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정부문의 행과 열을 내생부문에서 제외하여 외생부문에 포함시킨 산업연관표이다.

<부표 3-1> 특정 부문을 외생화한 산업연관표

	내 생 부 문	외 생 부 문		수출입	총산출
		특정부문	최종수요		
내생부문	$X_{11}^d \ X_{12}^d \ X_{13}^d$	$X_{1h}^d$	$F_1^m$	$M_1$	$X_1$
	$X_{21}^d \ X_{22}^d \ X_{23}^d$	$X_{2h}^d$	$F_2^m$	$M_2$	$X_2$
	$X_{31}^d \ X_{32}^d \ X_{33}^d$	$X_{3h}^d$	$F_3^m$	$M_3$	$X_3$
특정부문	$X_{h1} \ X_{h2} \ X_{h3}$	$X_{hh}$	$F_h^d$	$M_h$	$X_h$
부가가치	$X_1^v \ X_2^v \ X_3^v$		$X_h^v$		$V$
총투입	$X_1 \ X_2 \ X_3$		$X_h$		

여기서  $X^d$ 는 중간거래액이고 이때  $X_{ij} = a_{ij}X_j$ 이므로 물량균형식은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begin{bmatrix} a_{11}^d & a_{12}^d & a_{13}^d \\ a_{21}^d & a_{22}^d & a_{23}^d \\ a_{31}^d & a_{32}^d & a_{33}^d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X_2 \\ X_3 \end{bmatrix} + \begin{bmatrix} a_{1h}^d \\ a_{2h}^d \\ a_{3h}^d \end{bmatrix} X_h + \begin{bmatrix} F_1^d \\ F_2^d \\ F_3^d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X_2 \\ X_3 \end{bmatrix} \dots\dots\dots (2)$$

$$A^d X + A_h^d X_h + F^d = X$$

위 식을 산출량  $X$ 에 관해 풀면 다음과 같다.

$$X = (I - A^d)^{-1} (A_h^d X_h + F^d) \dots\dots\dots (3)$$

여기서  $(I - A^d)^{-1}$  : 특정 부문이 제거된 투입계수의 역행렬

$A_h^d$  : 특정 부문의 투입계수

위의 식에서 최종수요가 영(0)이라면 총산출량  $X$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X = (I - A^d)^{-1} A_h^d X_h \dots\dots\dots (4)$$

위 식을 기본식으로 하고 특정부분에 대한 지원이 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고용유발효과는 특정부문 투자사업으로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나타낸다. 특정 사업부문의 투자가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자수는 특정 사업투자에 의한 산업별고용유발계수에 특정부문의 국산 투입계수와 특정부문의 투자액을 곱한 값(간접유발 고용자수)과 특정부문의 고용계수에 특정부문의 투자액을 곱한 것(직접유발 고용자수)를 더 해서 총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한다.

$$L^T = K^L (I - A^d)^{-1} A X_R + K_R^L H_R \dots\dots\dots (5)$$

여기서 행렬 부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L^T(1*1)$ 는 총유발 고용자수,  $K^L(1*n)$ 은 특정부문을 제외한 고용계수의 대각행렬,  $A^d(1*n)$ 는 특정부문을 제외한 투입계수 행렬,  $(I - A^d)^{-1}(1*n)$ 는 특정부문을 외생

화한 전국 투입계수행렬의 역행렬,  $A_R^d(I^*1)$ 은 특정부문을 제외한 전국 투입계수 행렬,  $K_R^L(1*1)$ 는 특정부문의 고용계수 벡터,  $X_R(I^*1)$ 는 특정 부문을 제외한 총산출액 벡터,  $H_R(1*1)$ 는 특정부문의 투자액 스칼라,  $i(1*n)$ 는 단위 열벡터(모든 원소가 1인 열벡터)를 나타낸다. 식 (5)에서  $[K^L (I - A^d)^{-1} A_R^d X_R]$ 는 간접유발 고용자수,  $[K_R^L H_R]$ 는 직접유발 고용자수를 말한다.

## 6. DEA 모형

### 가. DEA 평가지표

미시경제모형 중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선형계획방법론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들 수 있다.

DEA 모형은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의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해 선형계획법을 적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DMU의 투입물 및 산출물의 Frontier를 구축한 후, 이 Frontier와 특정 DMU의 투입 및 산출물 간의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를 추정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론을 사업평가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예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지원 사업을 고려하자. 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투입요소로는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집행과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시설 등이 될 것이다. 이는 사업별로 모두 상이할 것이다. 사업별로 상이하게 들어간 투입요소에 의해 산출요소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혜택에 의해 취업된 취업자수, 근로기간, 근로의 지속성과 안정성 등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의사결정 단위는 각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평가대상 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훈련사업일 경우, 투입변수로는 계량화 가능한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금, 훈련기관의 훈련시설, 훈련기자재 및 교강사 수 등이 될 수 있다. 다

음 산출변수로는 교육훈련을 받은 훈련생의 취업자 수, 근로기간 및 임금 수준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DMU는 각 훈련기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훈련기관이 가장 효율적인 훈련을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고 있는가를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면, DEA에서 DMU를 유사한 사업군으로 정할 경우, 투입변수는 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투입액(즉, 지원액)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업의 산출변수는 해당사업의 수혜를 입은 근로자의 취업자 수, 취업기간, 취업의 안정성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화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유사사업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DEA는 계량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입변수(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된 자금)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측정할 수 있다. 즉, 이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대로 활용했을 경우 산출변수인 재취업이나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상대적인 점수값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부가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이 연간 혹은 분기별 등으로 시계열이 가능할 경우, 각 분기나 각 연도의 진행에 따라 DMU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할 수 있다. 이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나. DEA 지표의 이론적 기초

이러한 효율성 측정 방법은 Debreu(1951)와 Koopman(1951)을 시작으로 Farrell(1957)에서 이론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은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 CRS)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는 규모에 대한 보수변동(Variable Return to Scale : VRS) 모형으로 발전시켰다.

기업성과 지표로서의 효율성은 기술효율성, 배분효율성, 총효율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은 주어진 산출량을 최적

의 투입요소 조합과 최적 투입량으로 생산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배분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주어진 가격 조건하에서 최적 투입비율로 생산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총효율성(Overall Efficiency)은 두 가지 효율성을 합한 것이다.

기술효율성은 투입측면과 산출측면의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모에 대한 수익의 가정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수를 구할 수 있다.

#### 1) 투입측면의 기술효율성

투입측면의 기술효율성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가정하에서 두 가지 투입물( $X_1, X_2$ )를 사용해 단일 생산물( $Y$ )을 생산하는 개별 기업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부도 3-1]에서  $QQ$ 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효율적인 등량선이다. 이 경우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i$ 기업의 투입물 조합이  $P$ 점이라면,  $\overline{QQ'}$  상의 일정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입물 조합인  $A$ 점과의 차이인  $\overline{AP}$ 가 비효율적으로 과다 투입되고 있다. 이때  $i$ 기업의 기술효율성은 다음의 비율로 정의된다.

$$TE_i = \frac{OA}{OP} = 1 - \frac{AP}{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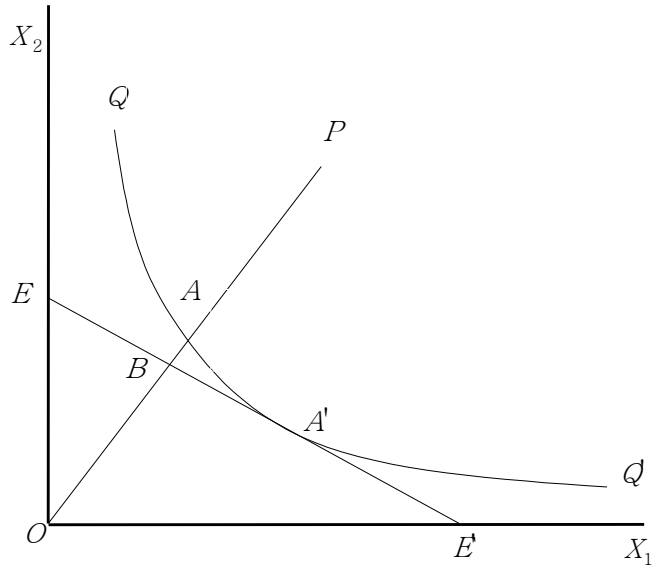
단,  $0 \leq TE_i \leq 1$

기업효율성을 측정하는 계량적 기법은 다음과 같다.

DEA 측정 모형은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 DMU)의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해 선형계획법을 적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DMU의 투입물 및 산출물의 Frontier를 구축한 후, 이 Frontier와 특정 DMU의 투입 및 산출물 간의 거리(Distance Function)를 계산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투입측면의 효율성(Input-Oriented Efficiency)이란 주어진 생산 수준에서 가능한 한 투입물의 투입을 줄여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도 3-1] 기술효율성과 배분효율성



지금,  $k(k=1, \dots, K)$ 개 기업에서 산출물 벡터  $y^k=(y_{k1}, \dots, y_{kM})$ 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입물  $x^k=(x_{k1}, \dots, x_{kN})$ 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보여주는 투입요구집합(Input Requirement Set  $L(y)$ )은 다음과 같다.

$$L(y|C, S) = \{(x_1, \dots, x_N) : \dots\dots\dots (6)$$

$$\sum_{k=1}^K z_k y_{km} \geq y_m, m=1, \dots, M,$$

$$\sum_{k=1}^K z_k x_{kn} \leq x_n, n=1, \dot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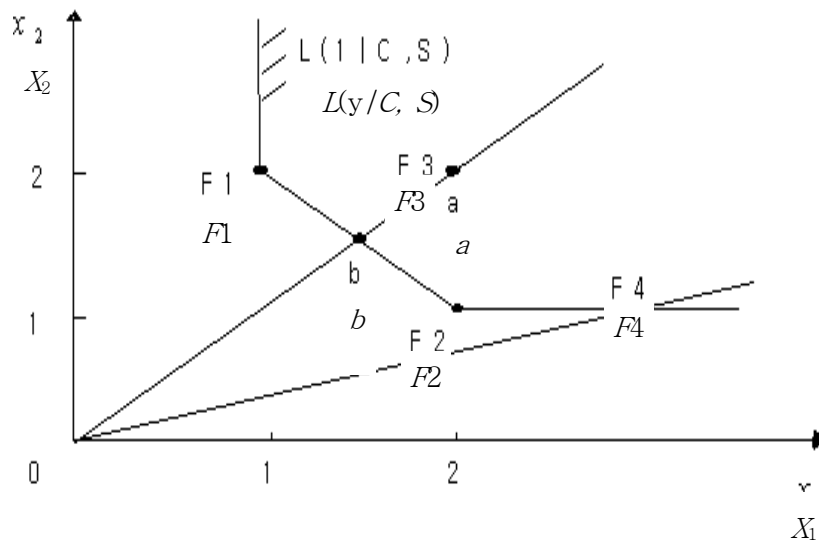
$$z_k \geq 0, k=1, \dots, K,$$

여기서  $z_k, k=1, \dots, K$ 는 밀도변수(intensity variable) 또는 가중치 벡터를 나타낸다.

[부도 3-2]는 2개의 투입물( $x_1, x_2$ )을 이용하여 하나의 산출물( $y$ ) 1 단위를 생산하는 4개의 기업의 경우를 든 것이다. 기업 1과 2는 투입요구집합( $L(y|C, S)$ )의 경계선 상에 있어 기술적으로 효율적이다. 기업 3

은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여 과대투입이 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기업 3의 기술효율성은 점 *b*로 투입물의 규모를 줄여도 1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0a/0b$ 로 나타낼 수 있다.

[부도 3-2] 투입측면의 기술효율성



이를 투입측면의 규모수익 불변(CRS) 기술효율성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_f(y, x | C, S) = \min \theta : \theta x \in L(y | C, S) \dots\dots\dots (7)$$

만약  $n(n=1, \dots, N)$ 개의 투입물( $x$ )을 이용하여  $m(m=1, \dots, M)$ 개의 산출물( $y$ )을 생산하는  $k(k=1, \dots, K)$ 개의 기업이 있을 때, 주어진 생산수준에서 투입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형계획 모형의 해로서 투입측면 기술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 기술효율성이다.

$$TE_f(y, x | C, S) = \min \theta \dots\dots\dots (8)$$

$$\text{s.t. } \sum_{k=1}^K z_k y_{km} \geq y_m, m=1, \dots, M,$$



$$\sum_{k=1}^K z_k X_{kn} \leq \theta x_n, n=1, \dots, N,$$

$$z_k \geq 0, k=1, \dots, K,$$

여기서  $z_k, k=1, \dots, K$ 는 밀도변수이며, 위 식의 해는 다음과 같다.

$$0 < TE_f(y, x | C, S) \leq 1, \dots \dots \dots (9)$$

즉, 투입 측면 CRS 기술효율성 점수는 0과 1 사이에 있다. 이 값이 1이면 이 기업은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투입을 하고 있다. 만약 이 값이 1 미만이면 비효율적인 기업임을 뜻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ariable Return to Scale : VRS) 기술효율성은 다음과 같다.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RS)은 밀도변수  $z$ 의 총합이 정확히 1이라는 제약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y | V, S) = \{ (x_1, \dots, x_N) : \dots \dots \dots (10)$$

$$\sum_{k=1}^K z_k Y_{km} \geq y_m, m=1, \dots, M,$$

$$\sum_{k=1}^K z_k X_{kn} \leq x_n, n=1, \dots, N,$$

$$\sum_{k=1}^K z_k = 1, z_k \geq 0, k=1, \dots, K,$$

규모수익 가변(VRS) 기술에 의해 측정된 투입 측면의 VRS 기술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_f(y, x | V, S) = \min \lambda : \lambda x \in L(y | V, S). \dots \dots \dots (11)$$

만약  $n(n=1, \dots, N)$ 개의 투입물( $x$ )을 이용하여  $m(m=1, \dots, M)$ 개의 산출물( $y$ )을 생산하는  $k(k=1, \dots, K)$ 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투입 측면의 VRS 기술효율성의 해를 구하기 위한 선형계획모형은 다음과 같다.

$$TE_i(y, x | V, S) = \min \Theta \dots\dots\dots (12)$$

$$\text{s.t. } \sum_{k=1}^K z_k y_{km} \geq y_m, m=1, \dots, M,$$

$$\sum_{k=1}^K z_k x_{kn} \leq \Theta x_n, n=1, \dot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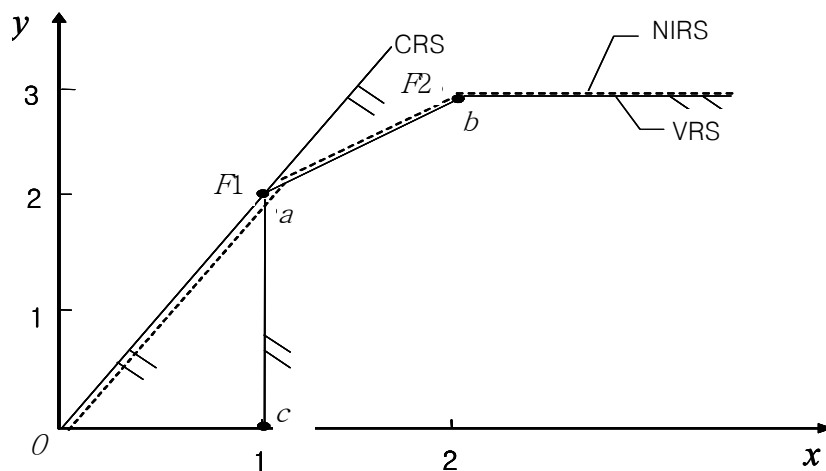
$$\sum_{k=1}^K z_k = 1, z_k \geq 0, k=1, \dots, K,$$

$TE_i(y, x | V, S)$ 의 값도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 값이 1일 때는 효율적인 투입이 달성된 기업이며, 1 미만일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3-3]은 규모에 대한 수익과 기술효율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 기술은 원점과  $a$ 를 통과하는 방사선까지를 경계로 한다. 규모수익 비증가(NIRS)는 원점에서 점  $a, b$ 를 통과하여  $x$ 축에 평행한 선을 경계로 하고 있다.

즉, 규모수익 비증가는 원점과 관측치 사이의 볼록결합을 허용하여 투입요구집합에 선형 근사하게 된다.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RS) 기술은  $x$ 축의  $x=1$ 에서 출발하여  $ca, ab$ 와  $b$ 로부터 수평선의 경계를 나타낸다.

[부도 3-3] 규모에 대한 수익과 기술효율성 분리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투입측면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측정할 수 있다.<sup>27)</sup>

규모의 효율성은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편향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E_j(y, x|S) = TE_j(y, x|C, S) / TE_j(y, x|V, S) \dots\dots\dots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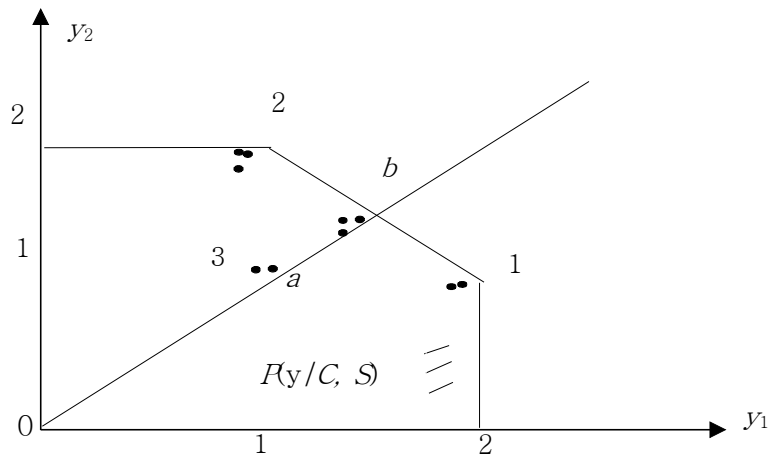
여기서 어떤 기업이  $SE_j(y, x|S)=1$  이면 그 기업은 규모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의 효율성 측정은 어떤 기업이 일정한 수익 효과가 나는 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2) 산출측면의 기술효율성

산출측면(Output-oriented)의 기술효율성이란 주어진 투입물을 투입하여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부도 3-4]에서 기업은 1단위의  $x$ 투입물을 투입하여  $y_1$ 과  $y_2$ 를 생산

[부도 3-4] 산출측면의 기술효율성



27) 투입물 측면의 기술효율성은 일반적으로 3가지 구성요소, 즉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 혼잡성(congestion), 순수 기술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으로 분리될 수 있다.

하는 경우이다. 기업 1과 기업 2는 효율적인 산출을 하는 기업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산출가능프론티어 상에 있다.

기업 3은 비효율적인 산출로 생산가능집합 내부에 존재한다. 이 경우 기업 3의 산출측면 기술효율성은  $Ob/Oa$ 로 표현된다.

이를 근거로 산출측면 CRS 기술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_0(x, y | C, S) = \max \theta : \theta y \in P(x | C, S) \quad \text{-----} \quad (14)$$

$$P(x | C, S) = \{(y_1, \dots, y_m) :$$

$$\sum_{k=1}^K z_k y_{km} \geq y_m, m = 1, \dots, M,$$

$$\sum_{k=1}^K z_k x_{kn} \leq x_n, n = 1, \dots, N,$$

$$z_k \geq 0, k = 1, \dots, K\}$$

여기서 CRS 함수와 강처분성을 가정하면, 산출측면 기술효율성과 투입측면 기술효율성은 다음과 같은 역의 관계를 가진다.

$$F_0(x, y | C, S) = (F_f(y, x | C, S))^{-1} \quad \text{-----} \quad (15)$$

따라서 기술효율성의 값이 1이면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며, 그 값이 1보다 크면 클수록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산출측면 기술효율성의 값이 1.5라면 이 기업은 최적생산가능경계(best practice frontier)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50%의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술에 대한 규모에 대한 보수적 가정, 즉 밀도변수  $z_k, k=1, \dots, K$ 에 대한 가정을 통해 산출측면의 각종 기술효율성을 정의할 수 있다.

산출측면 규모수익 가변(Variable return to scale) 기술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sum_{k=1}^K z_k = 1$ 의 제약조건이 추가된다.

$$F_0(x, y | V, S) = \max \theta : \theta y \in P(x | V, S) \quad \text{-----} \quad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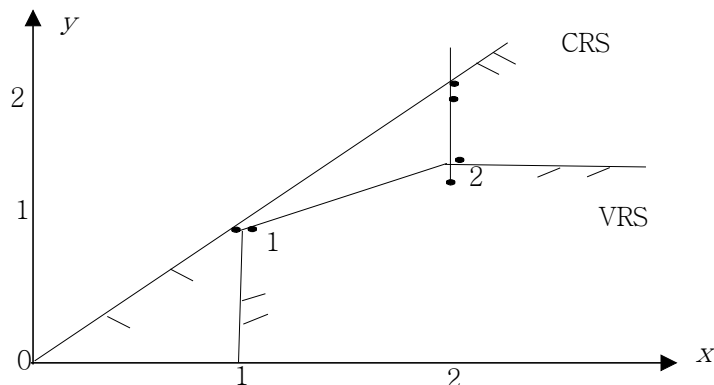
$$P(x | V, S) = \{(y_1, \dots, y_m) : \sum_{k=1}^K z_k y_{km} \geq y_m, m = 1, \dots, M, \sum_{k=1}^K z_k x_{km} \leq x_n, n = 1, \dots, N, \sum_{k=1}^K z_k = 1, z_k \geq 0, k = 1, \dots, K\}$$

산출측면 규모 효율성은 산출측면 VRS 기술효율성과 산출측면 CRS 기술효율성의 상대적 비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_0(y, x | S) = F_0(x, y | C, S) / F_0(y, x | V, S) \dots\dots\dots (17)$$

이 값은 산출방향에서 CRS의 효율적 산출량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부도 3-5]에서 보면, 기업 1은 1단위를 투입하여 1단위를 산출한다. 기업 2는 2단위 투입으로 1.5단위를 산출한다. 생산기술을 VRS를 가정하면 기업 1과 기업 2 모두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CRS 생산기술을 가정하면 기업 1만이 규모에 대해 효율적이고 기업 2는 규모에 대해 비효율적이다. 즉, CRS 생산기술만이 존재한다면 기업 2는 0.5단위를 더 생산해야 되는 것이다.

[부도 3-5] 산출측면의 규모 효율성



규모 효율성 값이 1이면 규모에 대해 효율적이며, 이 값이 1보다 크면 규모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지금까지 DEA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효과는 각 사업의 사업주체가 이 투입요소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표] 사회적 일자리 사업 평가실태분석 결과

1.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근로자 평가

<부표 1> 타실업대책과 비교시 근로기회 제공의 성과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성과가 매우 적다	-		14.3	4	12.1
성과가 적다	-		21.4	6	18.2
비슷하다	40.0		3.6	3	9.1
성과가 있다	60.0		53.6	18	54.5
성과가 매우 크다	-		7.1	2	6.1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6		3.2		3.2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성과가 매우 적다	-	-	1.5	1	0.7
성과가 적다	3.6	2.5	4.4	5	3.7
비슷하다	10.7	10.0	19.1	20	14.7
성과가 있다	57.1	77.5	52.9	83	61.0
성과가 매우 크다	28.6	10.0	22.1	27	19.9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4.1	4.0	3.9		4.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성과가 매우 적다	-	1.2	0.8	3	0.7
성과가 적다	2.5	1.2	5.0	15	3.7
비슷하다	3.8	16.7	9.1	39	9.6
성과가 있다	40.0	46.4	52.7	198	48.9
성과가 매우 크다	53.8	34.5	32.4	150	37.0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4.5	4.1	4.1		4.2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성과가 매우 적다	4.4	-		2	3.4
성과가 적다	13.3	7.1		7	11.9
비슷하다	24.4	21.4		14	23.7
성과가 있다	48.9	35.7		27	45.8
성과가 매우 크다	8.9	35.7		9	15.3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3.4	4.0			3.6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성과가 매우 적다' 1점, '성과가 적다' 2점, '비슷하다' 3점, '성과가 있다' 4점, '성과가 매우 크다' 5점임.

&lt;부표 2&gt; 타직장 취업시 도움 정도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		7.1	2	6.1
적게 도움이 된다	-		28.6	8	24.2
보통이다	40.0		3.6	3	9.1
도움이 된다	40.0		42.9	14	42.4
매우 도움이 된다	20.0		17.9	6	18.2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8		3.4		3.4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3.6	-	1.5	2	1.5
적게 도움이 된다	3.6	5.0	5.9	7	5.1
보통이다	10.7	22.5	19.1	25	18.4
도움이 된다	53.6	67.5	57.4	81	59.6
매우 도움이 된다	28.6	5.0	16.2	21	15.4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4.0	3.7	3.8		3.8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6.3	1.2	0.8	8	2.0
적게 도움이 된다	3.8	2.4	3.3	13	3.2
보통이다	18.8	19.0	19.5	78	19.3
도움이 된다	41.3	52.4	51.9	202	49.9
매우 도움이 된다	30.0	25.0	24.5	104	25.7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3.9	4.0	4.0		3.9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2.2	-		1	1.7
적게 도움이 된다	8.9	-		4	6.8
보통이다	11.1	7.1		6	10.2
도움이 된다	57.8	64.3		35	59.3
매우 도움이 된다	20.0	28.6		13	22.0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3.8	4.2			3.9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1점, '적게 도움이 된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임.



<부표 3> 만족도-교육훈련의 내용과 기간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만족	-		3.6	1	3.0
보통이다	80.0		21.4	10	30.3
만족	20.0		71.4	21	63.6
매우 만족	-		3.6	1	3.0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2		3.8	3.7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만족	-	7.5	8.8	9	6.6
보통이다	64.3	47.5	51.5	72	52.9
만족	35.7	42.5	36.8	52	38.2
매우 만족	-	2.5	2.9	3	2.2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3.4	3.4	3.3	3.4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2.5	1.2	2.9	10	2.5
불만족	3.8	-	4.1	13	3.2
보통이다	28.8	52.4	45.2	176	43.5
만족	46.3	34.5	40.2	163	40.2
매우 만족	18.8	11.9	7.5	43	10.6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3.8	3.6	3.5	3.5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4.4	-		2	3.4
불만족	11.1	-		5	8.5
보통이다	42.2	57.1		27	45.8
만족	40.0	35.7		23	39.0
매우 만족	2.2	7.1		2	3.4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3.2	3.5		3.3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lt;부표 4&gt; 만족도-현 직장의 계약기간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만족	-		14.3	4	12.1
보통이다	80.0		28.6	12	36.4
만족	20.0		50.0	15	45.5
매우 만족	-		7.1	2	6.1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2		3.5		3.5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만족	-	7.5	8.8	9	6.6
보통이다	64.3	47.5	51.5	72	52.9
만족	35.7	42.5	36.8	52	38.2
매우 만족	-	2.5	2.9	3	2.2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3.4	3.4	3.3		3.4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13.8	17.9	7.5	44	10.9
불만족	35.0	36.9	34.9	143	35.3
보통이다	35.0	23.8	35.3	133	32.8
만족	10.0	19.0	18.7	69	17.0
매우 만족	6.3	2.4	3.7	16	4.0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2.4	2.5	2.8		2.7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2.2	-		1	1.7
불만족	6.7	21.4		6	10.2
보통이다	42.2	28.6		23	39.0
만족	48.9	42.9		28	47.5
매우 만족	-	7.1		1	1.7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3.6	3.4	2.8		3.4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부표 5> 만족도-월급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만족	20.0		25.0	8	24.2
보통이다	60.0		28.6	11	33.3
만족	20.0		42.9	13	39.4
매우 만족	-		3.6	1	3.0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0		3.3		3.2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7.1	10.0	10.3	13	9.6
불만족	17.9	42.5	45.6	53	39.0
보통이다	42.9	35.0	35.3	50	36.8
만족	32.1	12.5	5.9	18	13.2
매우 만족	-	-	2.9	2	1.5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3.0	2.5	2.5		2.6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13.8	20.2	9.5	51	12.6
불만족	32.5	27.4	30.7	123	30.4
보통이다	36.3	35.7	49.4	178	44.0
만족	12.5	16.7	9.5	47	11.6
매우 만족	5.0	-	0.8	6	1.5
N	80(100.0)	84(100.0)	241.0	405	100.0
평점	2.6	2.5	2.6		2.6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13.3	-		6	10.2
불만족	17.8	14.3		10	16.9
보통이다	48.9	28.6		26	44.1
만족	20.0	50.0		16	27.1
매우 만족	-	7.1		1	1.7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2.8	3.5			2.6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lt;부표 6&gt; 만족도-하루 근로시간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만족	-		3.6	1	3.0
보통이다	40.0		17.9	7	21.2
만족	40.0		64.3	20	60.6
매우 만족	20.0		14.3	5	15.2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8		3.9		3.9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		-	1	0.7
불만족	-		11.8	11	8.1
보통이다	28.6	32.5	32.4	43	31.6
만족	53.6	42.5	51.5	67	49.3
매우 만족	17.9	15.0	4.4	14	10.3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3.9	3.6	3.5		3.6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3.8	3.6	1.2	9	2.2
불만족	7.5	6.0	5.8	25	6.2
보통이다	35.0	52.4	40.7	170	42.0
만족	43.8	35.7	44.8	173	42.7
매우 만족	10.0	2.4	7.5	28	6.9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3.5	3.3	3.5		3.5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13.3	-		6	10.2
불만족	17.8	14.3		10	16.9
보통이다	48.9	28.6		26	44.1
만족	20.0	50.0		16	27.1
매우 만족	-	7.1		1	1.7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2.8	3.5			2.6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부표 7> 만족도-현재 하는 일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보통이다	40.0		10.7	5	15.2
만족	60.0		67.9	22	66.7
매우 만족	-		21.4	6	18.2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6		4.1		4.0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만족	-	2.5	1.5	2	1.5
보통이다	35.7	27.5	11.8	29	21.3
만족	35.7	52.5	66.2	76	55.9
매우 만족	28.6	17.5	20.6	29	21.3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3.9	3.9	4.1		4.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2.5	-	-	2	0.5
불만족	1.3	10.7	5.4	23	5.7
보통이다	28.8	48.8	22.4	118	29.1
만족	51.3	31.0	55.6	201	49.6
매우 만족	16.3	9.5	16.6	61	15.1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3.8	3.4	3.8		3.7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2.2	-		1	1.7
보통이다	31.1	35.7		19	32.2
만족	57.8	42.9		32	54.2
매우 만족	8.9	21.4		7	11.9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3.7	3.9			3.7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lt;부표 8&gt; 본 사업 미참여시 취업 가능성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		7.1	2	6.1
낮다	-		32.1	9	27.3
보통이다	80.0		42.9	16	48.5
높다	-		14.3	4	12.1
매우 높다	20.0		3.6	2	6.1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4		2.8		2.8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3.6	-	1.5	2	1.5
낮다	7.1	7.5	13.2	14	10.3
보통이다	46.4	47.5	50.0	66	48.5
높다	28.6	37.5	32.4	45	33.1
매우 높다	14.3	7.5	2.9	9	6.6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3.4	3.5	3.2		3.3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11.3	6.0	10.0	38	9.4
낮다	35.0	27.4	24.9	111	27.4
보통이다	40.0	42.9	38.2	160	39.5
높다	8.8	17.9	17.4	64	15.8
매우 높다	5.0	6.0	9.5	32	7.9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2.6	2.9	2.9		2.9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	7.1		1	1.7
낮다	6.7	14.3		5	8.5
보통이다	42.2	50.0		26	44.1
높다	35.6	28.6		20	33.9
매우 높다	15.6	-		7	11.9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3.6	3.0			3.5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부표 9> 본 사업 참여시 가계 도움 정도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		3.6	1	3.0
적게 도움이 된다	20.0		32.1	10	30.3
보통이다	20.0		14.3	5	15.2
도움이 된다	40.0		42.9	14	42.4
매우 도움이 된다	20.0		7.1	3	9.1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3.6		3.2		3.2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	5.0	5.9	6	4.4
적게 도움이 된다	17.9	27.5	35.3	40	29.4
보통이다	21.4	25.0	19.1	29	21.3
도움이 된다	42.9	37.5	26.5	45	33.1
매우 도움이 된다	17.9	5.0	13.2	16	11.8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3.6	3.1	3.1		3.2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	3.6	4.6	14	3.5
적게 도움이 된다	10.0	19.0	14.5	59	14.6
보통이다	17.5	15.5	21.2	78	19.3
도움이 된다	36.3	48.8	44.8	178	44.0
매우 도움이 된다	36.3	13.1	14.9	76	18.8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4.0	3.5	3.5		3.6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적게 도움이 된다	15.6	-		7	11.9
보통이다	28.9	7.1		14	23.7
도움이 된다	48.9	35.7		27	45.8
매우 도움이 된다	6.7	57.1		11	18.6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3.5	4.5			3.7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적게 도움이 된다' 1 점, '적게 도움이 된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임.

&lt;부표 10&gt; 이직의향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있다	80.0		39.3	15	45.5
없다	20.0		60.7	18	54.5
N	5(100.0)		28(100.0)	33	100.0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있다	60.7	67.5	77.9	97	71.3
없다	39.3	32.5	22.1	39	28.7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있다	60.3	76.3	74.9	284	72.3
없다	39.7	23.8	25.1	109	27.7
N	78(100.0)	80(100.0)	235(100.0)	393	100.0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있다	64.3	57.1		35	62.5
없다	35.7	42.9		21	37.5
N	42(100.0)	14(100.0)		56	100.0



<부표 11> 본 사업 지원금 중단시 다른 곳에서 근무할 가능성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20.0		14.3	5	15.2
낮다	20.0		32.1	10	30.3
보통이다	40.0		25.0	9	27.3
높다	-		25.0	7	21.2
매우 높다	20.0		3.6	2	6.1
N	5(100.0)		28(100.0)	33	100.0
평점	2.8		2.7		2.7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7.1	2.5	7.4	8	5.9
낮다	25.0	27.5	26.5	36	26.5
보통이다	39.3	40.0	45.6	58	42.6
높다	17.9	25.0	16.2	26	19.1
매우 높다	10.7	3.0	4.4	8	5.9
N	28(100.0)	40(100.0)	68(100.0)	136	100.0
평점	3.0	3.5	2.8		2.9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38.8	16.7	17.0	86	21.2
낮다	27.5	35.7	20.7	102	25.2
보통이다	25.0	32.1	35.7	133	32.8
높다	5.0	8.3	18.3	55	13.6
매우 높다	3.8	7.1	8.3	29	7.2
N	80(100.0)	84(100.0)	241(100.0)	405	100.0
평점	2.1	2.5	2.8		2.6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4.4	7.1		3	5.1
낮다	11.1	42.9		11	18.6
보통이다	46.7	35.7		26	44.1
높다	22.2	7.1		11	18.6
매우 높다	15.6	7.1		8	13.6
N	45(100.0)	14(100.0)		59	100.0
평점	3.3	2.6			3.2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lt;부표 12&gt;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할 필요 없음	20.0		3.7	2	6.3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60.0		25.9	10	31.3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20.0		70.4	20	62.5
N	5(100.0)		27(100.0)	32	100.0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할 필요 없음	3.7	5.0	5.9	7	5.2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59.3	77.5	64.7	91	67.4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37.0	17.5	29.4	37	27.4
N	27(100.0)	40(100.0)	68(100.0)	135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할 필요 없음	-	2.5	5.9	16	4.0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66.2	66.3	66.1	262	66.2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33.8	31.3	28.0	118	29.8
N	77(100.0)	80(100.0)	239(100.0)	396	100.0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할 필요 없음	7.0	-		3	5.3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81.4	28.6		39	68.4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11.6	71.4		15	26.3
N	43(100.0)	14(100.0)		57	100.0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혜자 평가

<부표 13> 생활의 도움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전혀 도움이 안된다	-	2.6	-	1	0.7
그저 그렇다	6.4	13.2	10.7	14	9.9
도움이 크다	142.6	50.0	44.6	64	45.4
도움이 매우 크다	51.1	34.2	44.6	62	44.0
N	47(100.0)	38(100.0)	56(100.0)	141	100.0
평점	4.4	4.1	4.3	4.3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전혀 도움이 안된다	-	1.3	-	1	0.3
도움이 안된다	1.3	-	2.0	6	1.5
그저 그렇다	10.4	2.7	7.3	28	7.0
도움이 크다	22.1	52.0	41.5	159	39.8
도움이 매우 크다	66.2	44.0	49.2	206	51.0
N	77(100.0)	75(100.0)	248(100.0)	400	100.0
평점	4.5	4.4	4.4	4.4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그저 그렇다	15.6	-	-	7	11.7
도움이 크다	57.8	26.7	-	30	50.0
도움이 매우 크다	26.7	73.3	-	23	38.3
N	45(100.0)	15(100.0)	-	60	100.0
평점	4.1	4.7	-	4.3	

&lt;부표 14&gt; 비용감소효과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전혀 도움이 안된다	-	2.6	-	1	0.7
도움이 안된다	2.1	-	-	1	0.7
그저 그렇다	14.9	23.7	17.9	26	18.4
도움이 크다	34.0	42.1	35.7	52	36.9
도움이 매우 크다	48.9	31.6	46.4	61	43.3
N	47(100.0)	38(100.0)	56(100.0)	141	1000
평점	4.3	4.0	4.3	4.2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전혀 도움이 안된다	2.6	2.7	2.0	9	2.3
도움이 안된다	2.6	1.3	4.8	15	3.8
그저 그렇다	18.2	28.0	19.8	84	21.0
도움이 크다	27.3	38.7	35.9	139	34.8
도움이 매우 크다	49.4	29.3	37.5	153	38.3
N	77(100.0)	75(100.0)	248(1000.0)	400	1000
평점	4.2	3.9	4.0	4.0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그저 그렇다	26.7	6.7		13	21.7
도움이 크다	53.3	26.7		28	46.7
도움이 매우 크다	20.0	66.7		19	31.7
N	45(100.0)	15(100.0)		60	1000
평점	3.9	4.6		4.1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도움이 크다' 4점, '도움이 매우 크다' 5점임.

<부표 15> 시설만족도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매우 불만족	2.1	-	-	1	0.7
불만족	-	-	1.8	1	0.7
보통	4.3	15.8	16.1	17	12.1
만족	55.3	52.6	51.8	75	53.2
매우 만족	38.3	31.6	30.4	47	33.3
N	47(100.0)	38(100.0)	56(100.0)	141	100.0
평점	4.3	4.2	4.1	4.2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매우 불만족	1.3	-	1.2	4	1.0
불만족	1.3	-	-	1	0.3
보통	10.4	9.3	14.5	51	12.8
만족	27.3	52.0	45.2	72	43.0
매우 만족	59.7	38.7	39.1	172	43.0
N	77(100.0)	75(100.0)	248(100.0)	400	100.0
평점	4.4	4.3	4.2	4.3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
보통	8.9	6.7		5	8.3
만족	57.8	40.0		32	53.3
매우 만족	33.3	53.3		23	38.3
N	45(100.0)	15(100.0)		60	100.0
평점	4.2	4.5		4.3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lt;부표 16&gt; 만족도 - 이용횟수 및 시간

방과 후 교실 보조 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보통	4.3	10.5	19.6	17	12.1
만족	61.7	63.2	51.8	82	58.2
매우 만족	34.0	26.3	28.6	42	29.8
N	47(100.0)	40(100.0)	68(100.0)	141	100.0
평점	4.3	4.2	4.1	4.2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1.3	1.3	0.4	3	0.8
불만족	1.3	-	2.0	6	1.5
보통	16.9	25.3	17.3	75	18.8
만족	37.7	45.3	48.4	183	45.8
매우 만족	42.9	28.0	31.9	133	33.3
N	77(100.0)	75(100.0)	248(100.0)	400	100.0
평점	4.2	4.0	4.1	4.1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보통	15.6	26.7		11	18.3
만족	48.9	26.7		26	43.3
매우 만족	35.6	46.7		23	38.3
N	45(100.0)	15(100.0)		60	100.0
평점	4.2	4.2		4.2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부표 17> 만족도 - 서비스 내용

방과 후 교실 보조 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만족	2.1	-	-	1	0.7
보통	6.4	2.6	10.7	10	7.1
만족	48.9	60.5	51.8	75	53.2
매우 만족	42.6	36.8	37.5	55	39.0
N	47(100.0)	38(100.0)	56(100.0)	141	100.0
평점	4.3	4.3	4.3	4.3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1.3	1.3	-	2	0.5
불만족	2.6	-	1.2	5	1.3
보통	14.3	13.3	12.9	53	13.3
만족	29.9	46.7	47.2	175	43.8
매우 만족	51.9	38.7	38.7	165	41.3
N	77(100.0)	75(100.0)	248(100.0)	400	100.0
평점	4.3	4.2	4.2	4.2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2.2	-	-	1	1.7
보통	13.3	6.7	-	7	11.7
만족	62.2	26.7	-	32	53.3
매우 만족	22.2	66.7	-	20	33.3
N	45(100.0)	15(100.0)	-	60	100.0
평점	4.0	4.6	4.2	4.2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임.

&lt;부표 18&gt; 서비스 요금 지불 여부

방과 후 교실 보조 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예	27.7	81.6	7.1	48	34.0
아니오	72.3	18.4	92.9	93	66.0
N	47(100.0)	38(100.0)	56(100.0)	141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예	6.5	55.6	9.1	66	17.4
아니오	93.5	44.4	90.9	313	82.6
N	77(100.0)	72(100.0)	230(100.0)	379	100.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예	64.4	92.3		41	70.7
아니오	35.6	7.7		17	29.3
N	47(100.0)	13(100.0)		58	100.0

&lt;부표 19&gt; 개선사항

방과 후 교실 보조 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더 낮아야 한다	-	66.7		2	50.0
무료이어야 한다	100.0	33.3		2	50.0
N	1(100.0)	3(100.0)		4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더 올라야 한다	100.0	33.3	33.3	4	50.0
더 낮아야 한다	-	33.3	33.3	2	25.0
무료이어야 한다	-	33.3	33.3	2	25.0
N	2(100.0)	3(100.0)	3(100.0)	8	100.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더 낮아야 한다	100.0	100.0		2	100.0
N	1(100.0)	1(100.0)		2	100.0



<부표 20> 지불 금액에 대한 의견

방과 후 교실 보조 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적당하지 않다	7.7	9.7	-	4	8.3
보통이다	7.7	22.6	25.0	9	18.8
적당하다	69.2	51.6	75.0	28	58.3
매우 적당하다	15.4	16.1	-	7	14.6
N	13(100.0)	31(100.0)	4(100.0)	48	100.0
평점	3.9	3.7	3.8	3.8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전혀 적당하지 않다	-	2.5	-	1	1.5
적당하지 않다	40.0	5.0	14.3	7	10.6
보통이다	60.0	27.5	19.0	18	27.3
적당하다	-	57.5	57.1	35	53.0
매우 적당하다	-	7.5	9.5	5	7.6
N	5(100.0)	40(100.0)	21(100.0)	66	100.0
평점	2.6	3.6	3.6	3.5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적당하지 않다	3.4	8.3		2	4.9
보통이다	24.1	33.3		11	26.8
적당하다	62.1	50.0		24	58.5
매우 적당하다	10.3	8.3		4	9.8
N	29(100.0)	12(100.0)		41	100.0
평점	3.8	3.6		3.7	

&lt;부표 21&gt; 향후 이용의향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2.1	2.6	-	2	1.4
그저 그렇다	-	2.6	7.1	5	3.5
이용할 것이다	51.1	55.3	46.4	71	50.4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46.8	39.5	46.4	63	44.7
N	47(100.0)	38(100.0)	56(100.0)	141	100.0
평점	4.4	4.3	4.4	4.4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1.3	1.3	0.4	3	0.8
그저 그렇다	3.9	2.7	8.9	27	6.8
이용할 것이다	13.0	48.0	40.3	146	36.5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81.8	48.0	50.4	224	56.0
N	77(100.0)	75(100.0)	248(100.0)	400	100.0
평점	4.7	4.4	4.4	4.5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그저 그렇다	4.4	-		2	3.3
이용할 것이다	80.0	60.0		45	75.0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15.6	40.0		13	21.7
N	45(100.0)	15(100.0)		60	100.0
평점	4.1	4.4		4.2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1점,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이용할 것이다' 4점,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5점임.

<부표 22> 정부보조에 의한 서비스 지속에 대한 의견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필요 없다	-	-	1.8	1	0.7
그저 그렇다	2.1	-	7.1	5	3.5
필요하다	12.8	18.4	25.0	27	19.1
꼭 필요하다	85.1	81.6	66.1	108	76.6
N	47(100.0)	38(100.0)	56(100.0)	141	100.0
평점	4.8	4.8	4.6	4.7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필요 없다	1.3	1.3	0.4	3	0.8
그저 그렇다	2.6	2.7	7.7	23	5.8
필요하다	13.0	18.7	18.5	70	17.5
꼭 필요하다	83.1	77.3	73.4	304	76.0
N	77(100.0)	75(100.0)	248(100.0)	400	100.0
평점	4.8	4.7	4.6	4.7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필요하다	35.6	26.7		20	33.3
꼭 필요하다	64.4	73.3		40	66.7
N	45(100.0)	15(100.0)		60	100.0
평점	4.6	4.7	4.6	4.7	

&lt;부표 23&gt; 서비스 중단시 불편정도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편하지 않다	2.1	-	1.8	2	1.4
그저 그렇다	4.3	5.3	17.9	14	9.9
불편하다	42.6	42.1	44.6	61	43.3
매우 불편하다	51.1	52.6	35.7	64	45.4
N	47(100.0)	38(100.0)	56(100.0)	141	100.0
평점	4.4	4.5	4.1	4.3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전혀 불편하지 않다	-	-	0.8	2	0.5
불편하지 않다	-	1.3	0.4	2	0.5
그저 그렇다	2.6	9.3	8.5	30	7.5
불편하다	11.7	28.0	26.6	96	24.0
매우 불편하다	85.7	61.3	63.7	270	67.5
N	77(100.0)	75(100.0)	248(100.0)	400	100.0
평점	4.8	4.5	4.5	4.6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불편하다	42.2	20.0		22	36.7
매우 불편하다	57.8	80.0		38	63.3
N	45(100.0)	15(100.0)		60	100.0
평점	4.6	4.8		4.6	

<부표 24> 서비스 중단시 타시설 이용가능 여부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6.7	43.2	15.7	45	33.8
없다	53.3	56.8	84.3	88	66.2
N	45(100.0)	37(100.0)	51(100.0)	133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8	32.9	18.9	74	19.3
없다	92.2	67.1	81.1	309	80.7
N	77(100.0)	73(100.0)	233(100.0)	383	100.0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4.1	13.3		17	28.8
없다	65.9	86.7		42	71.2
N	44(100.0)	15(100.0)		59	100.0

&lt;부표 25&gt;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되어야 한다	46.8	50.0	46.4	67	47.5
그저 그렇다	8.5	13.2	14.3	17	12.1
현재로도 충분하다	44.7	36.8	39.3	57	40.4
N	47(100.0)	8(100.0)	56(100.0)	141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도움 안되므로 필요 없다	-	-	0.4	1	0.3
개선되어야 한다	39.0	46.7	33.5	148	37.0
그저 그렇다	6.5	6.7	19.0	57	14.3
현재로도 충분하다	54.5	46.7	47.2	194	48.5
N	77(100.0)	75(100.0)	248(100.0)	400	100.0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되어야 한다	91.1	26.7		45	75.0
그저 그렇다	2.2	-		1	1.7
현재로도 충분하다	6.7	73.3		14	23.3
N	45(100.0)	15(100.0)		60	100.0

3.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평가

<부표 26>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 기여도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많이 기여한다	100.0	-	40.0	4	57.1
매우 많이 기여한다	-	-	60.0	3	42.9
N	2(100.0)	-	5(100.0)	7	100.0
평점	4.0	-	4.6	4.4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기여한다	7.1	-	-	2	4.1
적게 기여한다	3.6	-	7.7	2	4.1
보통이다	32.1	-	15.4	11	22.4
많이 기여한다	42.9	62.5	30.8	21	42.9
매우 많이 기여한다	14.3	37.5	46.2	13	26.5
N	28(100.0)	8(100.0)	13(100.0)	49	100.0
평점	3.5	4.4	4.2	3.8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적게 기여한다	-	-	2.0	1	1.3
적게 기여한다	-	6.3	4.1	3	3.8
보통이다	14.3	12.5	18.4	13	16.5
많이 기여한다	50.0	56.3	38.8	35	44.3
매우 많이 기여한다	35.7	25.0	36.7	27	34.2
N	14(100.0)	16(100.0)	49(100.0)	79	100.0
평점	4.2	4.0	4.0	4.1	
보육시설 사 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보통이다	10.0	-	-	1	7.7
많이 기여한다	40.0	33.3	-	5	38.5
매우 많이 기여한다	50.0	66.7	-	7	53.8
N	10(100.0)	3(100.0)	-	13	100.0
평점	3.9	4.7	-	4.5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적게 기여한다' 1점, '적게 기여한다' 2점, '보통 기여한다' 3점, '많이 기여한다' 4점, '매우 많이 기여한다' 5점임.

&lt;부표 27&gt;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고용 여부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을 것	100.0	-	40.0	4	57.1
감소했을 것	-		60.0	3	42.9
N	2(100.0)	-	5(100.0)	7	100.0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을 것	78.6	37.5	46.2	31	63.3
감소했을 것	21.4	62.5	53.8	18	36.7
N	28(100.0)	8(100.0)	13(100.0)	49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을 것	100.0	75.0	69.4	60	75.9
감소했을 것	-	25.0	30.6	19	24.1
N	14(100.0)	16(100.0)	49(100.0)	79	100.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을 것	10.0	33.3		2	15.4
감소했을 것	90.0	66.7		11	84.6
N	10(100.0)	3(100.0)		13	100.0



<부표 28>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50.0		40.0	3	42.9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50.0		60.0	4	57.1
N	2(100.0)		5(100.0)	7	100.0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64.3	87.5	69.2	34	69.4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35.7	12.5	30.8	15	30.6
N	28(100.0)	8(100.0)	13(100.0)	49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할 필요없음	-	-	2.0	1	1.3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71.4	75.0	63.3	53	67.1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28.6	25.0	34.7	25	31.6
N	14(100.0)	16(100.0)	49(100.0)	79	100.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개선해서 지속해야 함	60.0	66.7		8	61.5
현행대로 지속해야 함	40.0	33.3		5	38.5
N	10(100.0)	3(100.0)		13	100.0

&lt;부표 29&gt;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현 사업의 유지 가능성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50.0		40.0	3	42.9
낮다	50.0		40.0	3	42.9
보통	-		20.0	1	14.3
N	2(100.0)		5(100.0)	7	100.0
평점	1.5		1.8	1.7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46.4	37.5	23.1	19	38.8
낮다	39.3	25.0	38.5	18	36.7
보통	10.7	25.0	7.7	6	12.2
높다	3.6	12.5	30.8	6	12.2
N	28(100.0)	8(100.0)	13(100.0)	49	100.0
평점	1.7	2.1	2.5	2.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64.3	31.3	46.9	37	46.8
낮다	35.7	43.8	34.7	29	36.7
보통	-	18.8	10.2	8	10.1
높다	-	6.3	6.1	4	5.1
매우 높다	-	-	2.0	1	1.3
N	14(100.0)	16(100.0)	49(100.0)	79	100.0
평점	1.4	2.0	1.8	1.8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10.0	33.3		2	15.4
낮다	70.0	33.3		8	61.5
보통	10.0	-		1	7.7
높다	10.0	33.3		2	15.4
N	10(100.0)	3(100.0)		13	100.0
평점	2.2	2.3		2.2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낮다' 1점, '낮다' 2점, '보통' 3점,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임.

<부표 30>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현 사업 수행 여부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유료로 전환하여 계속 수행	28.6	-	-	8	16.3
현재 고용인원 수혜인원을 줄여서라도 사업 수행	17.9	75.0	61.5	19	38.8
현 상태로 계속 유지	10.7	-	-	3	6.1
그만둔다	42.9	12.5	23.1	16	32.7
기타	-	12.5	15.4	3	6.1
N	28(100.0)	8(100.0)	13(100.0)	49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유료로 전환하여 계속 수행	-	21.4	8.3	7	9.6
현재 고용인원 수혜인원을 줄여서라도 사업 수행	9.1	35.7	33.3	22	30.1
현 상태로 계속 유지	-	7.1	8.3	5	6.8
그만둔다	72.7	28.6	41.7	32	43.8
기타	18.2	7.1	8.3	7	9.6
N	11(100.0)	14(100.0)	48(100.0)	73	100.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유료로 전환하여 계속 수행	40.0	-		4	30.8
현재 고용인원 수혜인원을 줄여서라도 사업 수행	30.0	66.7		5	38.5
그만둔다	30.0	33.3		4	30.8
N	10(100.0)	3(100.0)		13	100.0

&lt;부표 31&gt; 정부의 지원규모 감소시 현 사업 유지 의향

방과 후 교실 보조 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28.6	-	30.8	12	24.5
낮다	50.0	37.5	15.4	19	38.8
보통	14.3	50.0	23.1	11	22.4
높다	3.6	12.5	23.1	5	10.2
매우 높다	3.6	-	7.7	2	4.1
N	28(100.0)	8(100.0)	13(100.0)	49	100.0
평점	2.0	2.8	2.6	2.3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14.3	25.0	20.4	16	20.3
낮다	57.1	31.3	26.5	26	32.9
보통	7.1	31.3	26.5	19	24.1
높다	7.1	6.3	20.4	12	15.2
매우 높다	14.3	6.3	6.1	6	7.6
N	14(100.0)	16(100.0)	49(100.0)	79	100.0
평점	2.5	2.4	2.7	2.6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매우 낮다	10.0	33.3		2	15.4
낮다	40.0	33.3		5	38.5
보통	30.0	-		3	23.1
높다	20.0	33.3		3	23.1
N	10(100.0)	3(100.0)		13	100.0
평점	2.6	2.3		2.5	

주: 평점은 척도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매우 낮다' 1점, '낮다' 2점, '보통' 3점,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임.

<부표 32> 지원금 제도를 이용한 사업 지속의향

숲 가꾸기	산림청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있다	100.0		100.0	7	100.0
N	2(100.0)		5(100.0)	7	100.0
방과 후 교실 보조 인력	교육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있다	88.9	87.5	100.0	44
없다	11.1	12.5	-	4	8.3
N	27(100.0)	8(100.0)	13(100.0)	48	100.0
방문도우미	복지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있다	92.9	100.0	95.9	76
없다	7.1	-	4.1	3	3.8
N	14(100.0)	16(100.0)	49(100.0)	79	100.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노동부		계	
		수익형	공익형	빈도수	비율(%)
	있다	100.0	100.0		13
N	10(100.0)	3(100.0)		13	100.0